

**「지진 · 지진해일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2019. 10.

Blue 관심

Yellow 주의

Orange 경계

Red 심각



# - 목 차 -

## 지진

### I. 일반 사항

|          |   |
|----------|---|
| 1. 목 적   | 5 |
| 2. 적용 범위 | 5 |
| 3. 관련 법규 | 6 |
| 4. 용어 정의 | 7 |

### II. 위기 형태와 관리 체계

|                    |    |
|--------------------|----|
| 1. 위기 형태           | 11 |
| 2. 전개 양상           | 12 |
| 3. 위기관리 체계         | 13 |
| 가. 종합체계도           | 13 |
| 나. 위기관리 기구의 임무와 역할 | 14 |
| 다. 지진 대응체계         | 16 |
| 라. 협업기능별 활동내용      | 20 |
| 마. 재난현장 대응·수습 표준체계 | 26 |

### III. 위기관리 기본방향

|                       |    |
|-----------------------|----|
| 1. 목 표                | 31 |
| 2. 방 침                | 31 |
| 3. 위기대응 지침 및 판단·고려 요소 | 32 |
| 4. 위기징후 감시            | 34 |
| 가. 위기징후 목록            | 34 |
| 나. 위기징후 감시체계와 운용      | 34 |
| 5. 위기 평가              | 35 |

|                   |    |
|-------------------|----|
| 6. 위기경보와 경보 발령    | 37 |
| 가. 위기경보 수준        | 37 |
| 나. 위기경보 절차        | 38 |
| 다. 문화재청 상황보고·전파기준 | 40 |
| 7. 비상근무체계         | 42 |

### IV. 위기경보 수준별 조치사항

|                   |    |
|-------------------|----|
| 1. 관 심 [“대비 “ 단계] | 49 |
| 2. 주 의 [“대비 “ 단계] | 51 |
| 3. 경 계 [“대응 “ 단계] | 53 |
| 4. 심 각 [“대응 “ 단계] | 57 |

### V. 재난상황별 조치내용 및 절차

|                |    |
|----------------|----|
| 규모 4.0미만 지진 발생 | 63 |
| 1. 위기 상황       | 63 |
| 2. 조치 목록       | 63 |
| 3. 조치 내용       | 64 |
| 4. 부서별 임무 및 역할 | 65 |
| 규모 4.0이상 지진 발생 | 67 |
| 1. 위기 상황       | 67 |
| 2. 조치 목록       | 68 |
| 3. 조치 내용       | 69 |
| 4. 부서별 임무 및 역할 | 74 |

# 지진 해일

## I. 일반 사항

|          |    |
|----------|----|
| 1. 목 적   | 81 |
| 2. 적용 범위 | 81 |
| 3. 관련 법규 | 81 |
| 4. 용어 정의 | 83 |

## II. 위기 형태와 관리 체계

|                    |     |
|--------------------|-----|
| 1. 위기 형태           | 87  |
| 2. 전개 양상           | 88  |
| 3. 위기관리 체계         | 89  |
| 가. 종합체계도           | 89  |
| 나. 위기관리 기구의 임무와 역할 | 90  |
| 다. 지진해일 대응체계       | 92  |
| 라. 협업기능별 활동내용      | 96  |
| 마. 재난현장 대응·수습 표준체계 | 102 |

## III. 위기관리 기본방향

|                       |     |
|-----------------------|-----|
| 1. 목 표                | 107 |
| 2. 방 침                | 107 |
| 3. 위기대응 지침 및 판단·고려 요소 | 108 |
| 4. 위기징후 감시            | 109 |
| 가. 위기징후 목록            | 109 |
| 나. 위기징후 감시체계와 운용      | 109 |
| 5. 위기 평가              | 110 |
| 6. 위기경보와 경보 발령        | 112 |
| 가. 위기경보 수준            | 112 |
| 나. 위기경보 절차            | 113 |

|                   |     |
|-------------------|-----|
| 다. 문화재청 상황보고·전파기준 | 115 |
| 7. 비상근무체계         | 117 |

## IV. 위기경보 수준별 조치사항

|                  |     |
|------------------|-----|
| 1. 관 심 [“대비” 단계] | 125 |
| 2. 주 의 [“대비” 단계] | 126 |
| 3. 경 계 [“대응” 단계] | 128 |
| 4. 심 각 [“대응” 단계] | 132 |

## V. 재난상황별 조치내용 및 절차

|                |     |
|----------------|-----|
| 1. 위기상황        | 139 |
| 2. 조치목록        | 140 |
| 3. 조치내용        | 141 |
| 4. 부서별 임무 및 역할 | 147 |

### <기관대응수칙>

|                        |     |
|------------------------|-----|
| 1. 재난관리 체계도 및 절차도      | 151 |
| 2. 문화재청 지진재난 위기대응 프로세스 | 152 |
| 3. 문화재청 부서별 협업기능(지진재난) | 153 |
| 4. 지진대응 관계기관 주요 임무     | 154 |
| 5. 비상연락망               | 156 |

### <부 록>

|                         |     |
|-------------------------|-----|
| 1. 보고서식                 | 167 |
| 2. 주요 지진·지진해일 피해 사례     | 174 |
| 3. 진도 등급별 현상            | 177 |
| 4. 위기상황 전파체계            | 178 |
| 5. 국가위기관리 영상회의 시스템      | 188 |
| 6. 언론홍보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매뉴얼 | 190 |

|                                    |     |
|------------------------------------|-----|
| 7. 국민행동요령 .....                    | 203 |
| 8. 외국인 사상자 관련 주한 공관 상황 공유 체계 ..... | 217 |
| 9. 중앙수습지원단의 표준편제와 임무 .....         | 219 |
| 10. 재난유형별 및 단계별 활동 사항 .....        | 220 |

# 지진

# I . 일반사항

# I. 일반사항

## 1 목 적

이 매뉴얼은 지진으로 인하여 문화재 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문화재청 및 소속기관의 임무·역할, 대응절차/조치사항 등을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음

## 2 적용 범위

가. 지진 위기관리 업무와 관련되는 문화재청,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의 대비·대응 및 수습·복구 활동에 적용

나. 지진으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 적용

1) 지진으로 인한 피해 저감을 위해 분야별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지진(진진·본진·여진)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응급 대책 및 긴급 지원 체계의 가동이 필요할 때

2) 지진(진진·본진·여진)으로 인한 당해문화재 붕괴와 같은 직접적인 피해와 화재, 도난등과 같은 연계피해가 발생한 복합재난 상황일 때

## 3 관련 법규

### 가. 법적 근거

-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2) 「자연재해대책법」
- 3) 「지진·화산재해대책법」
- 4)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 5) 「문화재보호법」
- 6) 「재해구호법」
- 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나. 관련규정 등

- 1)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대통령 훈령)
- 2) 지진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및 실무매뉴얼(행정안전부)
- 3) 지진화산 업무규정(기상청훈령)
- 4) 지진 재난문자방송 운영 규정(기상청훈령)
- 5)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행정안전부예규)
- 6)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 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규정(행정안전부훈령)
- 8)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행정안전부훈령)
- 9) 중앙지진·화산재해원인조사단 운영규정(행정안전부훈령)
- 10)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행정안전부고시)
- 11)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운영지침(행정안전부)
- 12) 재해복구 추진지침(행정안전부)
- 13) 재난긴급대응단 운영규정(행정안전부)
- 14) 지진재난 심리지원 매뉴얼(보건복지부)
- 15) 재난폐기물 안전관리 지침(환경부) 등
- 16) 문화재청 안전상황실 및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 4 용어 정의

| 구분        | 내용  |
|-----------|---|
| 국가위기      | 국가의 주권, 영토와 국민의 생명·재산 등 국가의 핵심요소와 가치에 중대한 위해가 가해질 가능성이 있거나 가해지고 있는 상태<br>(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대통령훈령 제388호)  |
| 국가 위기관리   | 국가위기를 효과적으로 예방·대비하고 대응·복구하기 위하여 국가가 자원을 기획·조직·집행·조정·통제하는 제반 활동과정<br>(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대통령훈령 제388호)   |
| 위기관리 주관기관 | 유형별 위기관리 활동의 주(主)된 책임을 지는 중앙행정기관  |
| 비상상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규모 피해 발생 우려로 일상적 대응보다 훨씬 강화된 조치나 특별한 의사결정이 요구되는 상황</li> <li>비상상황은 진행양상과 대처내용에 따라 결과수습형, 완만진행형, 순간증폭형으로 구분</li> </ul>  |
| 결과수습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황 발생 자체가 이미 대규모 피해로 나타난 유형</li> </ul>   |
| 완만진행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황이 서서히 진행되면서 심각성도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유형</li> </ul>  |
| 순간증폭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발생 초기에는 저강도 수준이었으나, 대응과정에서 심각한 상황으로 급변하면서 중대재난으로 귀결될 수 있는 유형</li> </ul>  |
| 재난관리 유관기관 | 유형별 위기관리 활동에 있어 주관기관의 활동을 지원하고 협조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 재난관리 실무기관 | 위기관리의 대상이 되는 기능·시설을 직접 관리하거나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단체   |
| 재난관리 활동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방 : 위기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감소시킴으로써 위기 발생 자체를 억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li> <li>대비 : 위기상황 하에서 수행해야 할 제반사항을 사전에 계획, 준비, 교육, 훈련함으로써 위기 대응능력을 제고시키고, 위기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태세를 강화시켜 나가는 일련의 활동</li> <li>대응 : 위기 발생 시 국가의 자원과 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추가적인 위기발생 또는 위기의 확대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일련의 활동</li> <li>복구 : 위기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위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고, 평가 등에 의한 제도 개선과 운영체계 보안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며 위기 관리 능력을 강화하는 일련의 활동</li> </ol> |

| 구분   | 내용  |
|------|---|
| 지진   | 지구 내부의 활동과 판구조 운동으로 인해 지구내부, 특히 지각에서 장시간 축적된 에너지가 순간적으로 방출되면서 그 에너지의 일부가 지진파의 형태로 사방으로 전파되어 지표면에 지반이 흔들리는 자연현상으로, 발생 시기에 따라 전진파와 본진 및 여진으로 구분   |
| 전진   | 큰 규모의 지진을 일으키는 단층내에서 본진 전에 발생하는 지진  |
| 본진   | 진원부근(하나의 단층)에서 발생하는 지진 중 가장 규모가 큰 지진  |
| 여진   | 본진 뒤에 발생하는 작은 규모의 지진으로 강한 지진이 발생한 후 단층 주변에 남아있던 탄성에너지가 방출되면서 일어나며, 본진의 규모에 따라 여진의 규모와 발생기간이 비례함   |
| 진원   | 지진발생시 지반의 파괴가 시작된 곳으로 지진파가 발생한 땅속의 지점   |
| 진앙   | 진원의 바로 위 지표면의 지점  |
| 규모   | 지진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에너지의 크기로서, 지진계에 기록된 지진파의 최대진폭과 진앙거리를 이용하여 계산  |
| 진도   | 지진으로 인해 땅이나 사람 또는 물체가 흔들리고 파괴되는 상대적인 크기로서, 기상청은 수정 메르칼리 진도계급(12단계)을 사용함   |
| 액상화  | 포화된 느슨한 모래가 지진의 충격으로 유체처럼 거동하게 되는 현상으로 모래의 입도분포가 특정한 범위에 있고, 지하수위가 높을 때 발생하기 쉬우며, 물 먹은 진흙 모래가 지표로 분출하는 분사·분수현상이 발생.<br>액상화가 발생하면 지반이 지지능력을 잃게 되어 대규모 사면붕괴가 유발되고, 거대 구조물이 기울거나 가라앉으며, 주위의 건축물, 교량, 지중 구조물 등에 피해 발생 |
| 직접피해 | 지진으로 지반이 흔들려 발생하는 직접적인 피해로 지반 균열, 붕괴, 산사태 그리고 구조물 붕괴 등이 발생  |
| 연계피해 | 지진으로 발생한 1차 피해와 연계하여 발생한 2차적인 피해  |
| 복합재난 | 지진으로 연계피해가 발생하여 사회적 위기상황을 초래하는 재난(현행 재난관리 표준매뉴얼 작성대상 재난 등)이 복합적으로 발생한 것   |

## Ⅱ. 위기 형태와 관리 체계

## II. 위기 형태와 관리 체계

### 1 위기 형태

가. 지진이란 지구 내부에 급격한 지각변동이 생겨 그 충격으로 발생한 지진파로 인해 땅이 흔들리는 현상

※ 전진·본진·여진은 시간이 경과되어 지진 활동이 줄어든 후 구분이 가능함

나. 지진이 발생하면 지반의 진동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직접피해)와 직접피해로 인한 연계 피해 발생 가능

1) 직접피해 : 지반이 흔들려 발생하는 직접적인 피해로 지반 변형·붕괴, 산사태, 건축물·도로·철도·댐·항만·라이프라인 등 구조물 피해 등

2) 연계피해 : 직접피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화재, 유해화학물질 유출, 교통 두절, 전력·가스·수도 등 단절, 통신장애, 전산서비스 중단, 방사능 누출 등의 피해

다. 지진 발생 이후 지속적인 여진 등 추가 지진으로 인하여 피해가 확대되며, 더욱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음

라. 직접피해 및 연계피해 이후 사회불안, 도시기능 마비, 경기 침체 등의 간접피해로 확대 가능

### 2 전개 양상

| 현상    |                                   |
|-------|-----------------------------------|
| 지진 발생 | • 지구 내부에 급격한 지각변동으로 땅이 급격하게 흔들림   |
|       | • 지반이 불안정하게 움직이면서 각종 구조물에 영향을 미침  |
|       | • 지진 발생 이후에 여진 등 추가 지진 발생으로 피해 확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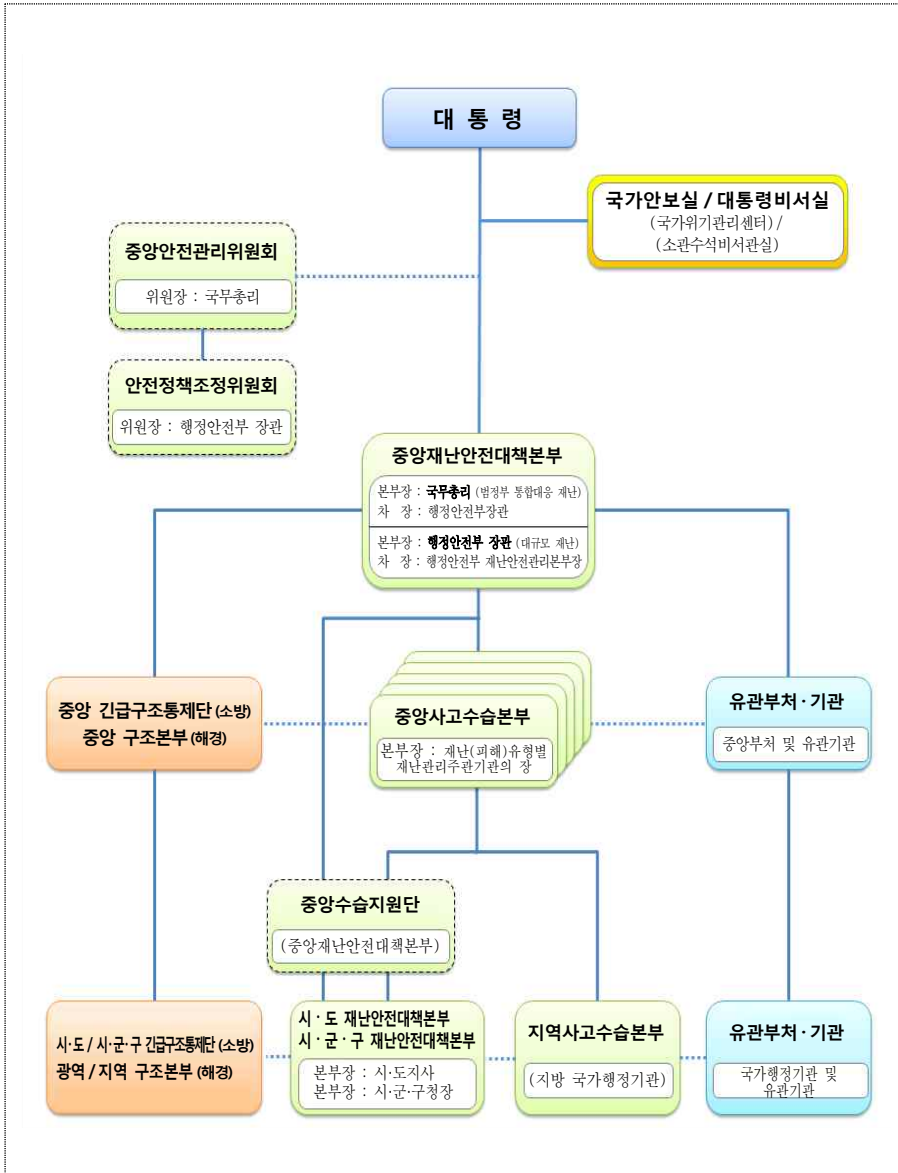
|                          |                                   | 직접피해                           | 연계피해                           |
|--------------------------|-----------------------------------|--------------------------------|--------------------------------|
| 피해 발생                    | 지반 피해                             | 지반 변형·붕괴·액상화                   | 구조물의 2차 붕괴                     |
|                          |                                   | 산사태, 매몰                        | 교통 두절                          |
|                          | 구조물 피해                            | 건축물 손상·파손·붕괴                   | 이재민의 발생, 다중밀집시설 대형 사고 발생 등     |
|                          |                                   | 도로, 철도 시설 손상·파손                | 교통 두절, 고속철도 대형사고,              |
|                          |                                   | 공항 시설 손상·파손                    | 항공 운항 및 수송 마비                  |
|                          |                                   | 항만시설 손상·파손                     | 해상 운항 및 항만 물류 수송 마비            |
|                          |                                   | 전기, 가스, 수도 등 라이프라인 및 공동구 손상·파손 | 전력·가스·수도 공급 중단, 통신 마비, 금융전산 마비 |
|                          |                                   | 위험물 관리시설 손상·파손                 | 유해화학물질 유출, 오염, 위험물 중독 등        |
|                          |                                   | 댐 등 주요 시설물 손상·파손·붕괴            | 댐 하류부 침수·범람 등                  |
|                          |                                   | 원자력 시설 손상·파손                   | 방사능 누출·피폭·오염, 전력 공급 중단 등       |
| 가스관, 유류탱크, 전기설비 등 손상·파손  | 시설물 화재 발생, 지하철 대형화재 등             |                                |                                |
| 건조물 문화재, 동산 문화재 다량 소실·붕괴 | 문화재 도난, 유실 등 문화재 화재 피해 및 사상자 발생 등 |                                |                                |
|                          | ∴                                 | ∴                              |                                |



| 간접 피해                                      |
|--|
| • 대규모 인명 및 시설 피해 등 광범위한 분야에 영향을 초래         |
| • 사회불안 증가, 도시기능 마비, 경기 침체 등 사회적·경제적 분야로 파급 |

### 3 위기관리 체계

#### 가. 종합체계도



#### 나. 위기관리 기구의 임무와 역할

| 구분                        | 임무 및 역할  |
|---------------------------|--|
| 국가안보실<br>(국가위기관리센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난분야 위기 초기 상황 파악, 보고 및 전파</li> <li>재난상황 총괄·조정 및 초기·후속 대응반 운영</li> <li>재난안전관리 정책 총괄</li> </ul>   |
| 대통령비서실<br>(소관 비서관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난 분야별 정책 대응 및 홍보방향 제시</li> <li>재난 분야별 후속대응 및 복구</li> </ul>   |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난관리에 있어 국가차원의 중요정책 조정·심의</li> <li>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심의</li> </ul>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br>(행정안전부장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규모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li> <li>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 소속 직원의 파견, 그밖에 필요한 지원 요청</li> <li>재난예방 및 응급대책 등 재난대비계획 수립(안전취약계층 포함)</li> <li>재난분야 재난징후 목록 및 상황정보 종합·관리</li> <li>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건의</li> <li>재난현장 대응활동 종합 및 조정</li> <li>상황판단회의(위기평가회의)를 통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br/>※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재난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할 수 있음</li> <li>※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필요시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운영 권고할 수 있음</li> <li>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및 중앙사고수습지원단 파견 조치 등</li> <li>중앙사고수습본부와의 협업, 지원 및 총괄·조정 등</li> </ul> |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br>(지방자치단체의 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재난상황 총괄 및 사고수습체계 구축</li> <li>재난현장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한 재난현장 통합 지원본부 설치·운영 (시·군·구 단체장)</li> <li>지역 내 재난관리 책임기관과의 장에게 행·재정상의 조치 및 업무 협조 요청</li> <li>생활안정지원, 응급복구, 의료·교통, 물자지원 등(안전취약계층 대책 포함)</li> <li>지역사고수습본부와의 원활한 협조체제 유지 등</li> </ul>  |

| 구분                           | 임무 및 역할  |
|------------------------------|--|
| 중앙사고수습본부<br>(중앙부처의 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난정보 수집·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시 초동 조치 및 사고수습</li> <li>재난 수습 총괄 조정 및 언론 대응</li> <li>피해상황 조사 및 종합상황 관리</li> <li>관계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재정상의 조치, 소속 직원의 파견, 그밖에 필요한 지원 요청</li> <li>재난수습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지휘</li> <li>피해민 지원 대책 강구 등</li> </ul> |
| 중앙긴급구조통제단<br>(소방청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 기관이 행하는 긴급구조 활동의 역할분담 및 지휘통제 담당</li> </ul>  |
| 지역긴급구조통제단<br>(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별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당해 지역에 소재하는 긴급 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 기관간의 역할분담과 재난현장에서의 지휘·통제를 담당</li> </ul>  |
| 중앙구조본부<br>(해양경찰청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수면에서의 수난구호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li> <li>수난구호 협력기관과 수난 구호 민간단체 등이 행하는 수난구호활동의 역할 조정과 지휘·통제</li> <li>수난구호활동의 국제적인 협력 등</li> </ul>  |
| 광역구조본부<br>(지방해양경찰청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역별 수난구호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li> <li>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수난구호 협력기관과 수난 구호 민간단체 등이 행하는 수난구호활동의 역할 조정과 수난현장에서의 지휘·통제</li> <li>관할해역의 수난구호활동과 관련하여 타국 구조조정센터(RCC)간 국제적인 협력 등</li> </ul>  |
| 지역구조본부<br>(해양경찰서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할해역 내 해양사고 발생 시 수색구조 활동에 관한 직접적인 지휘 책임 및 권한을 가지고 수색구조세력의 효율적 운영</li> <li>해상에서 수난구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조대 편성 및 운영</li> <li>응급환자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 긴급이송을 위한 급급대 편성·운영</li> </ul>  |
| 중앙수습지원단<br>(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대책본부장 등 재난 발생지역의 책임자에 대하여 사태수습에 필요한 기술자문·권고 또는 조언</li> <li>중앙대책본부장에게 재난수습을 위한 재난현장 상황, 재난발생의 원인, 행정적·재정적으로 조치할 사항 및 진행 상황 등에 관한 보고</li> </ul>   |

## 다. 지진 대응체계

###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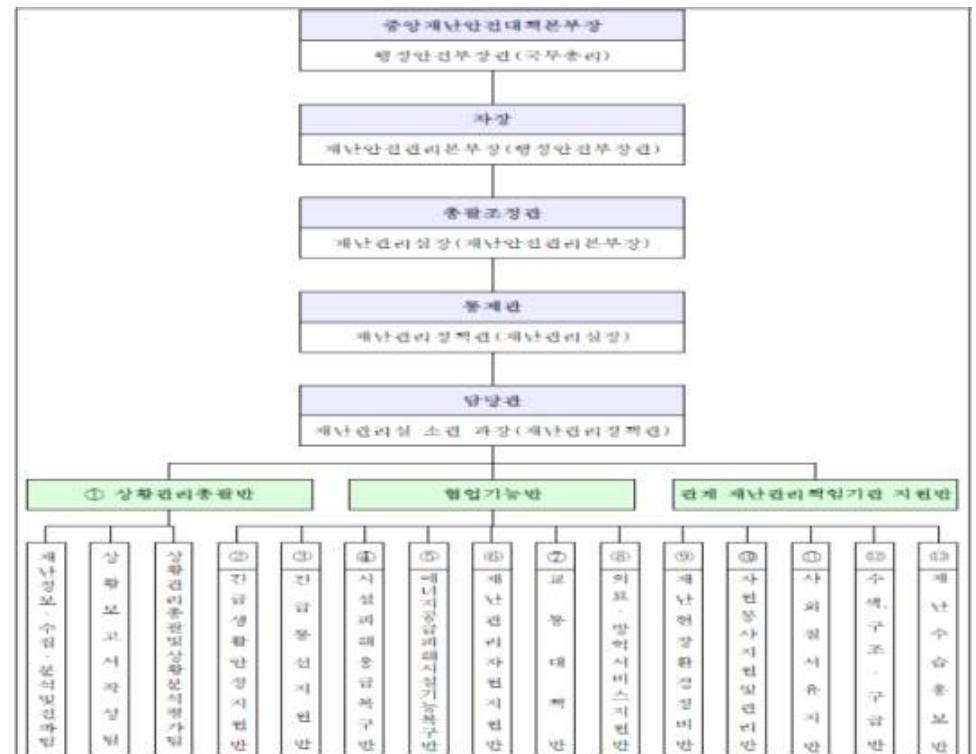
| 구분            | 발령기준  |
|---------------|---|
| 중대본<br>비상 1단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륙에서 규모 4.0~4.9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li> <li>국내외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우리나라에서 최대 진도 V 이상이 발생한 경우</li> </ul>   |
| 중대본<br>비상 2단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륙에서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li> <li>국내외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우리나라에서 최대 진도 VI 이상이 발생한 경우</li> </ul>   |
| 중대본<br>비상 3단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륙에서 규모 5.0이상 지진이 발생하여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li> <li>국내외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우리나라에서 최대 진도 VI 이상이 발생하여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li> </ul> |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4조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재난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할 수 있음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필요시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운영 권고할 수 있음

※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국외지진 발생시(국내 진도IV이상)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비상단계 가동 검토

###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조직도



## 다-1. 문화재청 대응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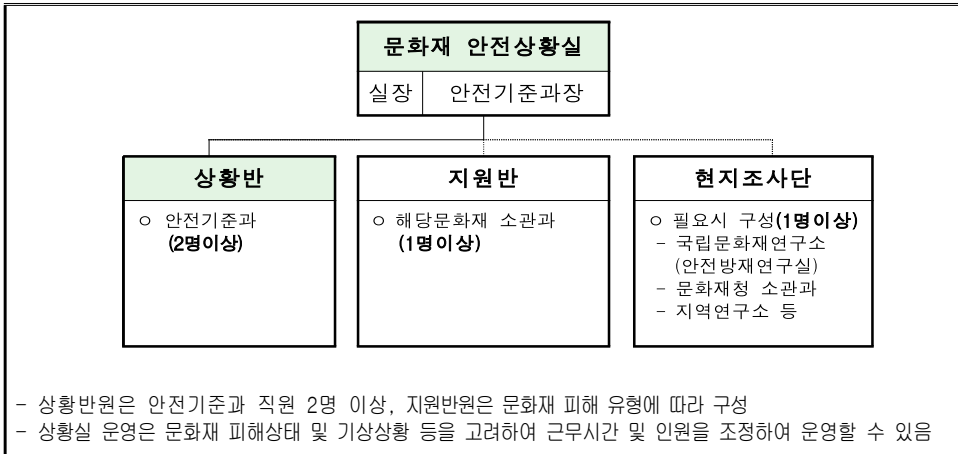
### 1) 비상기구 운영기준

- 사전예측 및 피해과악이 어려운 지진특성을 감안하여 **지진규모에 따라 비상기구 우선 가동**
- 비상기구 가동 후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여 피해규모 등에 따라 위기대응 단계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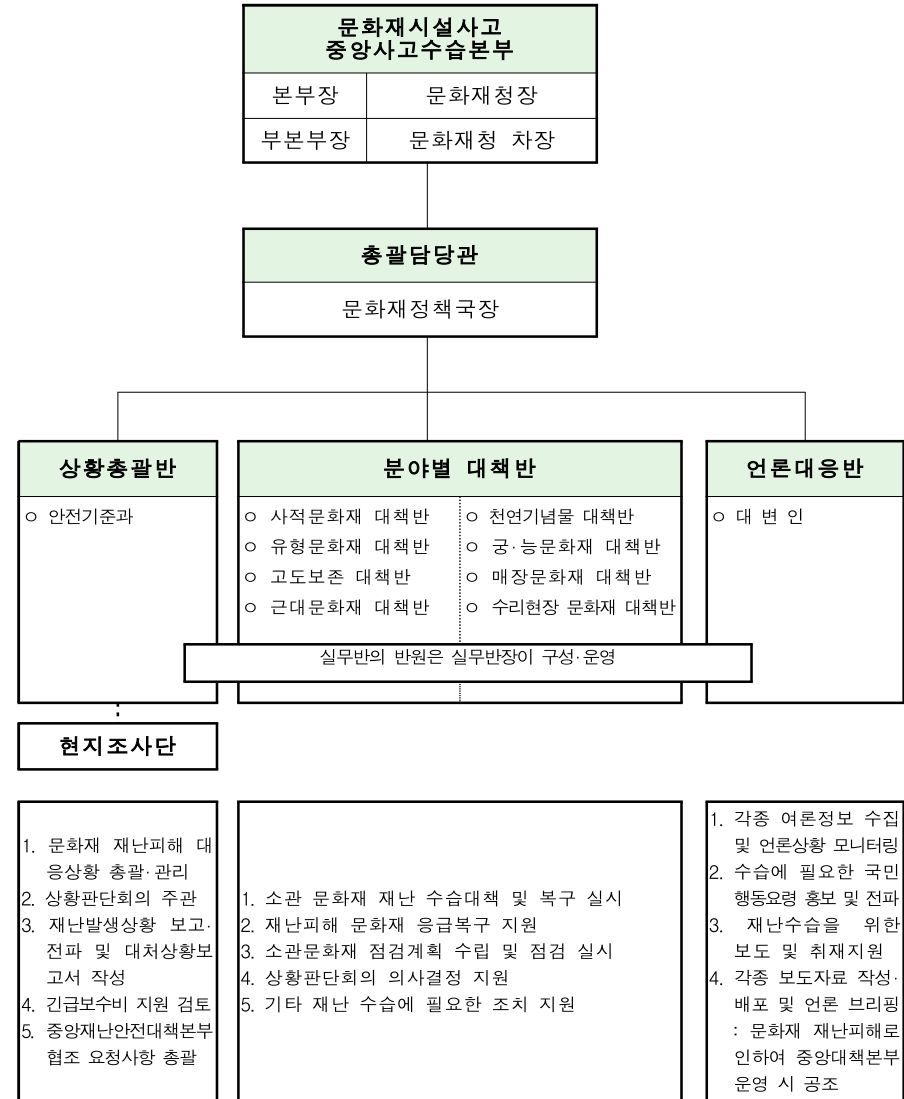
| 구분                       | 운영기준                                    |
|--------------------------|---|
| 상황관리                     | ○ 내륙에서 지진 규모 3.1 ~ 3.9<br>○ 최대진도Ⅳ의 지진발생 |
| 1단계<br>(문화재 안전상황실 구성·운영) | ○ 내륙에서 지진 규모 4.0 ~ 4.9<br>○ 최대진도Ⅴ의 지진발생 |
| 2단계<br>(문화재청 중수본 구성·운영)  | ○ 내륙에서 지진 규모 5.0이상<br>○ 최대진도Ⅵ 이상의 지진발생  |

※ 진도 Ⅳ : 실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느낄 수 있으며, 창문, 문등이 소리를 낸  
진도 Ⅴ : 거의 모든 사람들이 지진동을 느끼며, 창문 등이 깨짐, 회반죽에 금이감  
진도 Ⅵ : 모든 사람들이 느끼며, 무거운 가구가 움직임, 벽의 석회가 떨어짐  
(부록3, 진도 등급별 현상 참조 147쪽)

### 2) 문화재청 안전상황실 구성도



### 3)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도



※ 총괄담당관 및 상황총괄반장은 각각 문화재정책국장, 안전기준과장으로 하나, 단일 유형의 문화재 재난피해의 경우 원활한 대처를 위하여 각각 해당업무의 담당 국장, 과장으로 지명할 수 있음

4) 중앙사고수습본부 실무반 편성기준 및 역할

| 구분         | 인원수                | 담당업무  | 비고   |     |
|------------|--------------------|---|--|-----|
| 상황<br>총괄반  | 반장 1<br>반원 2       | 1. 문화재 재난피해 대응상황 총괄·관리<br>2. 상황판단회의 주관<br>3. 재난상황 보고전파 및 상황보고서 작성<br>4. 긴급보수비 지원 검토<br>5.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협조 요청사항 총괄 | 안전<br>기준과  |     |
| 분야별<br>대책반 | 사적<br>문화재<br>대책반   | 반장 1<br>반원 1  | 1. 사적 등 소관문화재 재난 수습대책 및 복구 실시<br>2. 재난피해 문화재 응급복구 지원(문화재 돌봄사업단 이용)<br>3. 소관문화재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br>4. 상황판단회의 의사결정 지원 | 보존과 |
|            | 유형<br>문화재<br>대책반   | 반장 1<br>반원 1  | 1. 국보·보물 건조물, 동산문화재 등 소관문화재 재난 수습대책 및 복구 총괄<br>2. 소관문화재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br>3. 상황판단회의 의사결정 지원                        | 유형과 |
|            | 고도보존<br>대책반        | 반장 1<br>반원 1  | 1. 고도지역 등 소관문화재 재난 수습대책 및 복구 총괄<br>2. 소관문화재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br>3. 상황판단회의 의사결정 지원                                    | 고도과 |
|            | 근대<br>문화재<br>대책반   | 반장 1<br>반원 1  | 1. 국민, 등록문화재 등 소관문화재 재난 수습대책 및 복구 총괄<br>2. 재난피해 문화재 응급복구 지원<br>3. 소관문화재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br>4. 상황판단회의 의사결정 지원        | 근대과 |
|            | 천연<br>기념물<br>대책반   | 반장 1<br>반원 1  | 1. 천기,명승 등 소관문화재 재난 수습대책 및 복구 총괄<br>2. 소관문화재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br>3. 상황판단회의 의사결정 지원                                   | 천기과 |
|            | 궁·능<br>문화재<br>대책반  | 반장 1<br>반원 1  | 1. 궁·능 등 소관문화재 재난 수습대책 및 복구 총괄<br>2. 재난피해 문화재 응급복구 지원(직영사업단 이용)<br>3. 소관문화재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br>4. 상황판단회의 의사결정 지원    | 복원과 |
|            | 매장<br>문화재<br>대책반   | 반장 1<br>반원 1  | 1. 매장 문화재, 발굴현장 등 재난 수습대책 및 복구 총괄<br>2. 소관문화재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br>3. 상황판단회의 의사결정 지원                                  | 발굴과 |
|            | 수리현장<br>문화재<br>대책반 | 반장 1<br>반원 1  | 1. 문화재 수리현장 재난 수습대책 및 복구 총괄<br>2. 소관문화재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br>3. 상황판단회의 의사결정 지원  | 수리과 |
| 언론대응반      | 반장 1<br>반원 1       | 1.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방송 상황 모니터링<br>2. 재난수습을 위한 보도 및 취재지원<br>3. 각종 보도자료 작성·배포 및 언론 브리핑                                | 대변인  |     |

\* 분야별 대책반은 필요한 반만 탄력적으로 구성·운영

라. 협업기능별 활동내용

| 구분                | 활동내용   | 책임기관                           |
|-------------------|--|--------------------------------|
| ① 재난상황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수기관 수행 전반적 재난관리활동 지원·조정</li> </ul>   | 행정안전부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협업기능 지원·조정 및 상황관리 총괄</li> <li>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li> <li>재난단계별 상황판단회의 준비·개최</li> <li>재난진행상황 등 모니터링결과 보고·전파</li> <li>대처상황보고서 등 상황보고서 관리</li> <li>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조치</li> <li>재난사태 선포 검토(필요시)</li> </ul> |                                |
| ② 긴급 생활안정<br>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난발생지역 세제·금융지원, 전기·통신료 감면</li> </ul>  | 행정안전부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재민 구호 상황파악 및 공유</li> <li>관계부처 및 구호지원기관(대한적십자사 및 전국재해구호협회 등)에 구호협조 요청</li> <li>유관부처 및 기관 협조 요청</li> <li>구호기관(해당 지자체) 구호대응 지시</li> <li>현장(임시주거시설 지정) 연락관 파악</li> <li>재해구호기금 활용 및 지원독려</li> </ul>       |                                |
| ③ 긴급통신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긴급구조기관, 긴급구조 지원기관 간 긴급통신체계 운영</li> </ul>  | 행정안전부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난현장에서 통신두절 등 피해상황 파악 및 긴급통신지원단 비상연락체계 가동</li> <li>중앙 긴급통신지원단 구성·운영</li> <li>시·도 긴급통신지원단과의 협업체계 가동</li> <li>지휘통신 두절 및 지휘관의 요청에 따른 재난현장 긴급통신망 구축·운영</li> </ul>   |                                |
| ④ 시설 피해의 응<br>급복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피해시설 응급복구</li> </ul>  | 국토교통부<br>지대본<br>환경부<br>농림축산식품부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하천시설(댐 제외), 철도, 항공, 도시개발 등 소관시설</li> </ul>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택 또는 주거를 겸한 상가</li> </ul>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댐, 홍수의 예보·경보 시설 등 소관시설</li> </ul>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방조제, 저수지, 배수장 등 수리시설</li> <li>농경지, 농림시설, 축사, 비닐하우스</li> </ul>   |                                |



| 구분               | 활동내용  | 책임기관                    |
|------------------|---|-------------------------|
| ④ 시설 피해의 응급복구    | - 여항시설, 어선, 어업 무선국시설, 등대시설, 항만시설<br>- 염전, 어선, 어망·어구, 수산물 증·양식시설, 수산생물입식   | 해양수산부                   |
|                  | - 국립·공립·사립 학교시설   | 교육부                     |
|                  | - 산사태, 산지계류, 사방댐 및 임도, 휴양림, 수목원<br>- 자목 및 표고버섯 재배사, 산림작물  | 산림청                     |
|                  | - 정보통신시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⑤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복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스·전기·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 회복 지원</li> </ul>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너지 긴급 지원 등 재난대응 상황실 운영</li> <li>- 에너지공급시설 등 국가기반시설 및 산업단지 피해시설 에너지 긴급복구 지원</li> <li>- 국민생활밀착형 피해시설 에너지기능 회복지원</li> <li>- 재난현장 및 에너지 공급 고립지역 긴급 지원 요청</li> <li>- 임시 재난대책본부 에너지 공급 지원</li> <li>- 이재민 임시 수용시설 긴급에너지 지원</li> </ul>                    | 산업통상자원부                 |
| ⑥ 재난 관리 자원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체계 구축을 통한 신속한 자원배분</li> </ul>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규모 피해지역 부족 자재·장비·인력 지원체계 가동(부족자원 파악 및 긴급지원)</li> <li>- 자원 응원 요청 및 조정 : 관계기관, 단체 자원 응원 요청, 필요시 자원조정</li> <li>- 자원 응원 관리 : 재난현장 자원 투입 추적, 재난현장 자원 도착 확인</li> <li>- 지원 추가 지원 필요 파악 : 추가 투입 필요시 자원 지원 또는 종료</li> <li>- 자원 지원 실적 정리, 보고서 작성</li> </ul> | 행정안전부                   |
| ⑦ 교통대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상(육로, 항공), 해상 교통수단 지원</li> </ul>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t; 교통재난시 &gt;</li> <li>- (교통) 사고 수습상황실 운영 및 사고수습 총괄, 교통정보(상황) 수집 및 제공, 교통통제 및 도로 긴급복구 실시, 대체교통수단 확보 및 운행, 우회로 확보 및 개설</li> <li>- (철도·지하철) 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및 사고수습 활동, 교통정보(상황) 수집 및 제공, 대체교통수단 확보 운행</li> </ul>                                      | 행정안전부<br>국토교통부<br>해양수산부 |

| 구분               | 활동내용   | 책임기관         |
|------------------|--|--------------|
| ⑦ 교통대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공) 항공교통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및 사고 수습 활동, 수송수단 및 인력 지원, 대체교통수단 확보 운행</li> <li>&lt; 교통지원(수송)대책시 &gt;</li> <li>- (교통) 특별교통(수송)대책 수립 시행, 수송수단·장비·인력 지원, 교통수단별 노선 및 운행 조정, 대체교통수단 확보 및 운행</li> <li>- (철도·지하철) 수송수단 및 인력 지원, 교통정보(상황) 수집 및 제공, 노선 및 운행 조정</li> <li>- (항공) 수송수단 및 인력 지원, 교통정보(상황) 수집 및 제공, 노선 및 운행 조정</li> </ul>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중보건서비스, 전염병 방역 서비스</li> </ul>  |              |
| ⑧ 의료 및 방역 서비스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t; 재난대응 응급의료지원체계 가동 &gt;</li> <li>- 재난현장 응급의료지원체계 가동</li> <li>- 응급의료기관 응급실 진료 강화</li> <li>- 응급의료자원 확보·지원 및 유관기관 정보공유</li> <li>- 신속한 혈액공급을 위한 대비태세 확립</li> <li>&lt; 감염병 예방 및 방역체계 가동 &gt;</li> <li>- 중앙방역비축물품 확보 및 지원</li> <li>-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li> <li>- 재해지역 방역 강화</li> </ul>  | 보건복지부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상·해상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수거·처리 지원</li> </ul>  |              |
| ⑨ 재난현장 환경정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현장 환경정비 협업기능 책임부서·지원기관 지정 및 역할 부여</li> <li>- 안전점검, 안전교육·훈련, 재난대응 매뉴얼 등 재난 관련 자료 최신화 등 평시 대비활동 추진</li> <li>- 상황실 설치·운영, 재난현장 및 지원기관, 협조부처 등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확인·정비 유지</li> <li>- 재난폐기물 발생량 등 재난현장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여 환경정비 지원대책을 강구하는 등 대응체계 및 지원체제 구축</li> <li>- 재난현장 환경정비 소요비용에 대한 국고지원 방안 협의·검토</li> <li>- 재난폐기물 수거·처리계획 시행(재난 지자체 협조)</li> </ul> | 환경부<br>해양수산부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류유출에 따른 해상방제</li> </ul>  | 해양경찰청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사능 유출에 따른 폐기물처리</li> </ul>   | 원자력안전위원회     |



| 구분                  | 활동내용  | 책임기관                |
|---------------------|---|---------------------|
| ⑩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난지역 배정, 자원봉사자 관리, 공공근로 및 기술지원</li> </ul>  | 행정안전부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원봉사 활동 상황 취합 및 행정안전부 재난자원 관리과와 정보공유</li> <li>현장에서 자원봉사 인력에게 필요한 물품과 기자재 부족 시 조정기관에 보고 및 협조요청</li> <li>중앙·지역자원봉사센터와 재난현장 상황공유</li> <li>자원봉사자 개인 및 단체 언론활동 현황관리</li> <li>사후 평가를 위한 자원봉사자 활동 모니터링</li> </ul> |                     |
| ⑪ 사회질서유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통통제, 현장통제, 안전관리, 주민대피</li> </ul>  | 경찰청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해발생 우려지역 순찰강화 및 출입통제</li> <li>피해지역 범죄예방 및 치안유지</li> </ul>   |                     |
| ⑫ 재난지역 수색, 구조·구급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명구조, 응급처치, 응급환자이송, 사망·실종자 수색</li> </ul>   | 소방청<br>해양경찰청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긴급구조통제단 운영</li> <li>인명피해 발생대비 응급의료기관의 준비상황 및 비상연락망 점검</li> <li>고립지역, 침수지역, 산사태, 화학·방사능 등으로 접근 곤란 예상지역 인명구조·대피계획수립</li> </ul>   |                     |
| ⑬ 재난수습 홍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난대처 관련 각종 정보 배포·조정</li> </ul>   | 중수본<br>지대본<br>현장대변인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수본 등 재난 관련 정부 대책 등에 대한 보도 자료 배포 등 언론대응 활동을 담당하며 중대본, 지대본과 조율된 정보 배포</li> <li>재난관련책임기관의 재난대응 활동 등에 대한 자료 제공, 필요시 개별 언론대응활동</li> </ul>  |                     |

라-1. 문화재청 협업기능별 활동내용

| 구분            | 활동내용   | 소관부서<br>(협조부서)  |
|---------------|--|---|
| ① 재난상황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수기관 재난관리활동 총괄·조정</li> </ul>  | 안전기준과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난 발생 접수 및 진행상황 파악</li> <li>초기 대응 및 상황보고·전파(BH, 총리실, 청·차장 등)</li> <li>피해지역 문화재 피해실태 파악 및 대처</li> <li>직원 비상소집 및 상황판단회의 개최 준비</li> <li>위기단계별 대응반 인원편성 및 운영지원(필요시)</li> <li>자체 상황판단회의 개최</li> <li>회의 결과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li> <li>지역사고수습본부 대응태세 점검 및 협조요청</li> <li>중대본(행정안전부) 가동 시 지원업무 총괄</li> <li>인명 및 문화재 피해 최소화를 위한 중수본 긴급 특별지시</li> <li>대처상황 총괄 보고서 작성, 신속한 보고 및 전파</li> <li>인명 및 문화재 피해 현황 총괄 관리 등</li> </ul> |   |
| ② 긴급 생활안정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난발생지역 세제·금융지원등 생활안정지원</li> </ul>   | 안전기준과<br>(기획재정담당관)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재민 발생 파악·관리</li> <li>임시주거시설 및 재해후호물자 지원</li> <li>행·재정적 지원 검토(특별교부세 등)</li> </ul>   |   |
| ④ 시설 피해의 응급복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피해시설 응급복구</li> </ul>  | 소관부서<br>(안전기준과,<br>기획재정담당관,<br>수리기술과,<br>보존정책과,<br>유형문화재과,<br>근대문화재과,<br>천연기념물과,<br>공능유적본부 등)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재 안전여부 및 피해상황 파악 및 응급복구 지원</li> <li>피해복구계획 수립 지원</li> <li>소관부서별 피해시설 응급복구</li> <li>피해 복구비 지원 요청 시 국고보조 여부 검토</li> <li>재난발생 및 피해지역 응급 복구 장비·인력·자재 지원</li> <li>응급복구 추진상황 관리·점검</li> </ul>   |   |
| ⑥ 재난관리 자원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난으로 인한 재난자원 지원 총괄·조정</li> </ul>  | 안전기준과<br>(운영지원과)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응급의료 자재·인력·장비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가동</li> <li>긴급 구매물품 조달 협조(운영지원과 협조)</li> <li>재난 복구용 중장비 등 재난관리자원 동원</li> <li>군 인력·장비 지원을 위한 국방부 협력체계 가동</li> <li>긴급상황 및 교통두절 지역 산림항공 헬기 지원</li> </ul>   |   |

| 구분             | 활동내용   | 소관부서<br>(협조부서)                          |
|----------------|--|---|
| ⑨ 재난현장 환경정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난현장쓰레기·환경 오염물질 처리 등</li> </ul>   | 안전기준과<br>(수리기술과,<br>보존정책과,<br>공능유적본부 등)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피해 문화재 주변정리 및 손상 부재, 파편 수습</li> <li>문화재표시 라벨 부착 조치</li> <li>쓰레기, 환경오염 물질 발생 및 처리 현황 파악·관리</li> <li>집게자, 폐기물 운반차량 등 장비 동원 등</li> </ul>   |   |
| ⑩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원봉사자 동원 및 배정, 기술인력 지원 등</li> </ul>   | 안전기준과<br>(수리기술과,<br>보존정책과,<br>공능유적본부 등)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원봉사자 모집</li> <li>자원봉사활동 기능 분류·배치</li> <li>자원봉사자 투입현황 파악 및 관리</li> <li>자원봉사자 안전관리 및 급식지원</li> <li>민간자원봉사 장비·인력지원요청 및 관리</li> </ul>  |   |
| ⑬ 재난수습 홍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재 재난 대응 언론·대국민 홍보 등 재난공보체계 운영</li> </ul>  | 대변인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국민 행동요령 및 주의 사항 등 홍보</li> <li>재난방송 및 보도자료 작성·배포(중대본부 가동 및 대응상황, 위기경보 발령사항 등)</li> <li>언론브리핑 및 정부합동 담화문 발표</li> <li>지상파 방송, 지역 방송사에 자막 방송 요청</li> <li>오보 및 유언비어 대응</li> </ul> |   |

※ 문화재청은 지진 재난관리 관계기관으로 대부분의 협업기능은 재난안전 관리부서인 안전기준과에서 총괄담당

## 마. 재난현장 대응·수습 표준체계

### 1) 재난현장 대응·수습 표준편제

- 재난현장 대응·수습 편제는 공보, 연락, 상황총괄(대응계획), 현장대응, 자원지원, 대민지원(긴급복구)으로 표준화



### 2) 재난현장 지휘 및 협력체계

- 현장대응
  - (긴급구조 상황) 육상재난은 소방, 해상재난은 해경이 중심으로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지원본부를 통해 관내 행정기관(군부대, 특행기관 등)을 총괄하여 재난대응 통합지원
  - (비긴급구조 상황) 각 유형별 소관기관에서 담당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지원본부를 통해 관내 행정기관(군부대, 특행기관 등)을 총괄하여 재난대응 통합지원
- 수습복구
  -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지휘권을 위임받아 수습복구 현장 지휘
  - 소방·해경은 기관의 기본 편제를 가지고 지원에 참여하고, 군·경·유관기관·협회·단체는 통합지원본부장의 지휘를 받아 수습·복구를 지원



3) 시군구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 Ⅲ. 위기관리 기본방향

### Ⅲ. 위기관리 기본방향

#### 1 목 표

- 가. 지속적인 지진 대비 활동 및 지진 발생 대비 신속한 상황 전파 체계의 구축·운영
- 나. 지진 발생 시 신속한 피해상황 파악과 초동대응으로 지진 발생 초기의 혼란 방지
- 다. 지진에 의한 직접피해와 이로 인한 연계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 최소화

#### 2 방 침

| 구 분     |      | 대 응 방 침   |
|---------|------|---|
| 대응단계    | 초동조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상황 파악 및 전파, 재난상황 신속보고</li> <li>• 문화재 안전상황실 근무자 비상소집 및 신속한 응소</li> <li>• 지자체,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구축</li> </ul>  |
|         | 대응조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계별 위기대응기구 구성·운영</li> <li>• 현지조사단 구성·운영 : 주요문화재 피해 조사</li> <li>• 피해 지역 문화재 현장점검</li> <li>•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실시요청 (우장막 설치, 전기가스시설 차단, 도난방지대책 등)</li> </ul> |
| 복 구 단 계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재 피해액 및 복구액 조사</li> <li>• 문화재 복구계획 수립</li> <li>• 문화재 복구 예산지원(긴급보수비)</li> </ul>   |

### 3 위기대응 지침 및 판단·고려 요소

#### 가. 위기대응 지침

##### 1) 대응 개념

- 목표 : 신속한 문화재 피해 상황파악 및 문화재 2차 피해 최소화
- 대응 방향
  - 초기 관련정보 부재를 고려한 지진 규모별 대응조치 자동실행
  - 일정규모 지진 발생 시 주요간부에게 동시에 상황보고 실시
  - 유관기관 및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와 비상연락체계 구축
  - 여진 등에 의한 2차 피해(연계 피해)방지를 위한 긴급 조치 실시

##### 2) 대응 지침

- 지진 규모별 대응조치 자동실행

| 구 분  | 조 치 사 항  | 비 고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륙(규모3.1~3.9이하)</li> <li>○ 최대진도Ⅳ</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진상황 보고(담당자 일괄보고)</li> <li>• 문화재 피해현황 파악(지자체, 유관기관 이용)<br/>-지자체,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구축</li> </ul> | 상황<br>관리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륙(규모4.0~4.9이하)</li> <li>○ 최대진도Ⅴ</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전 단계 모든 조치 실행</li> <li>• 문화재 안전상황실 구성·운영</li> <li>• 현지조사단 구성·운영(필요시)</li> </ul>            | 비상기구<br>가동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륙(규모 5.0 이상)</li> <li>○ 최대진도Ⅵ</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전 단계 모든 조치 실행</li> <li>•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운영</li> <li>• 문화재청장 지진피해 현장 점검(필요시)</li> </ul>        |            |

※ 부록3, 진도 등급별 현상 참조(155쪽)

□ 신속한 상황 보고·전파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 신속한 상황 보고·전파를 위한 동시보고 실시
  - 안전기준과 담당 사무관 또는 담당 주무관이 동시보고 실시  
(상황보고는 안전기준과장, 문화재정책국장, 청장, 차장 동시보고)
  - 상황 보고자는 안전기준과 모든 직원에게 지진발생 상황 및 주요 간부 보고여부 전파
- 유관기관 및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와 비상연락체계 구축
  - 문화재 피해현황 파악 요청(문화재청→지자체)
    - \* 시설관리자, 큐레이터, 보존전문가, 방호책임자 등의 의사결정자들이 전체 상황에 대한 신속한 조사 실시(피해 문화재를 사진으로 촬영하고 상세하게 기록)
  - 피해 문화재 응급복구 및 보호조치 실시 요청(문화재청→지자체)
  - 현지조사단과 연락체계 구축을 통한 피해현황 실시간 파악

□ 2차 피해방지 및 긴급 수습 주력

- 강진 발생 후 붕괴, 화재 및 폭발 등 2차 피해 유발 요소에 대한 점검과 피해 방지 대책 강구
- 붕괴된 문화재 파손부재 및 동산문화재에 대한 긴급 수습

나. 판단/고려 요소

- 본진으로 인해 손상된 문화재의 여진에 따른 추가 손괴 방지 조치
- 문화재 보호구역 내 지진으로 파손된 전기, 가스 등의 재 공급시 안정성을 고려한 공급방안 마련

4 위기징후 감시

가. 위기징후 목록

| 위기형태          | 위기징후   | 감시수단       | 감시방법          | 위기경보  | 조치             |
|---------------|--|------------|---------------|---|----------------|
| 지진으로 인한 피해 발생 | ○ 내륙에서 규모 4.0 미만의 지진이 특정 지역에서 빈번하게 발생<br>-최대진도 IV의 지진 발생 | 기상청의 지진 관측 | 기상청의 지진 통보 확인 | 위기평가에 따라 관심~주의  | 대비태세 유지        |
|               | ○ 지진 발생<br>- 내륙에서 규모 4.0 ~ 4.9 지진 발생<br>- 최대진도 V의 지진 발생  | 기상청의 지진 관측 | 기상청의 지진 통보 확인 | 경계<br>※ 지진 발생 이후, 추가 지진(본진·여진) 발생, 피해 확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경계' 경보 발령 |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 |
|               | ○ 지진 발생<br>- 내륙에서 규모 5.0 이상 지진 발생<br>- 최대진도 VI 이상의 지진 발생 | 기상청의 지진 관측 | 기상청의 지진 통보 확인 | 심각<br>※ 지진 발생 이후, 추가 지진(본진·여진) 발생, 피해 확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심각' 경보 발령 |                |
|               | ○ (경계 및 심각 단계 해제 이후) 지속적으로 여진이 발생하는 상황                   | 기상청의 지진 관측 | 기상청의 지진 통보 확인 | 위기평가에 따라 관심~주의  | 대비태세 유지        |

※ 지진은 발생 전 예측이 불가능하며 위기상황이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으므로, 피해상황과 진행양상 등을 고려하여 위기상황 관리

나. 위기징후 감시체계와 운용

- 1) 근거 :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제20조(징후감시체계 운용)
- 2) 기상청은 지진관측 정보 및 특보 발령 시 관련기관에 전파
- 3) 행정안전부는 기상청의 지진 관측 및 특보를 통하여 위기징후의 활동 상태를 감시하고, 포착된 위기징후 정보를 관련기관에 제공
- 4) 위기징후 감시결과는 기상청의 지진통보 및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을 통하여 공유·전파

## 5 위기 평가

가. 근거 :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제20조(징후감시체계 운용)

### 나. 위기평가 개요

- 1) 행정안전부는 상황의 심각성, 시급성, 확대 가능성, 전개속도, 지속 시간, 파급효과, 국내외 여론, 정부대응능력 등을 종합 고려하여 지진으로 인한 위기평가 및 위기 경보 발령
- 2) 행정안전부는 위기징후를 포착하거나 위기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기상청 등 관계기관과 수시로 위험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위기평가회의”를 운영

#### 위기평가회의(상황판단회의) 구성

1. 참석 : 재난관리정책관(주재), 지진방재관리과장, 지진방재정책과장, 중앙재난안전상황실, 기상청 관계자 등  
※ 재난상황 경중에 따라 참석 대상의 직급은 조정될 수 있음
2. 운영 방법 : 대면회의, 영상회의, 유선 등  
※ 야간, 공휴일 등 신속한 위기평가회의가 필요한 경우 과장 또는 상황담당관 등이 유·무선 또는 문자·SNS 등으로 간략히 협의 가능, 회의결과 즉시 전파·공유
3. 상황판단회의 개최 시 참여기관(장관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 위기평가를 겸한 상황판단회의)  
○ BH, 행정안전부, 기상청, 국토교통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방청, 경찰청 등 관련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 재난상황 경중에 따라 참석 대상의 직급은 조정될 수 있음
4. 위기평가회의 및 상황판단회의 결과, 필요한 경우 해당 지자체 및 관계부처 등에 전파하여 사전 대비토록 통보

3) 행정안전부는 기상청 등의 관계기관과 위기평가를 위한 “정기위기평가회의”를 실시(상·하반기 각 1회)

4) 필요시, 위기징후 감시 평가결과는 홈페이지, 국민재난안전포털 등을 통하여 국민에게 알림

### 다. 지진 위기평가 절차 및 방법

1) 정기위기평가 : 일정 기간 발생한 지진 현황 및 국내·외 지진 발생 동향 등을 정기적으로 분석하여 위기징후 관리 및 위기평가

가) 주간평가 : 주 1회, 지진 발생 현황 분석을 통하여 위기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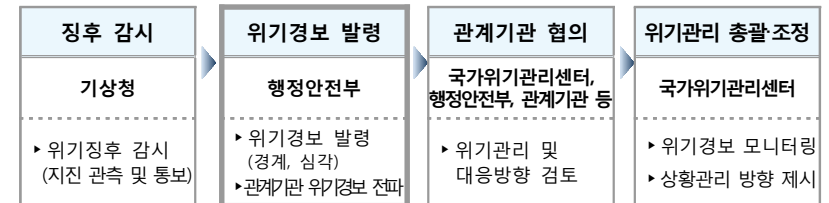
나) 반기평가 : 상·하반기 1회, 기상청 등 관계기관 참여 위기평가회의를 통해 지진 발생 동향 분석, 위기징후 관리 및 위기평가 개선방안 마련

※ 일정 기간 지진 발생 현황을 분석하여 지진 발생이 빈번한 지역의 위기징후 감사관리 강화

2) 수시위기평가 : 국내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지진이 발생 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위기평가 및 위기경보 발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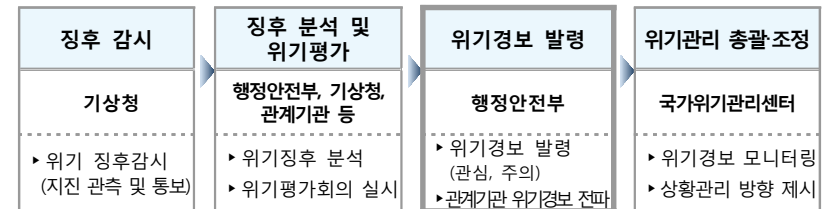
가) 규모 4.0 또는 진도 V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 즉시

위기경보(경계, 심각) 발령 후 관계기관 통보



※ 규모 5.0 또는 최대진도 VI 이상 지진 발생 시, 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 후 국가위기관리센터와 협의

나) 특정 지역에서 규모 4.0 미만의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할 경우, 지진 분석 및 위기평가 후 위기경보(관심, 주의) 발령 및 대응 수준 결정



## 6 위기경보와 경보 발령

### 가. 위기경보 수준

| 구분             | 판단기준  | 주요활동                     | 대응활동        |
|----------------|---|--------------------------|-------------|
| 관심<br>(Blu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규모 4.0 미만의 지진 또는 최대진도 V 미만의 지진이 특정 지역에서 짧은 기간 동안 2회 이상 발생하여, 상황관리 및 감시활동이 필요한 상황</li> <li>'경계' 및 '심각' 단계 해제 이후, 낮은 위험 수준의 여진이 지속적으로 발생 하는 상황</li> </ul>                                    | 관련기관 간 협조체계 점검           | 대비단계        |
| 주의<br>(Yellow)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규모 4.0 미만의 지진 또는 최대진도 V 미만의 지진이 특정 지역에서 짧은 기간 동안 3회 이상 발생하여, 상황관리 및 관련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li> <li>'경계' 및 '심각' 단계 해제 이후, 높은 위험 수준의 여진이 지속적으로 발생 하는 상황</li> </ul>                               | 관련기관 간 협조체계 가동           | 대비단계        |
| 경계<br>(Orang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륙에서 규모 4.0 ~ 4.9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li> <li>최대진도 V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li> <li>지진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되어 중앙정부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상황</li> <li>※ 추가 지진(본진·여진) 발생, 피해 확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경계" 경보 발령</li> </ul>     | 조치계획 점검 및 인적·물적 자원 동원 준비 |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 |
| 심각<br>(Red)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륙에서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li> <li>최대진도 VI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li> <li>지진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피해 확대가 예상되어 범정부적 대처가 필요한 상황</li> <li>※ 추가 지진(본진·여진) 발생, 피해 확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심각" 경보 발령</li> </ul> | 즉각 대응태세 유지               |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 |

※ 재난에 대한 위기경보 수준 판단을 위한 기준 제시이며, 실제 경보발령 및 대응활동은 상황의 전개속도, 파급효과 및 피해 발생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상황판단회의(위기평가회의)에서 결정

### 나. 위기경보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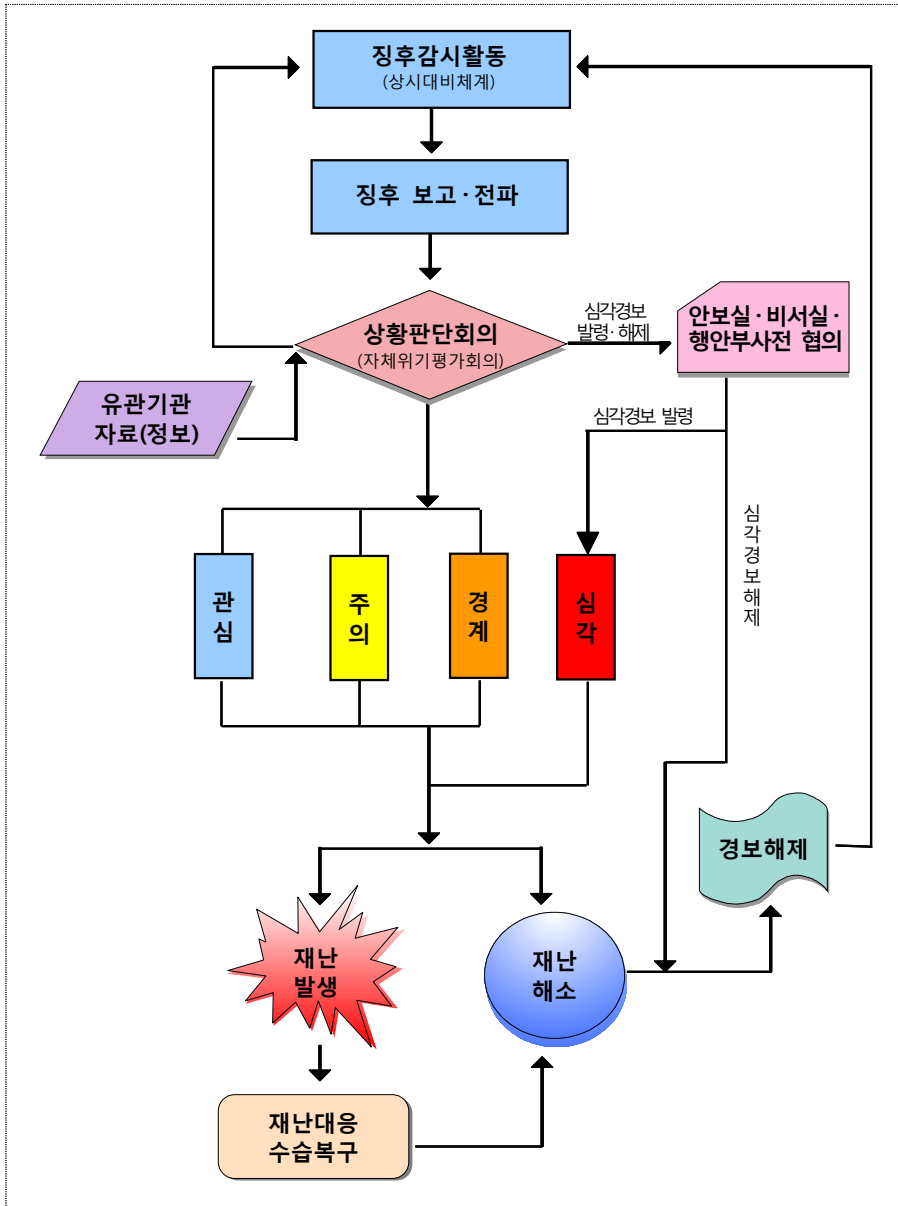
- 1) 행정안전부는 기상청의 지진통보(지진정보, 지진속보, 지진조기경보)등을 바탕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상황판단회의(위기평가회의)를 거쳐 위기경보 발령
- 2) 위기 평가는 상황의 심각성, 시급성, 확대 가능성, 전개 속도, 지속 기간, 파급 효과, 국내·외 여론, 정부의 대응능력 등을 고려하여 평가
- 3) “심각” 경보 발령 또는 해제할 경우, 국가안보실과 사전 협의(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우선 조치한 후 협의)
- 4) 행정안전부는 위기경보 발령 시 국가안보실 및 관련기관에 신속히 통보
- 5) 수색·구조활동이 종료되거나 인명·재산 피해가 확정되는 등 “대응” 단계에서 “복구” 단계로 전환되는 경우, 상황판단회의(위기평가회의)를 거쳐 위기경보 수준을 하향 조정하거나 해제
- 6) 중대본부장은 위기단계 임무와 역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중대본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 7) 유관기관(기상청 등)은 적절한 경보 발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기 징후와 관련 된 자료(정보)를 행정안전부에 제공

#### 나-1. 문화재청 위기경보 절차

- 1) 기상청의 지진통보(지진정보, 지진속보, 지진조기경보)등을 바탕으로 규모에 따라 우선적으로 비상기구 가동 후 상황판단회의 개최
- 2) 신속한 상황 보고·전파를 위하여 담당 사무관 또는 주무관이 동시보고 실시
- 3)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 문화재 피해상황 접수
- 4) 상황판단회의 시 피해규모 등에 따라 위기대응 단계조정
- 5)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위기단계 임무와 역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중수본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 6) 문화재 피해 발생 시, 주요간부 및 보고기관(BH, 국조실 등) 전파



## 위기경보 발령체계



## 다. 문화재청 상황보고·전파기준

### 1) 지진상황 보고 및 전파

| 규모 및 진도        | 내 용   |
|----------------|---|
| ○ 3.0 이하       | 별도의 보고·전파 불필요                                       |
| ○ 최대진도Ⅲ 이하     | * 단, 문화재 피해발생시 즉시 보고·전파                             |
| ○ 3.1이상~3.9 이하 | - 보고대상 : 문화재청장, 차장, 문화재정책국장, 안전기준과장                 |
| ○ 최대진도Ⅳ        | - 보고내용 : 지진발생 일시/장소/규모/피해현황/조치사항                    |
| ○ 4.0 이상       | - 보고대상 : 문화재청장, 차장, 문화재정책국장, 안전기준과장                 |
| ○ 최대진도Ⅴ 이상     | - 보고대상 : 문화재청장, 차장, 문화재정책국장, 안전기준과장, 문체부, BH, 행정안전부 |
|                | - 보고내용 : 지진발생 일시/장소/규모/피해현황/조치사항                    |

### 2) 상황판단 회의 구성·운영

| 구 분  | 내 용   |
|------|---|
| 목 적  | ■ 재난의 위험수준, 진행상황, 확산정도 등을 판단하고 피해 예상 문화재 보호를 위한 대책마련  |
| 주 재  | ■ 문화재청장(부재 시 차장)  |
| 참석대상 | ■ 청장, 차장, 정책국장, 안전기준과장, 대변인, 해당문화재 담당과장   |
| 회의내용 | ■ 재난진행 상황, 기상여건, 재난발생 인근지역 문화재 현황, 방재자원 투입 현황 등 상황 공유<br>■ 문화재 보호대책 마련<br>■ 중앙사고수습본부 가동 여부 결정<br>■ 필요한 경우 문화재 해체가 가능하도록 조치<br>■ 문화재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자체 및 유관기관 협조 요청사항 결정<br>※ 상황판단회의는 긴급성에 따라 메시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 가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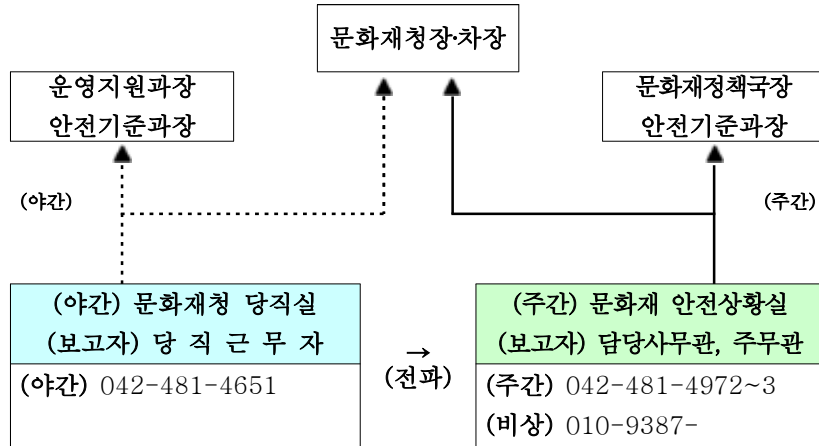
※ 상황판단회의는 긴급성에 따라 메시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 가능

### 3) 위기상황에 따른 보고·전파

| 구 분     | 보 고 체 계  |  |
|---------|--|--|
|         | 보 고 시 기  | 보고대상 (동시보고)  |
| 피해 발생 전 | ■ 재난별 위기경보 「경계·심각」 단계 발령 시<br>■ 재난으로 문화재 피해우려가 매우 큰 경우 | · 청장, 차장<br>· 정책국장, 안전기준과장                                     |
| 피해 발생 후 | ■ 재난으로 인한 문화재 피해 발생 시<br>※ 피해 정도·규모에 따라 정성적 판단 필요      | · 청장, 차장<br>· 정책국장, 안전기준과장<br>· 소관부서 국장, 과장 (필요시) BH, 문체부, 행안부 |

#### 4) 상황보고·전파 체계

- 보고체계 : 보고 체계도에 따라 보고자가 동시보고 실시  
\*담당 사무관 및 주무관 부재 시 안전기준과 직원 중 최초 인지가자 보고
- 보고자는 '보고내용'에 대하여 안전기준과 직원 전원에게 전파하여 상황 공유



| 유 관 기 관    |            |                 |
|------------|------------|-----------------|
| 1. BH      | 문화재청 담당행정관 | 02-770-4323     |
| 2.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재청 담당사무관 | 044-203-2549    |
|            | 당직실        | 044) 203-2180   |
| 3. 행정안전부   | 중앙재난안전상황실  | 044) 205-1540~3 |

#### 상황보고 예시

##### [지진재난 발생상황 보고]

- 일시 / 장소 : '19.01.12. 19:44 / 경주 남남서쪽 9km지점
- 지진규모 : 5.1
- 피해상황 : (현재까지 보고된 피해상황 없음)
- 조치상황 ① 경주시 문화재담당자, 경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연락하여 피해상황 신속보고 요청
- ② 문화재 안전상황실 운영 예정(근무자 0명 비상응소)
- ③ 국립문화재연구소 방재연구실 현지조사 요청

## 7 비상근무 체계

### 1) (상황관리) 별도의 위기대응 조직을 구성하지 않음

- 기준 : 내륙규모 3.0이하 지진발생 시 또는 최대진도Ⅳ  
\* 단, 문화재피해현황 파악 시 즉시 안전상황실 구성·운영
- 상황관리자 : 안전기준과 담당사무관 또는 담당주무관(1명)
- 임무·역할 : ① 지진재난 발생상황 보고·전파(기상청으로부터 상황접수), ② 지진 발생지역 문화재피해 현황 파악(지자체에 확인)

### 2) (1단계) 문화재 「안전상황실」 구성·운영

- 구성기준 : 내륙규모 4.0이상 지진발생 시 또는 최대진도Ⅴ 구성·운영
- 인력편성 및 운영
  - 주·야간 : 문화재정책국 안전기준과 2명, 소관과 1명
  - 단, 야간의 경우 안전기준과 담당자 비상응소 전까지 당직실(당직자 1명)에서 재난상황 파악 등 상황실 업무 수행
  - \* 당직근무자는 상황발생시 안전기준과장 및 안전상황실 비상폰으로 상황전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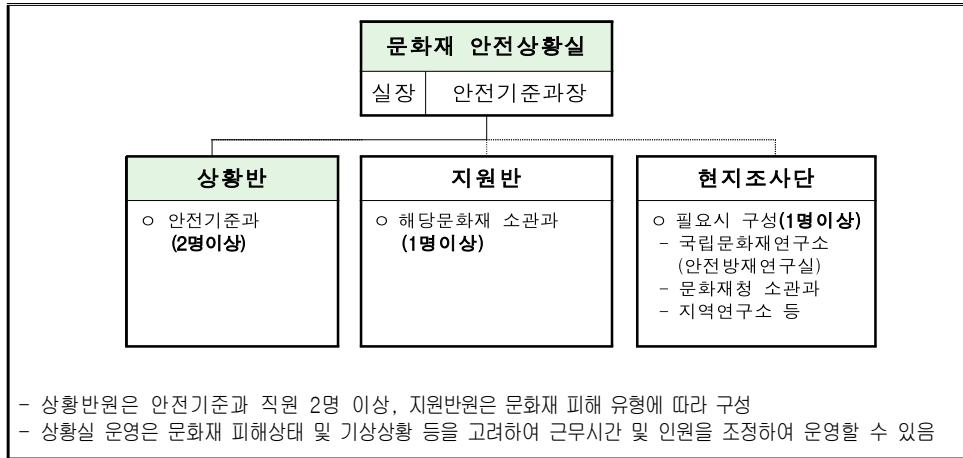
### ○ 상황실 임무·역할

- 지진으로 인한 문화재 피해현황 파악 및 집계
- 지진발생상황 및 피해현황 보고 및 전파, 상황 및 대처보고서 작성
- 중대본 근무자 파견조치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유지
- 주요 문화재 현지조사단 구성·운영 협조요청  
(유선 또는 공문 : 안전기준과 → 국립문화재연구소 안전방재연구실)
- 지자체 및 유관기관에 필요한 응급조치 실시 요청
  - 동산문화재 도난방지 등을 위한 인근 수장고로 이송조치
  -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피해문화재 전기 및 가스설비 차단
  - 태풍, 집중호우 등을 고려한 피해문화재 우장막 설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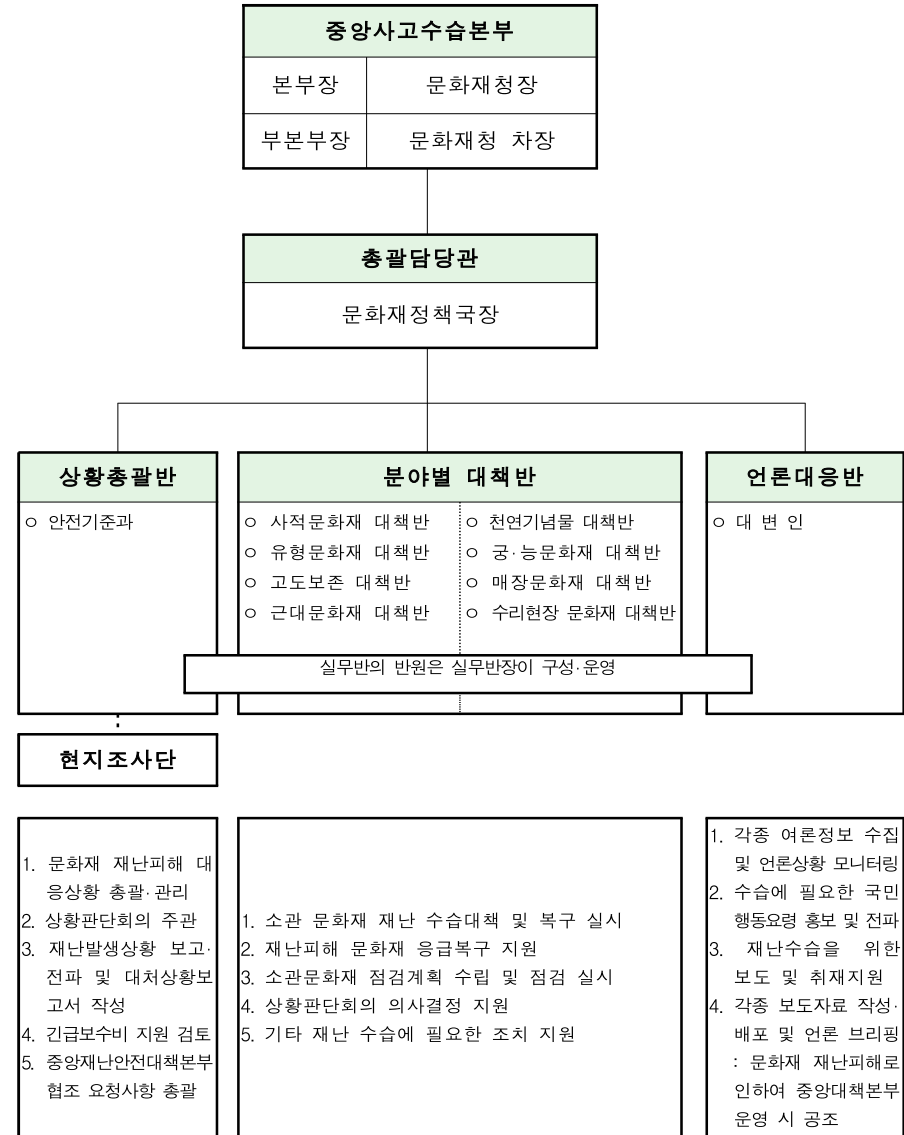
### 3) (2단계)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운영

- 구성기준 : 내륙규모 5.0이상 지진발생 시 또는 최대진도Ⅵ 이상
- 인력편성 : 안전기준과 4명, 소관과 2명

※ 문화재청 안전상황실 구성도



※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도



\* 총괄담당관 및 상황총괄반장은 각각 문화재정책국장, 안전기준과장으로 하나, 단일 유형의 문화재 재난피해의 경우 원활한 대처를 위하여 각각 해당 업무의 담당 국장, 과장으로 지명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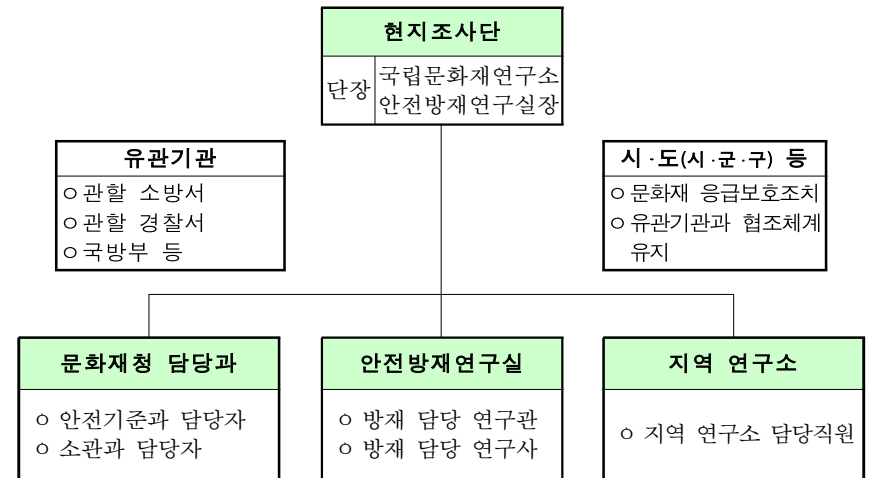
※ 중앙사고수습본부 실무반 편성기준 및 역할

| 구분         | 인원수                | 담당업무  | 비고   |     |
|------------|--------------------|---|--|-----|
| 상황<br>총괄반  | 반장 1<br>반원 2       | 1. 문화재 재난피해 대응상황 총괄·관리<br>2. 상황판단회의 주관<br>3. 재난상황 보고전파 및 상황보고서 작성<br>4. 긴급보수비 지원 검토<br>5.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협조 요청사항 총괄 | 안전<br>기준과  |     |
| 분야별<br>대책반 | 사적<br>문화재<br>대책반   | 반장 1<br>반원 1  | 1. 사적 등 소관문화재 재난 수습대책 및 복구 실시<br>2. 재난피해 문화재 응급복구 지원(문화재 돌봄사업단 이용)<br>3. 소관문화재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br>4. 상황판단회의 의사결정 지원 | 보존과 |
|            | 유형<br>문화재<br>대책반   | 반장 1<br>반원 1  | 1. 국보·보물 건조물, 동산문화재 등 소관문화재 재난 수습대책 및 복구 총괄<br>2. 소관문화재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br>3. 상황판단회의 의사결정 지원                        | 유형과 |
|            | 고도보존<br>대책반        | 반장 1<br>반원 1  | 1. 고도지역 등 소관문화재 재난 수습대책 및 복구 총괄<br>2. 소관문화재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br>3. 상황판단회의 의사결정 지원                                    | 고도과 |
|            | 근대<br>문화재<br>대책반   | 반장 1<br>반원 1  | 1. 국민, 등록문화재 등 소관문화재 재난 수습대책 및 복구 총괄<br>2. 재난피해 문화재 응급복구 지원<br>3. 소관문화재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br>4. 상황판단회의 의사결정 지원        | 근대과 |
|            | 천연<br>기념물<br>대책반   | 반장 1<br>반원 1  | 1. 천기, 명승 등 소관문화재 재난 수습대책 및 복구 총괄<br>2. 소관문화재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br>3. 상황판단회의 의사결정 지원                                  | 천기과 |
|            | 궁·능<br>문화재<br>대책반  | 반장 1<br>반원 1  | 1. 궁·능 등 소관문화재 재난 수습대책 및 복구 총괄<br>2. 재난피해 문화재 응급복구 지원(직영사업단 이용)<br>3. 소관문화재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br>4. 상황판단회의 의사결정 지원    | 복원과 |
|            | 매장<br>문화재<br>대책반   | 반장 1<br>반원 1  | 1. 매장 문화재, 발굴현장 등 재난 수습대책 및 복구 총괄<br>2. 소관문화재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br>3. 상황판단회의 의사결정 지원                                  | 발굴과 |
|            | 수리현장<br>문화재<br>대책반 | 반장 1<br>반원 1  | 1. 문화재 수리현장 재난 수습대책 및 복구 총괄<br>2. 소관문화재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br>3. 상황판단회의 의사결정 지원  | 수리과 |
|            | 언론대응반              | 반장 1<br>반원 1  | 1.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방송 상황 모니터링<br>2. 재난수습을 위한 보도 및 취재지원<br>3. 각종 보도자료 작성·배포 및 언론 브리핑                                 | 대변인 |

\* 분야별 대책반은 필요한 반만 탄력적으로 구성·운영

4) 현지조사단 구성·운영

- **구성기준** : 내륙에서 규모 4.0이상 지진발생 시 또는 최대진도 V 이상 또는 문화재청 안전상황실에서 요청 시
- **현지조사단 구성도 및 편성기준**
  - **(단장)** 국립문화재연구소 안전방재연구실장  
\*재난 규모에 따라 조사단원으로만 현지조사단을 구성할 수 있음
  - **(반원)** 안전방재연구실 담당 연구관 및 연구사, 안전기준과 및 소관과 담당자,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구성·운영



- **임무역할** : 지진 발생지역 내 주요 건조물 문화재 피해조사
  - 재난발생 및 피해원인, 문화재 점검결과, 현장대응사항 등 조사
  - 지진 및 지진해일로 인하여 발생한 주요 문화재 피해현황, 점검결과 등을 소관과, 문화재 안전상황실(안전기준과)에 신속 보고
  - 청장차장 등 주요간부 피해현장 방문 시 주요문화재 피해현황 브리핑
  - 필요시 계측장비를 활용한 점검 실시

## IV. 위기경보 수준별 조치사항

## IV. 위기경보 수준별 조치사항

### 1 관심 [“대비” 단계]

#### 가. 상황

- 1) 규모 4.0 미만의 지진이 특정 지역에서 짧은 기간 동안 2회 이상 발생하여, 상황관리 및 감시활동이 필요한 상황
- 2) “경계” 및 “심각” 단계 해제 이후, 낮은 위험 수준의 여진이 지속적으로 발생 하는 상황

#### 나. 조치사항

##### 1) 조치목적

- 가) 지진 발생상황 접수 및 보고
- 나) 지자체,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구축

##### 2) 조치내용

##### 가) 지진 발생상황 접수 및 보고

- 지진 관측자료(지진정보통합시스템, 기상청 문자시스템)를 바탕으로 지진발생 상황 접수
- 규모(내륙) 3.1이상 또는 최대진도 IV 이상 지진발생 시, 상황보고 실시
  - 보고대상 : 문화재청장, 차장, 정책국장, 안전기준과장
  - 보고내용 : 지진발생 일시/장소/규모/조치사항

##### 나) 지자체,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구축

- 비상근무자 확인, 비상연락망 및 연락체계 점검

#### 다. 부서별 임무와 역할

| 부서      | 임무와 역할  |
|---------|---|
| 안전기준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진 관측자료(기상청 문자시스템, 지진정보통합시스템)를 바탕으로 지진 상황 모니터링</li> <li>•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 비상연락망 점검</li> </ul> |
| 공능유적관리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별 재난 피해우려 점거 및 위험요인 제거</li> <li>• 현장별 유관기관 협조체계 점검 및 비상연락망 확인</li> </ul>                 |

## 2 주의 [“대비” 단계]

### 가. 상황

- 1) 규모 4.0 미만의 지진이 특정 지역에서 짧은 기간 동안 3회 이상 발생하여, 상황관리 및 관련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 2) “경계” 및 “심각” 단계 해제 이후, 높은 위험 수준의 여진이 지속적으로 발생 하는 상황

### 나. 조치사항

#### 1) 조치목록

- 가) 문화재 피해현황 파악 및 총괄 보고
- 나) 문화재 피해 발생 시, 응급복구 및 보호조치 실시(소속기관, 지자체)
- 다) 지진 발생지역 주요문화재 현지조사단 파견 및 피해조사(필요시)
- 라) 지자체, 관리단체, 안전경비원 등 순찰 활동 강화

#### 2) 조치내용

##### 가) 문화재 피해현황 파악 및 총괄 보고

- 지진 관측자료(지진정보통합시스템, 기상청 문자시스템)를 바탕으로 지진발생 상황 접수
- 지자체로부터 문화재 피해현황 접수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 규모(내륙) 3.1이상 또는 최대진도 IV 이상 지진발생 시, 상황보고 실시
  - 보고대상 : 문화재청장, 차장, 정책국장, 안전기준과장
  - 보고내용 : 지진발생 일시/장소/규모/피해현황/조치사항
- 문화재 피해현황 BH, 행안부, 문체부 등 유관기관 전파

### 나) 문화재 피해 발생 시, 보호조치 실시(소속기관, 지자체)

- 피해문화재 응급복구 실시
- 동산문화재 도난 대비 긴급보호 조치

### 다) 주요문화재 현지조사단 파견 및 피해조사(필요시)

- 국립문화재연구소 안전방재연구실 현지조사단 구성 및 파견

### 라) 지자체, 관리단체, 안전경비원 등 순찰 활동 강화

### 다. 부서별 임무와 역할

| 부서                    | 임무와 역할  |
|-----------------------|---|
| 안전기준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심단계 조치 계속 실행</li> <li>• 문화재 안전상황실 운영(필요시)</li> <li>• 자체점검 및 순찰활동 강화 요청</li> </ul>   |
| 국립문화재연구소<br>(안전방재연구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조사단 구성 운영 및 파견(필요시)</li> </ul>   |
| 공능유적관리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심단계 조치 계속 실행</li> <li>• 문화재 피해여부 확인 등 상시 예찰활동 추진</li> <li>• 지진피해 위험지역 긴급 정비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긴급보수를 위한 인력 투입 등 긴급복구 시행</li> </ul> </li> <li>• 비상근무조 운영(필요시)</li> <li>• 유관기관 협조체계 점검 및 비상연락망 확인</li> </ul> |

### 3 경계 [“대응” 단계]

#### 가. 상황

- 1) 내륙에서 규모 4.0 ~ 4.9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 2) 최대진도 V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 3) 지진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되어 중앙정부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상황

#### 나. 조치사항

##### 1) 조치목록

【초기대응 활동(지진 발생 즉시 피해 저감을 위하여 조치하는 대응 활동)】

- 가) 문화재 피해현황 파악 및 총괄 보고
- 나) 피해문화재 응급복구 및 보호조치 실시(소속기관 및 지자체)
- 다) 문화재청 안전상황실 운영

【비상대응 활동(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되는 대응 활동)】

- 라) 문화재 지진 피해 및 대처상황에 대한 자료작성 및 언론보도 대응
- 마) 지진 발생지역 주요문화재 현지조사단 파견 및 피해조사
- 바) 문화재 응급복구인력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필요시)
- 사) 2차 피해 방지대책 수립 및 지원(필요시)
- 아) 지진발생 지역 문화재 안전점검 실시

#### 2) 조치내용

##### 【초기대응 활동】

##### 가) 문화재 피해현황 파악 및 총괄 보고

- 지진 관측자료(지진정보통합시스템, 기상청 문자시스템)를 바탕으로 지진발생 상황 접수
- 지자체로부터 문화재 피해현황 접수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 지진발생 상황 및 문화재 피해현황 총괄보고
  - 보고대상 : 문화재청장, 차장, 정책국장, 안전기준과장
  - 보고내용 : 지진발생 일시/장소/규모/피해현황/조치사항
- 문화재 피해현황 BH, 행안부, 문체부 등 유관기관 전파

##### 나) 피해문화재 응급복구 및 보호조치 실시(소속기관 및 지자체)

- 피해문화재 응급복구 실시
- 동산문화재 도난 대비 긴급보호 조치

##### 다) 문화재청 안전상황실 운영

- 비상근무자 소집 및 관리(필요시 담당부서 근무자 지원 요청)
- 지자체, 유관기관 대처상황 및 ‘비상대응 활동’ 모니터링
- 최초 상황판단회의 비상소집 실시(필요시 중수본 가동)

##### 【비상대응 활동】

##### 라) 문화재 지진 피해 및 대처상황에 대한 자료작성 및 언론보도 대응

- 안전상황실(상황반) 대처상황 보고서 작성
- 문화재 피해 및 대응상황에 대한 선제적인 보도자료 작성



마) 지진 발생지역 주요문화재 현지조사단 파견 및 피해조사

- 국립문화재연구소 안전방재연구실 현지조사단 구성
- 피해현장 인근의 지방 문화재연구소 인력지원 및 우선 투입

바) 문화재 응급복구인력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필요시)

- 문화재 돌봄사업단, 문화재청 직영사업단 등 응급복구인력 지원
  - 응급복구 지원 대상 문화재, 투입인원, 인력지원 기간, 응급복구 지원 내용 등을 포함하여 계획수립

사) 2차 피해방지 대책 수립 및 지원(필요시)

- 화재, 도난 등 연계재난으로 인한 2차 피해 방지대책 강구
- 파손부재 보호 및 관리 실시

아) 지진발생 지역 문화재 안전점검 실시

- 지진발생지역 국보·보물 등의 건조물 문화재 점검계획 수립
-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 점검반 편성(필요시)

다. 부서별 임무와 역할

| 부서    | 임무와 역할   |
|-------|--|
| 안전기준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심·주의단계 조치 계속 실행</li> <li>• 문화재 안전상황실 운영</li> <li>• 재난상황 지속 파악 및 보고</li> <li>• 문화재 피해현황 파악 및 상황보고서 작성</li> <li>• 상황판단회의 개최 주관(필요시)</li> <li>• 긴급보수비 지원 검토(필요시)</li> </ul> |
| 대변인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언론보도 사항 모니터링 및 언론대응창구 일원화</li> <li>• 문화재 피해상황 브리핑 및 보도자료 배포</li> </ul>  |

| 부서   | 임무와 역할   |
|--|--|
| 소관부서<br>(보존정책과,<br>근대문화재과,<br>복원정비과,<br>유형문화재과,<br>천연기념물과,<br>고도보존육성과,<br>발굴제도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재 안전상황실 근무 지원</li> <li>• 지진피해 문화재 안전점검 실시</li> <li>•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에 2차 피해방지 대책시행 등 협조 (필요시)</li> <li>• 소관 문화재 재난대책 수립·시행 및 복구를 위한 예산지원 (필요시)</li> </ul> |
| 수리기술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 문화재 복구 지원(기술지도 및 자문)</li> </ul>  |
| 국립문화재연구소<br>(안전방재연구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조사단 구성 운영 및 파견</li> </ul>   |
| 궁능유적관리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심·주의 단계 조치 계속 실행</li> <li>• 문화재 재난피해 발생 시 긴급보수 및 복구활동 추진</li> <li>- 동산문화재 이동·보호 필요여부 확인 및 실시</li> </ul>  |

## 4 심각 [“대응” 단계]

### 가. 상황

- 1) 내륙에서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 2) 최대진도 VI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 3) 지진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피해 확대가 예상되어 범정부적 대처가 필요한 상황

### 나. 조치사항

#### 1) 조치목록

##### 【초기대응 활동(지진 발생 즉시 피해 저감을 위하여 조치하는 대응 활동)】

- 가) 문화재 피해현황 파악 및 총괄보고
- 나) 문화재청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을 위한 비상소집
- 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파견 및 협력체계 구축

##### 【비상대응 활동(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되는 대응 활동)】

- 라) 문화재 지진 피해 및 대처상황에 대한 자료작성 및 언론보도 대응
- 마) 지진 발생지역 주요문화재 현지조사단 파견 및 피해조사
- 바) 문화재 응급복구 인력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 사) 2차 피해 방지대책 수립 및 지원
- 아) 지진발생 지역 문화재 안전점검 실시

#### 2) 조치내용

##### 【초기대응 활동】

- 가) 문화재 피해현황 파악 및 총괄 보고

- 지진 관측자료(지진정보통합시스템, 기상청 문자시스템)를 바탕으로 지진발생 상황 접수
- 지자체로부터 문화재 피해현황 접수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 지진발생 상황 및 문화재 피해현황 총괄보고
  - 보고대상 : 문화재청장, 차장, 정책국장, 안전기준과장
  - 보고내용 : 지진발생 일시/장소/규모/피해현황/조치사항
- 문화재 피해현황 BH, 행안부, 문체부 등 유관기관 전파

#### 나) 문화재청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을 위한 비상소집

-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대책반 비상소집
- 최초 상황판단회의 준비

#### 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파견 및 협력체계 구축

- 비상근무자 소집 및 관리(담당부서 근무자 지원 요청)
- 지자체, 유관기관 대처상황 및 ‘비상대응 활동’ 모니터링

##### 【비상대응 활동(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되는 대응 활동)】

#### 라) 문화재 지진 피해 및 대처상황에 대한 자료작성 및 언론보도 대응

- 상황총괄반 대처상황 보고서 작성
- 문화재 피해 및 대응상황에 대한 선제적인 보도자료 작성

#### 마) 지진 발생지역 주요문화재 현지조사단 파견 및 피해조사

- 국립문화재연구소 안전방재연구실 현지조사단 구성
- 피해현장 인근의 지방 문화재연구소 인력지원 및 우선 투입

#### 바) 문화재 응급복구인력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 피해문화재 응급복구 우선 실시
- 문화재 들뜸사업단, 문화재청 직영사업단 등 응급복구인력 지원
  - 응급복구 지원 대상 문화재, 투입인원, 인력지원 기간, 응급복구 지원 내용 등을 포함하여 계획수립

**사) 2차 피해방지 대책 수립 및 지원**

- 화재, 도난 등 연계재난으로 인한 2차 피해 방지대책 강구
- 파손부재 보호 및 관리 실시 요청

**아) 지진발생 지역 문화재 안전점검 실시**

- 지진발생지역 국보·보물 등의 건조물 문화재 점검계획 수립
-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 점검반 편성

**다. 부서별 임무와 역할**

| 부서   | 임무와 역할  |
|--|---|
| 안전기준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심·주의·경계 단계 조치 계속 실행</li> <li>• 재난상황 지속 파악 및 보고</li> <li>• 중앙사고수습본부 가동·운영</li> <li>• 문화재 피해현황 파악 및 상황보고서 작성</li> <li>• 상황판단회의 개최 주관</li> <li>• 긴급보수비 지원 검토</li> </ul>                                      |
| 대변인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언론보도 사항 모니터링 및 언론대응창구 일원화</li> <li>• 문화재 피해상황 브리핑 및 보도자료 배포</li> </ul>   |
| 소관부서<br>(보존정책과,<br>근대문화재과,<br>복원정비과,<br>유형문화재과,<br>천연기념물과,<br>고도보존육성과,<br>발굴제도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사고수습본부 근무 지원</li> <li>•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파견 지원</li> <li>• 지진피해 문화재 안전점검 실시</li> <li>• 청장, 차장 등 주요간부 피해현장 방문 수행</li> <li>•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에 2차 피해방지 대책시행 등 협조</li> <li>• 소관 문화재 재난대책 수립·시행 및 복구를 위한 예산지원</li> </ul> |
| 수리기술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 문화재 복구 지원(기술지도 및 자문)</li> </ul>   |

| 부서                    | 임무와 역할   |
|-----------------------|--|
| 국립문화재연구소<br>(안전방재연구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조사단 구성 운영 및 파견</li> <li>• 주요간부 피해현장 방문 시 주요문화재 피해 현황 브리핑</li> </ul> |
| 공능유적관리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심·주의·경계 단계 조치 계속 실행</li> </ul>                                       |

## V. 재난상황별 조치내용 및 절차

# V. 재난상황별 조치내용 및 절차

## 1 규모 4.0 미만 지진 발생

### 1. 위기 상황

| 지진 발생 상황   |
|--|
| <p>○ 00월 00일 00시 00분 00사·도 00시 시까지 중심에서 규모 3.5(진도Ⅳ)의 지진 발생</p> <p>〈피해상황〉</p> <p>○ 인명피해 : 000명 부상, 000명 실종</p> <p>○ 문화재피해 : (상대별) 00지역 00탑 난간석 접합부 탈락 및 균열 등 0건,<br/>00지역 00전 지붕 탈락 및 일부파손 등 0건,<br/>00지역 00마을 담장 기와 파손 및 벽체 균열 등 0건<br/>(유형별) 국가지정 0건, 시도지정 0건, 등록문화재 0건</p> |

### 2. 조치 목록

| 구분      | 조치 사항  | 조치부서           |
|---------|--|----------------|
| 가. 초동대응 | 1) 지진 발생상황 접수 및 보고·전파<br>2) 지자체 및 유관기관 간 비상연락체계 구축 | 상황반<br>(안전기준과) |

\* 재난상황은 수많은 변수가 있어 매뉴얼에서 규정한 것이 모두 정확한 것은 아니므로 융통성 있게 탄력적으로 대응한다.

### 3. 조치 내용

#### 가. 초동대응

##### 1) 지진 발생상황 접수 및 보고·전파

- 상황접수 : 기상청으로부터 지진 발생상황 접수  
\* 기상청 지진통보시스템 이용(기상청에 등록 요청)
- 보고·전파 (내륙 규모 3.1이상 ~ 3.9이하 또는 최대진도 Ⅳ)
  - (주간) 담당자(안전기준과) → 안전기준과장, 문화재정책국장, 청장·차장 동시보고
  - (야간) 당직근무자 → 담당자(안전기준과), 안전기준과장, 문화재정책국장, 청장·차장 동시보고
- \* 보고·전파 세부사항은 동 매뉴얼 41 ~ 42쪽 참조
- \* 지진발생시 다양한 매체(유무선, FAX, MMS 등)를 통하여 보고

##### 2)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구축

- 비상연락수단은 유무선, FAX, 휴대폰 메신저 등 다양한 매체 활용

#### 4. 부서별 임무 및 역할

| 구 분                  | 임무 및 역할 (문화재 피해 발생 시)  |
|----------------------|--|
| 안 전 기 준 과            | <p><b>[상황총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상황 지속 파악 및 보고 : 안전기준과장, 정책국장, 차장, 청장</li> <li>○ 문화재 피해현황 집계 및 상황보고서 작성</li> </ul> <p><b>[대응조직 가동 운영총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파견 근무 총괄 : 근무자 편성, 근무실시</li> <li>○ 상황판단회의 개최 주관</li> <li>○ 사·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에 2차 피해방지 등을 위한 대책시행 협조요청</li> <li>○ 지진발생 인근지역 문화재 안전점검 총괄</li> <li>○ 청·차장 등 주요간부 피해현장 방문 수행</li> </ul> |
| 운 영 지 원 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야간 상황 유지(당직실) : 지자체 상황실로부터 상황접수</li> <li>○ 야간 비상상황 발생 시 안전기준과장과 안전기준과 직원에 관련 내용 통보 및 비상소집</li> </ul>  |
| 소 관 부 서<br>(공 통 사 항) | <p><b>[대응조치 지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파견 근무 지원</li> <li>○ 지진발생 인근지역 문화재 안전점검 지원</li> </ul> <p><b>[소관 문화재 복구 총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참여 지원</li> <li>○ 소관 문화재 재난대책 수립·시행 및 복구를 위한 예산지원</li> </ul>  |
| 보 존 정 책 과            | ○ 응급복구 지원 : 전국 문화재돌봄단체 이용  |
| 근대문화재과               | ○ 응급복구 지원  |
| 궁능유적본부<br>(복원정비과)    | ○ 응급복구 지원 : 직영사업단 이용   |
| 유형문화재과               | ○ 동산문화재 긴급보호대책 총괄  |
| 천연기념물과               |  |
| 고도보존육성과              | ○ 고도지역 한옥 피해 복구 지원   |
| 발굴제도과                | ○ 매장문화재 피해현황 파악 및 점검   |
| 수리기술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진피해 인근지역 문화재 수리현장 피해현황 파악 및 점검</li> <li>○ 응급복구 지원 : 수리기능인 협회 자원봉사 요청</li> <li>○ 피해 문화재 복구현장 기술지도 및 지원</li> </ul>   |
| 대 변 인                | <p><b>[언론대응 총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언론보도사항 모니터링 및 언론대응창구 일원화</li> <li>○ 문화재 피해상황 브리핑 및 신속한 보도자료 배포</li> <li>○ 부정적인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자료 작성</li> </ul>  |

| 구 분  | 임무 및 역할 (문화재 피해 발생 시)   |
|--|---|
| 국 립 문 화 재<br>연 구 소<br>(안전방재연구실<br>또는<br>지역별 연구소) | <p><b>[현지조사 총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진피해 현장 주요 문화재 현지조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계전문가, 관계직원 2~4명으로 구성된 조사단 현지파견</li> <li>- 육안점검 또는 계측조사를 통한 조사 실시 및 결과 공유</li> </ul> </li> <li>○ 청장·차장 등 주요간부 피해현장 방문 시 주요 문화재 피해현황 브리핑</li> </ul> |
| 보 존 과 학 센 터                                      | <p><b>[문화재 보존처리 지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진 피해 동산문화재 보존처리</li> <li>○ 필요시 현장조사 실시</li> </ul>   |

## 2 규모 4.0 이상 지진 발생

### 1. 위기 상황

| 지진 발생 상황   |
|--|
| ○ 00월 00일 00시 00분 00시·도 00시 시까지 중심에서 규모 6.0(진도Ⅷ)의 강진 발생으로 인접 5개 시군을 포함하여 상당수의 건물이 부분적으로 붕괴되는 등 극심한 피해 발생   |
| <b>《피해상황》</b>  |
| ○ 인명피해 : ○○명 사망, ○○○명 부상, ○○○명 실종  |
| ○ 문화재피해 : (상대별) ○○지역 ○○탑 난간석 접합부 탈락 및 균열 등 ○건,<br>○○지역 ○○전 지붕 탈락 및 일부파손 등 ○건,<br>○○지역 ○○마을 담장 기와 파손 및 벽체 균열 등 ○건<br>(유형별) 국가지정 ○건, 시도지정 ○건, 등록문화재 ○건 |
| ○ 지진발생으로 산사태가 발생하여 급경사지에 위치한 건조물 문화재가 매몰되거나 붕괴되고 문화재 관리자 및 인근 관광객 등 인명피해 발생  |
| ○ 전시관, 박물관 등 다량의 동산문화재 소장처 건물 피해로 동산문화재 일부 파손  |
| ○ 시내에서 화재, 폭발이 발생하고 확산된 화재가 문화재 소재지까지 번짐   |
| ○ 지진으로 인한 통신 traffic 증가로 통신 일시적 마비   |
| ○ 가스배관 파손으로 인하여 가스공급 불능, 금융전산이 일시 마비됨  |
| ○ 수도관 파열과 정수시설 피해발생으로 수도물 공급 불가능   |
| ○ 여진에 의한 공포로 주민들이 혼란에 빠지고, 무분별한 유언비어가 난무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치안이 허술해지는 현상 발생   |

### 2. 조치 목록

| 구분             | 조치 사항  | 조치부서                  |
|----------------|--|-----------------------|
| 가. 초동대응        | 1) 지진 발생상황 접수 및 보고·전파<br>2) 지자체 및 유관기관 간 비상연락체계 구축<br>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파견                                | 상황반<br>(안전기준과)        |
| 나. 대응 조직 구성·운영 | 1) 문화재청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가동운영을 위한 비상소집  | 상황반<br>(안전기준과)        |
|                | 2) 문화재 피해현황 집계 및 상황보고서 작성  | 언론대응반<br>(대변인)        |
|                | 3) 언론대응 및 모니터링   |                       |
|                | 4) 현지조사단 구성·운영   | 현지조사단<br>(국립문화재연구소 등) |
| 다. 긴급대응 조치     | 1) 창치장 등 주요간부 피해현장방문 수행  | 상황반<br>(안전기준과)        |
|                | 2) 문화재 응급복구인력 지원 계획수립 및 지원   |                       |
|                | 3) 2차 피해 방지대책 수립 및 지원<br>○ 화재, 태풍 등 연계재난으로 인한 2차 피해 방지대책 강구<br>○ 동산문화재 도난 등의 방지대책<br>○ 파손 부재 보호 및 관리 실시 요청 | 해당문화재 소관과             |
|                | 4) 지진발생 인근지역 문화재 안전점검 실시   | 해당문화재 소관과             |
| 라. 피해 복구활동     | 1)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참여 : 문화재 피해액 및 복구액 조사   | 해당문화재 소관과             |
|                | 2) 문화재 재난피해 복구계획 수립·시행 총괄  | 상황반<br>(안전기준과)        |
|                | 3) 피해문화재 복구현황 관리 및 모니터링  | 상황반<br>(안전기준과)        |

\* 재난상황은 수많은 변수가 있어 매뉴얼에서 규정한 것이 모두 정확한 것은 아니므로 융통성 있게 탄력적으로 대응한다.

### 3. 조치 내용

#### 가. 초동대응

##### 1) 지진 발생상황 접수 및 보고·전파

- **상황접수** : 기상청으로부터 지진 발생상황 접수
    - \* 기상청 지진통보시스템 이용(기상청에 등록 요청)
  - **보고·전파**
    - **(주간)** 담당사무관(안전기준과) → 안전기준과장, 문화재정책국장, 청장·차장 동시보고
    - **(야간)** 당직근무자 → 담당사무관(안전기준과), 안전기준과장, 운영지원과장, 청장·차장 동시보고
- \* 보고·전파 세부사항은 동 매뉴얼 38 ~ 39쪽 참조  
\* 지진발생시 통신 트래픽 증가로 통신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매체(유무선, FAX, MMS 등)를 통하여 보고

##### 2)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구축

- **지자체** : 지진피해 예상권역 내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시·군·구 문화재부와 비상연락체계 구축
- **유관기관** : 재난수습에 필요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구축
- **현지조사단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중요문화재에 대한 피해상황 파악**
  - \* 비상연락수단은 유무선, FAX, 휴대폰 메신저 등 다양한 매체 활용

#####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파견 근무

- **(파견자)** 문화재청 직원 1명
- **(주요업무)** 중대본과 문화재청 상황실(안전기준과)간 협력체계 구축
  - 문화재 피해현황 공유 및 문화재 관련 언론보도 모니터링
  - 문화재 재난 수습에 필요한 협조사항 전달 및 건의
- **(근무자 편성)** 중대본 24시간 파견 근무를 위한 근무자 편성
  - 최초 근무자 : 안전기준과 직원 1명 비상근무 즉시 투입
  - 중대본 파견근무가 길어질 경우 문화재청 각 소관과로부터 비상근무 인력 각 2명씩 지원 요청 후 근무자 편성

### 나. 대응조직 구성·운영

#### 1)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가동·운영을 위한 비상소집

- 지진재난 상황 초기에는 중수본 ‘초동대응반’ 먼저 비상소집
    - 상황반(안전기준과)은 지진발생상황 인지 즉시 비상응소
    - 초동대응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실무반은 상황발생 초기단계부터 각 반당 2명씩 비상소집하여 실무반을 신속히 구성운영
- \* 초동대응반 : 상황반(안전기준과), 언론대응반(대변인), 현지조사단(국립문화재 연구소 안전방재연구실)
- 초기재난상황 파악 후 중수본 실무반 확대 운영
    - 분야별 대책반은 지진재난으로 인한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구성운영하되 각 반당 2명씩 비상소집

#### 2) 피해현황 집계 및 상황보고서 작성

- **피해상황 파악 및 집계**
  -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시·군·구 문화재담당부서, 문화재청 현지조사단에 문화재 피해상황 파악요청 (공문, 유무선 등 이용)
  - 중수본 상황반(안전기준과)은 문화재 피해현황을 총괄 집계하여 각 소관부서에 주기적으로 공유
- **피해현황 및 대처상황보고서 작성**
  - 피해현황, 응급복구인력 투입, 긴급보수비 지원 등 상황보고서 작성

#### 3) 언론대응 및 모니터링

- 문화재 피해 및 대응상황에 대한 **선제적인 보도자료 작성**
  - 선제적인 보도자료 작성·홍보를 통해 부정적인 언론보도 최소화
  - \* 지진 발생 후 현지조사단, 지자체를 통해 파악된 피해현황 및 청 차원의 대처상황에 대하여 언론보도자료를 작성하여 배포 (지진발생 당일 배포)
  - 문화재 피해현황 및 대처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실시
  - \* 문화재 피해현황, 대처상황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보도자료 작성·배포
- 언론보도 모니터링 및 부정적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자료 작성



#### 4) 현지조사단 구성·운영

- (구성) 국립문화재연구소 안전방재연구실 또는 피해현장 인근의 연구소 등
  - \* 현지조사단은 신속한 문화재 피해 등의 상황정보 파악을 위하여 탄력적으로 구성·운영 할 수 있음
- (임무역할) 국보 등의 주요 문화재 현장에 대한 육안 및 계측조사 실시
  - 주요 국가지정 문화재에 대한 육안 및 계측조사 실시/관련 보고서 작성
  - 육안 및 계측조사 내용을 상황반(안전기준과), 소관 과로 즉시 보고
  - 청장, 차장 등 주요간부 피해현장 방문 시 주요 문화재 피해현황 브리핑

#### 다. 긴급대응조치

##### 1) 청장, 차장 등 주요간부 피해현장 방문 수행

- 청장, 차장 등 주요간부 피해현장 방문계획 수립
  - 국보·보물 등의 주요 국가지정문화재 피해현장, 시·군·구 등의 재난 안전대책본부 등 방문계획 수립
- 청장, 차장 등 주요간부 피해현장 방문 수행(안전기준과장)
  - 문화재청장 피해현장방문 수행 및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건의 사항 수립

##### 2) 문화재 응급복구인력 지원 계획수립 및 지원

- 문화재돌봄사업단(보존정책과), 문화재청 직영사업단(공능유적본부), 문화재수리가능인 협회(수리기술과) 등의 단체와 협의하여 **응급복구 지원계획 수립**
  - 응급복구 지원 대상 문화재, 투입인원, 인력지원 기간, 응급복구 지원 내용 등을 포함하여 계획수립
- 응급복구 사업단 투입에 관한 세부사항 및 응급복구 진행상황은 해당 소관 과에서 조정·관리

#### 3) 2차 피해 방지대책 수립 및 지원

- 화재, 태풍 등 연계재난으로 인한 2차 피해 방지대책 강구
  - 지진 이후 태풍, 집중호우 등이 예상되는 경우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장막 설치 요청, 위험현장은 출입금지 등의 통제선 설치 요청** (문화재청→시·군·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 지진으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가스 및 전기시설 차단 요청
- 동산문화재 도난 등의 방지대책 강구
  - 지진으로 동산문화재 소장처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긴급 보호조치 요청** (문화재청→시·군·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 \* 피해가 없는 인근 박물관 수장고로 이운 및 임시 보관 조치
    - 동산문화재 피해현황 조사 및 보호조치 강구 (문화재청)
- 파손부재 보호 및 관리 실시 요청 (문화재청→시·군·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 **파손부재**가 일반폐기물로 오인되어 일괄 폐기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폐기물처리 관련 부서 통보 및 **문화재표시 라벨 부착 요청**
  - 목재 등의 파손부재는 추가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문화재 현장 내 임시 적치소 설치 등의 방법으로 보호대책 강구 요청

#### 4) 지진발생 인근지역 문화재 안전점검 실시

- 지진발생지역 국보·보물 등의 건조물 문화재 점검계획 수립
  - 점검대상, 점검기간, 점검반 편성, 점검표 등을 포함하여 작성
    - \* 동산문화재 피해 발생 시 동산문화재 피해조사반도 함께 편성하여 점검 실시
- 문화재 안전점검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반 편성

#### 라. 피해 복구활동

##### 1)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참여 : 문화재 피해액 및 복구액 조사

- 중대본에서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재난피해조사단) 파견 요청이 오는 경우 ‘문화재청 재난피해조사팀’ 구성
  - (구성) 안전과 1명, 문화재 소관과 각 1명으로 구성
    - \* 소관 국가지정 문화재가 피해를 입은 경우 소관과 직원 1명 참여

- (역할) ①지진으로 인한 문화재 피해액 및 복구액 조사  
②국고보조금 지원이 필요한 피해문화재 및 지원액 확정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8조제3항

- ‘문화재청 재난피해조사팀’은 조사결과를 상황반(안전기준과)으로 통보하여 문화재 피해액 및 복구액에 관한 정보 공유

### 2) 재난복구계획 수립·시행 총괄

- 중대본 「재난피해복구계획」이 수립·시행되면 해당계획에 의거하여 「문화재 재난피해 복구계획」 수립·시행
  - ‘문화재청 재난피해조사팀’의 조사결과에 따라 국고보조금 지원이 필요한 문화재 지원방법 결정 (긴급보수비 또는 총액보수비)
-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9조제1항
- 「문화재 재난피해 복구계획」에 따라 긴급보수비, 총액보수비 지원

### 3) 피해문화재 복구현황 관리 및 모니터링

- 피해문화재의 복구 추진현황 지속관리
  - 지자체 문화재부서를 통해 피해문화재의 복구 추진현황을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현황 추적 관리
- 피해문화재 중 복구 추진에 차질이 있는 문화재의 경우 국고보조금 지원 등 빠른 복구를 위한 지원대책 강구

### 4. 부서별 임무 및 역할

| 구 분                  | 임무 및 역할   |
|----------------------|---|
| 안 전 기 준 과            | <b>[상황총괄]</b><br>○ 재난 <b>상황</b> 지속 <b>파악 및 보고</b> : 안전기준과장, 정책국장, 차장, 청장<br>○ 문화재 <b>피해현황 집계 및 상황보고서 작성</b><br><b>[대응조직 가동 운영·총괄]</b><br>○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b>파견 근무 총괄</b> : 근무자 편성, 근무실시<br>○ 상황판단회의 개최 주관<br>○ 사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에 2차 피해방지 등을 위한 대책시행 협조요청<br>○ 지진발생 인근지역 문화재 안전점검 총괄<br>○ 청·차장 등 주요간부 피해현장 방문 수행 |
|                      | <b>운 영 지 원 과</b><br>○ 야간 상황 유지(당직실) : 지자체 상황실로부터 상황접수<br>○ 야간 비상상황 발생 시 안전기준과장과 안전기준과 직원에 관련 내용 통보 및 비상소집   |
| 소 관 부 서<br>(공 통 사 항) | <b>[대응조치 지원]</b><br>○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파견 근무 지원<br>○ 지진발생 인근지역 문화재 안전점검 지원<br><b>[소관 문화재 복구 총괄]</b><br>○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참여 지원<br>○ 소관 문화재 재난대책 수립·시행 및 복구를 위한 예산지원  |
| 보 존 정 책 과            | ○ 응급복구 지원 : 전국 문화재돌봄단체 이용   |
| 근대문화재과               | ○ 응급복구 지원   |
| 궁능유적본부<br>(복원정비과)    | ○ 응급복구 지원 : 직영사업단 이용  |
| 유형문화재과               | ○ 동산문화재 긴급보호대책 총괄   |
| 천연기념물과               |   |
| 고도보존육성과              | ○ 고도지역 한옥 피해 복구 지원  |
| 발굴제도과                | ○ 매장문화재 피해현황 파악 및 점검  |
| 수 리 기 술 과            | ○ 지진피해 인근지역 문화재 수리현장 피해현황 파악 및 점검   |
|                      | ○ 응급복구 지원 : 수리기능인 협회 자원봉사 요청<br>○ 피해 문화재 복구현장 기술지도 및 지원   |
| 대 변 인                | <b>[언론대응 총괄]</b><br>○ 언론보도사항 <b>모니터링</b> 및 언론대응창구 일원화<br>○ 문화재 피해상황 브리핑 및 <b>신속한 보도자료 배포</b><br>○ 부정적인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자료 작성   |

| 구분                               | 임무 및 역할   |
|----------------------------------|---|
| 국립문화재연구소<br>(안전방재연구실 또는 지역별 연구소) | <b>[현지조사 총괄]</b><br>○ 지진피해 현장 주요 문화재 현지조사 실시<br>- 관계전문가, 관계직원 2~4명으로 구성된 조사단 현지파견<br>- 육안점검 또는 계측조사를 통한 조사 실시 및 결과 공유<br>○ 청장·차장 등 <b>주요간부 피해현장 방문 시</b> 주요 문화재 피해현황 <b>브리핑</b> |
| <b>보존과학센터</b>                    | <b>[문화재 보존처리 지원]</b><br>○ 지진 피해 동산문화재 보존처리<br>○ 필요시 현장조사 실시   |

# 지진해일

# I . 일반사항

# I. 일반사항

## 1 목 적

이 매뉴얼은 지진해일로 인하여 문화재 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문화재청 및 소속기관의 임무·역할, 대응절차/조치사항 등을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음

## 2 적용 범위

가. 지진해일 위기관리 업무와 관련되는 문화재청,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의 대비·대응 및 수습·복구 활동에 적용

나. 지진해일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 적용

가) 지진해일로 인한 피해 저감을 위해 분야별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응급 대책 및 긴급 지원체계의 가동이 필요할 때 적용

나) 지진해일로 인한 침수·범람 및 구조물 붕괴와 같은 직접적인 피해와 원자력발전소 파손에 따른 방사능 누출과 같은 연계피해가 발생한 복합재난 상황일 때

## 3 관련 법규

가. 법적 근거

-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2) 「자연재해대책법」

- 3) 「지진·화산재해대책법」
- 4)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 5) 「문화재보호법」
- 6) 「재해구호법」
- 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8)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나. 관련규정 등

- 1)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대통령 훈령)
- 2) 지진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및 실무매뉴얼(행정안전부)
- 3) 지진화산 업무규정(기상청훈령)
- 4) 지진 재난문자방송 운영 규정(기상청훈령)
- 5)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행정안전부예규)
- 6)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 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규정(행정안전부훈령)
- 8)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행정안전부훈령)
- 9) 중앙지진·화산재해원인조사단 운영규정(행정안전부훈령)
- 10)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지침(행정안전부훈령)
- 11)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행정안전부고시)
- 12)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운영지침(행정안전부)
- 13) 재해복구 추진지침(행정안전부)
- 14) 재난긴급대응단 운영규정(행정안전부)
- 15) 지진재난 심리지원 매뉴얼(보건복지부)
- 16) 재난폐기물 안전관리 지침(환경부) 등
- 17) 문화재청 안전상황실 및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 4 용어 정의

| 구분        | 내용  |
|-----------|---|
| 국가위기      | 국가의 주권, 영토와 국민의 생명·재산 등 국가의 핵심요소와 가치에 중대한 위해가 가해질 가능성이 있거나 가해지고 있는 상태<br>(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대통령훈령 제388호)  |
| 국가 위기관리   | 국가위기를 효과적으로 예방·대비하고 대응·복구하기 위하여 국가가 자원을 기획·조직·집행·조정·통제하는 제반 활동과정<br>(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대통령훈령 제388호)   |
| 위기관리 주관기관 | 유형별 위기관리 활동의 주(主)된 책임을 지는 중앙행정기관  |
| 위기상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규모 피해 발생 우려가 있어 일상적 대응보다 훨씬 강화된 조치나 특별한 의사결정이 요구되는 상황</li> <li>진행양상과 대처내용에 따라 결과수습형, 완만진행형, 순간증폭형으로 구분되며, 위기경보 발령과 연계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li> <li>위기상황 특성을 고려하여 위기경보 수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li> </ul>  |
| 결과수습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기상황 자체가 이미 대규모 피해로 발생한 유형</li> <li>재난의 전조가 없어 「관심」단계 불필요, 바로 「심각」단계 발령</li> </ul>   |
| 완만진행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기상황의 심각성이 점진적으로 증가되는 유형</li> <li>「관심」부터 「심각」까지 순차적 또는 상황변화에 따라 대응</li> </ul>  |
| 순간증폭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초기 피해는 경미했지만, 대규모 피해 발생으로 귀결되는 유형</li> <li>2차 피해가 발생 가능한 폭발점 확인 및 「심각」단계 발령</li> </ul>   |
| 재난관리 유관기관 | 유형별 위기관리 활동에 있어 주관기관의 활동을 지원하고 협조하는 중앙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 재난관리 실무기관 | 위기관리의 대상이 되는 기능·시설을 직접 관리하거나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단체   |
| 재난관리 활동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방 : 위기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감소시킴으로써 위기 발생 자체를 억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li> <li>대비 : 위기상황 하에서 수행해야 할 제반사항을 사전에 계획, 준비, 교육, 훈련함으로써 위기 대응능력을 제고시키고, 위기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태세를 강화시켜 나가는 일련의 활동</li> <li>대응 : 위기 발생 시 국가의 자원과 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추가적인 위기발생 또는 위기의 확대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일련의 활동</li> <li>복구 : 위기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위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고, 평가 등에 의한 제도 개선과 운영체계 보완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며 위기 관리 능력을 강화하는 일련의 활동</li> </ol> |

| 구분   | 내용  |
|------|---|
| 지진해일 | 해저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진 등으로 지반이 하강 또는 상승하며 발생하는 긴 주기를 갖는 해양파로, 해안가에 접근하면 해안지형과 상호작용을 일으켜 파고가 높아지며 해안지역의 침수 및 해안구조물에 피해 발생 |
| 전진   | 큰 규모의 지진을 일으키는 단층내에서 본진 전에 발생하는 지진  |
| 본진   | 진원부근(하나의 단층)에서 발생하는 지진 중 가장 규모가 큰 지진  |
| 여진   | 본진 뒤에 발생하는 작은 규모의 지진으로 강한 지진이 발생한 후 단층 주변에 남아있던 탄성에너지가 방출되면서 일어나며, 본진의 규모에 따라 여진의 규모와 발생기간에 비례함                   |
| 진 원  | 지진발생시 지반의 파괴가 시작된 곳으로 지진파가 발생한 땅속의 지점   |
| 진 앙  | 진원의 바로 위 지표면의 지점  |
| 규 모  | 지진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에너지의 크기로서, 지진계에 기록된 지진파의 최대진폭과 진앙거리를 이용하여 계산  |
| 진 도  | 지진으로 인해 땅이나 사람 또는 물체가 흔들리고 파괴되는 상대적인 크기로서, 기상청은 수정 메르칼리 진도계급(12단계)을 사용함   |
| 직접피해 | 지진으로 지반이 흔들려 발생하는 직접적인 피해로 지반 균열, 붕괴, 산사태 그리고 구조물 붕괴 등이 발생  |
| 연계피해 | 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1차 피해와 연계하여 발생한 2차적인 피해   |
| 복합재난 | 지진으로 인해 연계피해가 발생하여 사회적 위기상황을 초래하는 재난(현행 재난관리 표준매뉴얼 작성대상 재난 등)이 복합적으로 발생한 것  |

## Ⅱ. 위기 형태와 관리 체계



## II. 위기 형태와 관리 체계

### 1 위기 형태

가. 지진해일이란 해저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진 등으로 지반이 하강 또는 상승하며 발생하는 긴 주기를 갖는 해양파로, 해안가에 도달하면 해안지형과 상호작용을 일으켜 파고가 높아지며 침수 및 해안구조물에 피해 발생

※ 해저의 산사태, 화산분화로 지진해일이 발생할 수도 있음

나.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규모 6.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 한반도 주변 해안지역에 지진해일 내습 가능성이 있음

다. 해안지역이 침수·범람되는 등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어항 및 항구시설 마비 등 연계피해 발생

- 1) 직접피해 : 육지로 바닷물이 내습하여 발생하는 직접피해로 침수, 범람, 해안시설물 파괴, 인명피해 등이 발생
- 2) 연계피해 : 직접 피해에 따른 2차 피해로 오염, 유해물질 유출, 각종 서비스 중단, 기능 마비 등이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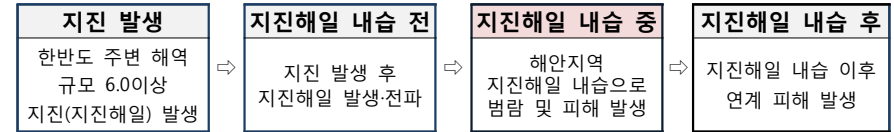
라. 직접·연계피해 이후 사회불안 증가, 도시기능 마비, 경기 침체, 먹는 물 오염, 대규모 쓰레기 발생 및 하수처리 곤란으로 전염병 발생 등 간접피해 발생

❖ **(국내사례)** 1983년 5월 26일 11:59, 일본 아키타현 외해 지진(규모 7.7) 발생으로 동해안 일부지역에 지진해일 피해 발생

- 최초 도달 시간 : 울릉도(13:17), 묵호(13:35), 속초(13:43), 포항(13:52)
- 해일 높이 : 울릉도 1.3m, 묵호 2m, 속초 1.56m, 포항 0.62m 등
- 피해(임원항) : 사망 1, 실종 2, 부상 2, 선박 81척, 건물 42동 피해 등

### 2 전개 양상

가. 지진해일 발생 및 진행 양상



※ 일본 서쪽해역에서 대규모 지진 발생 시, 1~2시간 사이 동해안 지역에 지진해일 도달 예상

나. 피해 양상

| 지진<br>해일<br>내습 | 현상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지진해일 내습 이후 수차례 반복하여 내습</li> <li>• 내습 이후 지형에 따라 장시간 침수 가능</li> </ul>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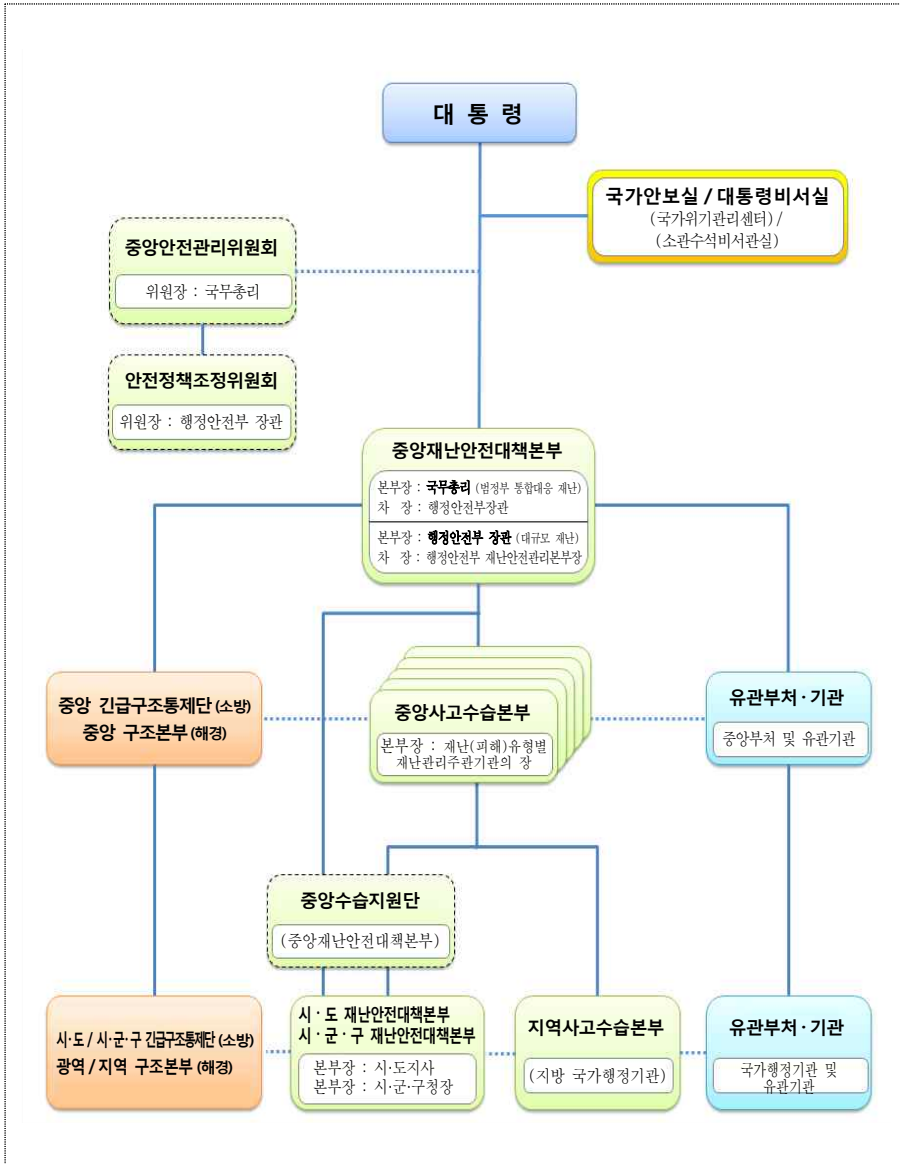
|                  |                   | 직접피해  | 연계피해  |
|------------------|-------------------|---|---|
|                  |                   | <b>범람<br/>침수</b>                                | 범람·침수, 충돌, 침몰 등<br>원자력 발전소 등의 침수<br>위험물 관리시설 침수 |
| <b>피해<br/>발생</b> | <b>구조물<br/>피해</b> | 제방, 댐, 저수지 피해<br>도로, 철도 시설 손상·파손<br>공항 시설 손상·파손 | 댐, 저수지 침수·범람 등<br>교통 두절<br>항공 운항 및 수송 마비        |
|                  |                   | 어항 및 항구시설 손상·파손,<br>항만시설 및 선박 손상·파손             | 어항 및 항구시설 마비,<br>해상 운항 및 수송 마비,<br>대규모 해양오염 등   |
|                  |                   | 전기, 가스, 수도 등 라이프라인 및<br>공동구 손상·파손               | 전력·가스·수도 공급 중단, 통신<br>마비, 금융전산 마비               |
|                  |                   | 건조물 문화재, 동산 문화재 다량<br>소장처 붕괴                    | 문화재 도난, 유실 등 문화재 화재<br>피해 및 사상자 발생              |
|                  |                   | ⋮   | ⋮   |



| 간접 피해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규모 인명 및 시설 피해 등 광범위한 분야의 영향 초래</li> <li>• 사회불안 증가, 도시기능 마비, 경기 침체 등 사회적·경제적 분야의 파급</li> </ul> |

### 3 위기관리 체계

#### 가. 종합체제도



#### 나. 위기관리 기구의 임무와 역할

| 구분                               | 임무 및 역할   |
|----------------------------------|---|
| <b>국가안보실</b><br>(국가위기관리센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난분야 위기 초기 상황 파악, 보고 및 전파</li> <li>재난상황 총괄·조정 및 초기·후속 대응반 운영</li> <li>재난안전관리 정책 총괄</li> </ul>  |
| <b>대통령비서실</b><br>(소관 비서관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난 분야별 정책 대응 및 홍보방향 제시</li> <li>재난 분야별 후속대응 및 복구</li> </ul>  |
| <b>중앙안전관리위원회</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난관리에 있어 국가차원의 중요정책 조정·심의</li> <li>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심의</li> </ul>  |
| <b>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b><br>(행정안전부장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규모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li> <li>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 소속 직원의 파견, 그밖에 필요한 지원 요청</li> <li>재난예방 및 응급대책 등 재난대비계획 수립(안전취약계층 포함)</li> <li>재난분야 재난징후 목록 및 상황정보 종합·관리</li> <li>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건의</li> <li>재난현장 대응활동 종합 및 조정</li> <li>상황판단회의(위기평가회의)를 통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재난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할 수 있음</li> <li>※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필요시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운영 권고할 수 있음</li> </ul> </li> <li>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및 중앙사고수습지원단 파견 조치 등</li> <li>중앙사고수습본부와의 협업, 지원 및 총괄·조정 등</li> </ul> |
| <b>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b><br>(지방자치단체의 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재난상황 총괄 및 사고수습체계 구축</li> <li>재난현장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한 재난현장 통합 지원본부 설치·운영(시·군·구 단체장)</li> <li>지역 내 재난관리 책임기관과의 장에게 행·재정상의 조치 및 업무 협조 요청</li> <li>생활안정지원, 응급복구, 의료·교통, 물자지원 등(안전취약계층 대책 포함)</li> <li>지역사고수습본부와의 원활한 협조체계 유지 등</li> </ul>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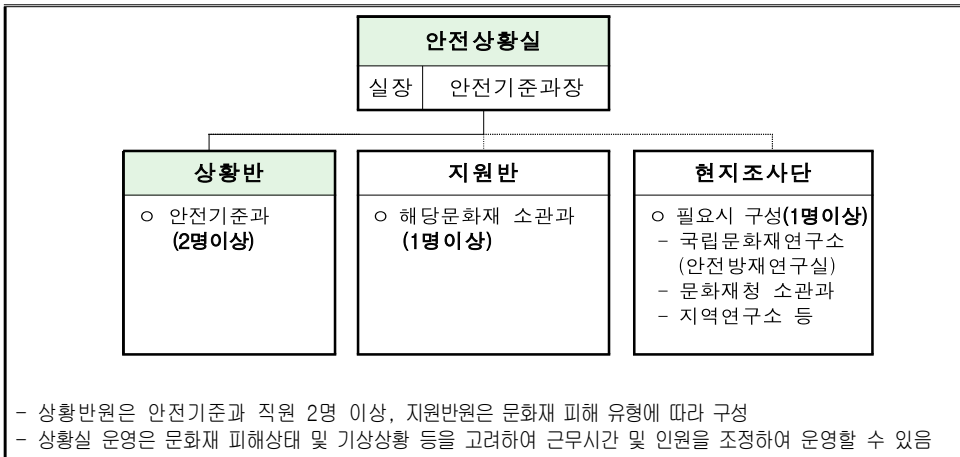
## 다-1. 문화재청 대응체계

### 1) 비상기구 운영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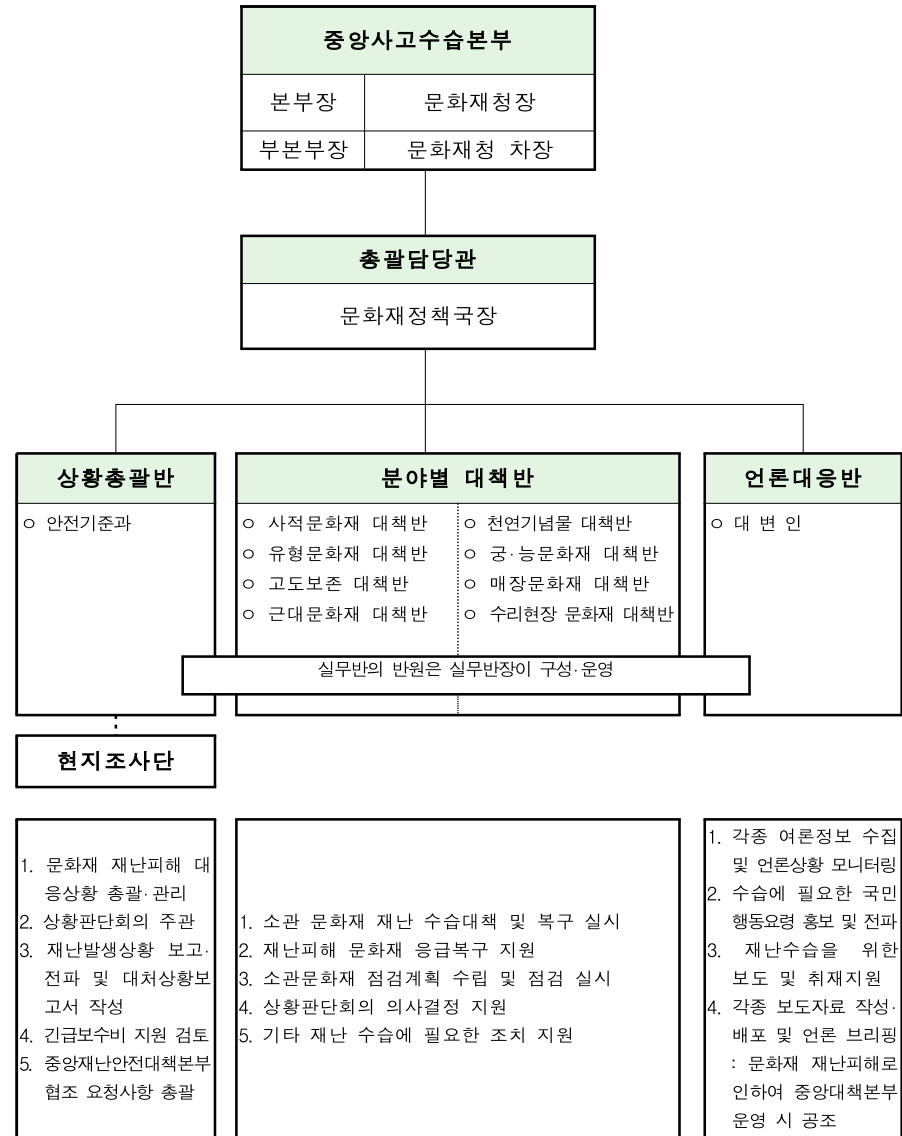
- 사전예측 및 피해파악이 어려운 지진특성을 감안하여 **지진해일규모에 따라 비상기구 우선 가동**
- 비상기구 가동 후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여 피해규모 등에 따라 위기대응 단계조정

| 구분                          | 운영기준   |
|-----------------------------|--|
| 상황관리                        | ○ 지진해일주의보 (예상파고 0.5m 미만)   |
| 1단계<br>(문화재 안전상황실<br>구성·운영) | ○ 지진해일주의보 (예상파고 0.5 ~1.0m 미만)  |
| 2단계<br>(문화재청 중수본<br>구성·운영)  | ○ 지진해일주의보(예상파고 0.5 ~1.0m 미만)가 발령되고 문화재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필요시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가동 결정<br>○ 지진해일경보(예상파고 1.0m 이상)가 발령되고 문화재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가동 결정 |

### 2) 문화재청 안전상황실 구성도



### 3)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도



\* 총괄담당관 및 상황총괄반장은 각각 문화재정책국장, 안전기준과장으로 하나, 단일 유형의 문화재 재난피해의 경우 원활한 대처를 위하여 각각 해당업무의 담당 국장, 과장으로 지명할 수 있음

4) 중앙사고수습본부 실무반 편성기준 및 역할

| 구분                     | 인원수                | 담당업무  | 비고   |     |
|------------------------|--------------------|---|--|-----|
| 상황<br>총괄반              | 반장 1<br>반원 2       | 1. 문화재 재난피해 대응상황 총괄·관리<br>2. 상황판단회의 주관<br>3. 재난상황 보고전파 및 상황보고서 작성<br>4. 긴급보수비 지원 검토<br>5.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협조 요청사항 총괄 | 안전<br>기준과  |     |
| 분야<br>별<br>대<br>책<br>반 | 사적<br>문화재<br>대책반   | 반장 1<br>반원 1  | 1. 사적 등 소관문화재 재난 수습대책 및 복구 실시<br>2. 재난피해 문화재 응급복구 지원(문화재 돌봄사업단 이용)<br>3. 소관문화재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br>4. 상황판단회의 의사결정 지원 | 보존과 |
|                        | 유형<br>문화재<br>대책반   | 반장 1<br>반원 1  | 1. 국보·보물 건조물, 동산문화재 등 소관문화재 재난 수습대책 및 복구 총괄<br>2. 소관문화재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br>3. 상황판단회의 의사결정 지원                        | 유형과 |
|                        | 고도보존<br>대책반        | 반장 1<br>반원 1  | 1. 고도지역 등 소관문화재 재난 수습대책 및 복구 총괄<br>2. 소관문화재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br>3. 상황판단회의 의사결정 지원                                    | 고도과 |
|                        | 근대<br>문화재<br>대책반   | 반장 1<br>반원 1  | 1. 국민, 등록문화재 등 소관문화재 재난 수습대책 및 복구 총괄<br>2. 재난피해 문화재 응급복구 지원<br>3. 소관문화재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br>4. 상황판단회의 의사결정 지원        | 근대과 |
|                        | 천연<br>기념물<br>대책반   | 반장 1<br>반원 1  | 1. 천기, 명승 등 소관문화재 재난 수습대책 및 복구 총괄<br>2. 소관문화재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br>3. 상황판단회의 의사결정 지원                                  | 천기과 |
|                        | 궁·능<br>문화재<br>대책반  | 반장 1<br>반원 1  | 1. 궁·능 등 소관문화재 재난 수습대책 및 복구 총괄<br>2. 재난피해 문화재 응급복구 지원(직영사업단 이용)<br>3. 소관문화재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br>4. 상황판단회의 의사결정 지원    | 복원과 |
|                        | 매장<br>문화재<br>대책반   | 반장 1<br>반원 1  | 1. 매장 문화재, 발굴현장 등 재난 수습대책 및 복구 총괄<br>2. 소관문화재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br>3. 상황판단회의 의사결정 지원                                  | 발굴과 |
|                        | 수리현장<br>문화재<br>대책반 | 반장 1<br>반원 1  | 1. 문화재 수리현장 재난 수습대책 및 복구 총괄<br>2. 소관문화재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br>3. 상황판단회의 의사결정 지원  | 수리과 |
| 언론대응반                  | 반장 1<br>반원 1       | 1.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방송 상황 모니터링<br>2. 재난수습을 위한 보도 및 취재지원<br>3. 각종 보도자료 작성·배포 및 언론 브리핑                                | 대변인  |     |

라. 협업기능별 활동내용

| 구분       | 활동내용   | 책임기관   |
|----------|--|--|
| ① 재난상황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수기관 수행 전반적 재난관리활동 지원·조정</li> <li>협업기능 지원·조정 및 상황관리 총괄</li> <li>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li> <li>재난단계별 상황판단회의 준비·개최</li> <li>재난진행상황 등 모니터링결과 보고·전파</li> <li>대처상황보고서 등 상황보고서 관리</li> <li>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조치</li> <li>재난사태 선포 검토(필요시)</li> </ul>   | 행정안전부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난발생지역 세제·금융지원, 전기·통신료 감면</li> <li>이재민 구호 상황파악 및 공유</li> <li>관계부처 및 구호지원기관(대한적십자사 및 전국재해구호협회 등)에 구호협조 요청</li> <li>유관부처 및 기관 협조 요청</li> <li>구호기관(해당 지자체) 구호대응 지시</li> <li>현장(임시주거시설 지정) 연락관 파악</li> <li>재해구호기금 활용 및 지원독려</li> </ul>  | 행정안전부  |
| ③ 긴급통신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긴급구조기관, 긴급구조 지원기관 간 긴급통신체계 운영</li> <li>재난현장에서 통신두절 등 피해상황 파악 및 긴급통신지원단 비상연락체계 가동</li> <li>중앙 긴급통신지원단 구성·운영</li> <li>시·도 긴급통신지원단과의 협업체계 가동</li> <li>지휘통신 두절 및 지휘관의 요청에 따른 재난현장 긴급통신망 구축·운영</li> </ul>  | 행정안전부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피해시설 응급복구</li> <li>하천시설(댐 제외), 철도, 항공, 도시개발 등 소관시설</li> <li>주택 또는 주거를 겸한 상가</li> <li>댐, 홍수의 예보·경보 시설 등 소관시설</li> <li>방조제, 저수지, 배수장 등 수리시설</li> <li>농경지, 농림시설, 축사, 비닐하우스</li> <li>어항시설, 어선, 어업 무선국시설 등대시설, 항만시설</li> <li>염전, 어선, 어망·어구, 수산물 증·양식시설, 수산생물입식</li> <li>국립·공립·사립 학교시설</li> <li>산사태, 산지계류, 사방댐 및 임도, 휴양림, 수목원</li> <li>자목 및 표고버섯 재배사, 산림작물</li> <li>정보통신시설</li> </ul> | 국토교통부<br>지대본<br>환경부<br>농림축산식품부<br>해양수산부<br>교육부<br>산림청<br>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구분               | 활동내용  | 책임기관                    |
|------------------|---|-------------------------|
| ⑤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복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스·전기·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 회복 지원</li> </ul>  | 산업통상자원부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에너지 긴급 지원 등 재난대응 상황실 운영</li> <li>에너지공급시설 등 국가기반시설 및 산업단지 피해시설 에너지 긴급복구 지원</li> <li>국민생활밀착형 피해시설 에너지기능 회복지원</li> <li>재난현장 및 에너지 공급 고립지역 긴급 지원 요청</li> <li>임시 재난대책본부 에너지 공급 지원</li> <li>이재민 임시 수용시설 긴급에너지 지원</li> </ul>  |                         |
| ⑥ 재난 관리 자원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체계 구축을 통한 신속한 자원배분</li> </ul>   | 행정안전부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규모 피해지역 부족 자재·장비·인력 지원체계 가동(부족자원 파악 및 긴급지원)</li> <li>자원 응원 요청 및 조정 : 관계기관, 단체 자원 응원 요청, 필요시 자원조정</li> <li>자원 응원 관리 : 재난현장 자원 투입 추적, 재난현장 자원 도착 확인</li> <li>지원 추가 지원 필요 파악 : 추가 투입 필요시 자원 지원 또는 종료</li> <li>자원 지원 실적 정리, 보고서 작성</li> </ul>   |                         |
| ⑦ 교통대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육상(육로, 항공), 해상 교통수단 지원</li> </ul>  | 행정안전부<br>국토교통부<br>해양수산부 |
|                  | <p>&lt; 교통재난시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통) 사고 수습상황실 운영 및 사고수습 총괄, 교통정보(상황) 수집 및 제공, 교통통제 및 도로 긴급복구 실시, 대체교통수단 확보 및 운행, 우회로 확보 및 개설</li> <li>(철도·지하철) 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및 사고 수습 활동, 교통정보(상황) 수집 및 제공, 대체교통수단 확보 운행</li> <li>(항공) 항공교통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및 사고 수습 활동, 수송수단 및 인력 지원, 대체교통수단 확보 운행</li> </ul> <p>&lt; 교통지원(수송)대책시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통) 특별교통(수송)대책 수립 시행, 수송수단·장비·인력 지원, 교통수단별 노선 및 운행 조정, 대체교통수단 확보 및 운행</li> <li>(철도·지하철) 수송수단 및 인력 지원, 교통정보(상황) 수집 및 제공, 노선 및 운행 조정</li> <li>(항공) 수송수단 및 인력 지원, 교통정보(상황) 수집 및 제공, 노선 및 운행 조정</li> </ul> |                         |

| 구분  | 활동내용  | 책임기관         |
|---|---|--------------|
| ⑧ 의료 및 방역 서비스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중보건서비스, 전염병 방역 서비스</li> </ul>   | 보건복지부        |
|   | <p>&lt; 재난대응 응급의료지원체계 가동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난현장 응급의료지원체계 가동</li> <li>응급의료기관 응급실 진료 강화</li> <li>응급의료자원 확보·지원 및 유관기관 정보공유</li> <li>신속한 혈액공급을 위한 대비태세 확립</li> </ul> <p>&lt; 감염병 예방 및 방역체계 가동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앙방역비축물품 확보 및 지원</li> <li>감염병 감시체계 운영</li> <li>재해지역 방역 강화</li> </ul>                            |              |
| ⑨ 재난현장 환경정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육상·해상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수거·처리 지원</li> </ul>   | 환경부<br>해양수산부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난현장 환경정비 협업기능 책임부서·지원기관 지정 및 역할 부여</li> <li>안전점검, 안전교육·훈련, 재난대응 매뉴얼 등 재난 관련 자료 최신화 등 평시 대비활동 추진</li> <li>상황실 설치·운영, 재난현장 및 지원기관, 협조부처 등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확인·정비 유지</li> <li>재난폐기물 발생량 등 재난현장 상황을 신속히 파악 하여 환경정비 지원대책을 강구하는 등 대응체제 및 지원체제 구축</li> <li>재난현장 환경정비 소요비용에 대한 국고지원 방안 협의·검토</li> <li>재난폐기물 수거·처리계획 시행(재난 지자체 협조)</li> </ul>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류유출에 따른 해상방제</li> </ul>   |              |
| ⑩ 자원봉사 및 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방사능 유출에 따른 폐기물처리</li> </ul>  | 원자력안전위원회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난지역 배정, 자원봉사자 관리, 공공근로 및 기술지원</li> </ul>  | 행정안전부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원봉사 활동 상황 취합 및 행정안전부 재난자원 관리과와 정보공유</li> <li>현장에서 자원봉사 인력에게 필요한 물품과 기자재 부족 시 조정기관에 보고 및 협조요청</li> <li>중앙·지역자원봉사센터와 재난현장 상황공유</li> <li>자원봉사자 개인 및 단체 언론활동 현황관리</li> <li>사후 평가를 위한 자원봉사자 활동 모니터링</li> </ul> |   |              |



| 구분                  | 활동내용   | 책임기관                |
|---------------------|--|---------------------|
| ⑪ 사회질서유지            | • 교통통제, 현장통제, 안전관리, 주민대피   | 경찰청                 |
|                     | - 재해발생 우려지역 순찰강화 및 출입통제<br>- 피해지역 범죄예방 및 치안유지  |                     |
| ⑫ 재난지역 수색, 구조·구급 지원 | • 인명구조, 응급처치, 응급환자이송, 사망·실종자 수색  | 소방청<br>해양경찰청        |
|                     | - 긴급구조통제단 운영<br>- 인명피해 발생대비 응급의료기관의 준비상황 및 비상연락망 점검<br>- 고립지역, 침수지역, 산사태, 화학·방사능 등으로 접근 곤란 예상지역 인명구조·대피계획수립              |                     |
| ⑬ 재난수습 홍보           | • 재난대처 관련 각종 정보 배포·조정  | 중수본<br>지대본<br>현장대변인 |
|                     | - 중수본 등 재난 관련 정부 대책 등에 대한 보도 자료 배포 등 언론대응 활동을 담당하며 중대본, 지대본과 조율된 정보 배포<br>- 재난관련책임기관의 재난대응 활동 등에 대한 자료 제공, 필요시 개별 언론대응활동 |                     |

라-1. 문화재청 협업기능별 활동내용

| 구분            | 활동내용   | 소관부서<br>(협조부서)  |
|---------------|--|---|
| ① 재난상황관리      | • 다수기관 재난관리활동 총괄조정   | 안전기준과   |
|               | - 재난 발생 접수 및 진행상황 파악<br>- 초기 대응 및 상황보고·전파(BH, 총리실, 청·차장 등)<br>- 피해지역 문화재 피해실태 파악 및 대처<br>- 직원 비상소집 및 상황판단회의 개최 준비<br>- 위기단계별 대응반 인원편성 및 운영지원(필요시)<br>- 자체 상황판단회의 개최<br>- 회의 결과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br>- 지역사고수습본부 대응태세 점검 및 협조요청<br>- 중대본(행정안전부) 가동 시 지원업무 총괄<br>- 인명 및 문화재 피해 최소화를 위한 중수본 긴급 특별지시<br>- 대처상황 총괄 보고서 작성, 신속한 보고 및 전파<br>- 인명 및 문화재 피해 현황 총괄 관리 등 |   |
| ② 긴급 생활안정 지원  | • 재난발생지역 세제·금융지원등 생활안정지원   | 안전기준과<br>(기획재정담당관)  |
|               | - 이재민 발생 파악·관리<br>- 임시주거시설 및 재해구호물자 지원<br>- 행정재정적 지원 검토(특별교부세 등)   |   |
| ④ 시설 피해의 응급복구 | • 피해시설 응급복구  | 소관부서<br>(안전기준과,<br>기획재정담당관,<br>수리기술포,<br>보존정책과,<br>유형문화재과,<br>근대문화재과,<br>천연기념물과,<br>공능유적본부 등) |
|               | - 문화재 안전여부 및 피해상황 파악 및 응급복구 지원<br>- 피해복구계획 수립 지원<br>- 소관부서별 피해시설 응급복구<br>- 피해 복구비 지원 요청 시 국고보조 여부 검토<br>- 재난발생 및 피해지역 응급 복구 장비·인력·자재 지원<br>- 응급복구 추진상황 관리·점검   |   |
| ⑥ 재난관리 자원 지원  | • 재난으로 인한 재난자원 지원 총괄조정   | 안전기준과<br>(운영지원과)  |
|               | - 응급의료 자재·인력·장비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가동<br>- 긴급 구매물품 조달 협조(운영지원과 협조)<br>- 재난 복구용 중장비 등 재난관리자원 동원<br>- 군 인력·장비 지원을 위한 국방부 협력체계 가동<br>- 긴급상황 및 교통두절 지역 산림항공 헬기 지원   |   |

| 구분             | 활동내용   | 소관부서<br>(협조부서)                          |
|----------------|--|---|
| ㉑ 재난현장 환경정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난현장쓰레기·환경 오염물질 처리 등</li> </ul>   | 안전기준과<br>(수리기술과,<br>보존정책과,<br>공능유적본부 등)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피해 문화재 주변정리 및 손상 부재, 파편 수습</li> <li>문화재표시 라벨 부착 조치</li> <li>쓰레기, 환경오염 물질 발생 및 처리 현황 파악관리</li> <li>집게차, 폐기물 운반차량 등 장비 동원 등</li> </ul>  |   |
| ㉒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원봉사자 동원 및 배정, 기술인력 지원 등</li> </ul>   | 안전기준과<br>(수리기술과,<br>보존정책과,<br>공능유적본부 등)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원봉사자 모집</li> <li>자원봉사활동 기능 분류·배치</li> <li>자원봉사자 투입현황 파악 및 관리</li> <li>자원봉사자 안전관리 및 급식지원</li> <li>민간자원봉사 장비·인력지원요청 및 관리</li> </ul>  |   |
| ㉓ 재난수습 홍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재 재난 대응 언론·대국민 홍보 등 재난공보체계 운영</li> </ul>  | 대변인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국민 행동요령 및 주의 사항 등 홍보</li> <li>재난방송 및 보도자료 작성·배포(중대본부 가동 및 대응상황, 위기경보 발령사항 등)</li> <li>언론브리핑 및 정부합동 담화문 발표</li> <li>지상파 방송, 지역 방송사에 자막 방송 요청</li> <li>오보 및 유언비어 대응</li> </ul> |   |

## 다. 재난현장 대응·수습 표준체계

### 1) 재난현장 대응·수습 표준편제

- 재난현장 대응·수습 편제는 공보, 연락, 상황총괄(대응계획), 현장대응, 자원지원, 대민지원(긴급복구)으로 표준화



### 2) 재난현장 지휘 및 협력체계

- 현장대응
  - (긴급구조 상황) 육상재난은 소방, 해상재난은 해경이 중심으로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지원본부를 통해 관내 행정기관(군부대, 특행기관 등)을 총괄하여 재난대응 통합지원
  - (비긴급구조 상황) 각 유형별 소관기관에서 담당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지원본부를 통해 관내 행정기관(군부대, 특행기관 등)을 총괄하여 재난대응 통합지원
- 수습복구
  -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지휘권을 위임받아 수습복구 현장 지휘
  - 소방·해경은 기관의 기본 편제를 가지고 지원에 참여하고, 군·경·유관기관·협회·단체는 통합지원본부장의 지휘를 받아 수습·복구를 지원





3) 시·군·구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 Ⅲ. 위기관리 기본방향

# Ⅲ. 위기관리 기본방향

## 1 목 표

- 가. 지속적인 지진해일 대비 활동 및 지진해일 발생대비 신속한 상황전파체계의 구축·운영
- 나. 지진해일 발생 시 신속한 피해상황 파악과 초동대응으로 지진해일 발생 초기의 혼란 방지
- 다. 지진해일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 및 주민의 긴급대피로 인명·재산피해 최소화
- 라. 지진해일에 의한 직접피해와 이로 인한 연계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

## 2 방 침

| 구 분     |      | 대 응 방 침  |
|---------|------|--|
| 대응단계    | 초동조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상황 파악 및 전파, 재난상황 신속보고</li> <li>• 문화재 안전상황실 근무자 비상소집 및 신속한 응소</li> <li>• 지자체,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구축</li> </ul>   |
|         | 대응조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계별 위기대응기구 구성·운영</li> <li>• 현지조사단 구성·운영 : 주요문화재 피해 조사</li> <li>• 피해 지역 문화재 현장점검</li> <li>•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실시요청 (우장막 설치, 전기·가스시설 차단, 도난방지대책 등)</li> </ul> |
| 복 구 단 계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재 피해액 및 복구액 조사</li> <li>• 문화재 복구계획 수립</li> <li>• 문화재 복구 예산지원(긴급보수비)</li> </ul>  |

## 3 위기대응 지침 및 판단·고려 요소

### 가. 위기대응 지침

#### 1) 대응 개념

□ 목 표 : 신속한 상황파악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초동조치

#### □ 대응 방향

- 지진해일로 문화재피해 발생 예상 시 주요간부에게 동시 상황보고 실시
- 유관기관 및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와 비상연락체계 구축
- 문화재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긴급 대응 조치 실시
  - 동산문화재 긴급 이운
  - 이운 불가 문화재 현지보존을 위한 응급보호 조치
- 사후 신속한 응급복구 및 문화재 도난 방지 대책실시

#### 2) 대응 지침

#### □ 신속한 상황 보고·전파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 신속한 상황 보고·전파를 위한 동시보고 실시
  - 안전기준과 담당 사무관 또는 담당 주무관이 동시보고 실시 (상황보고는 안전기준과장, 문화재정책국장, 문화재청·차장 동시보고)
  - 상황 보고자는 안전기준과 모든 직원에게 재난발생 상황 및 주요간부 보고여부 전파
- 유관기관 및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와 비상연락체계 구축

#### □ 문화재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긴급대응조치 실시

- (재난발생 전) 관계기관의 협조 등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하여 문화재의 긴급 이운 또는 현지 보호조치 강구 (인명우선)
- (재난발생 후) 동산문화재 침수물 배수 및 도난방지를 위한 긴급후송 조치 실시

### 나. 판단/고려 요소

- 지진해일 이후 동산문화재 도난방지 및 2차피해 방지를 위한 긴급보호 대책 강구
- 지진해일 도달시간 및 내습 예상 범위를 고려한 문화재 긴급 이운 및 현지 보호조치

## 4 위기징후 감시

### 가. 위기징후 목록

#### 1) 지진 해일

| 위기형태 | 위기징후 목록  | 감시수단                                 | 감시방법                                | 위기경보   | 조치             |
|------|--|--------------------------------------|-------------------------------------|--|----------------|
| 지진해일 | 1.1.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빈번하게 지진 발생                        | 기상청의 지진 관측                           | 기상청의 지진 통보 확인                       | 위기평가에 따라 관심~주의   | 대비태세 유지        |
|      | 1.2.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기상청의 지진해일 특보(주의보, 경보) 발표 | 기상청의 지진, 지진해일 관측<br>기상청의 지진, 지진해일 관측 | 기상청의 지진해일 주의보 확인<br>기상청의 지진해일 경보 확인 | 경계<br>※지진해일 내습으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경계' 경보 발령<br>심각<br>※지진해일 내습으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심각' 경보 발령 |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 |

<지진해일 특보 발표 기준(기상청)>

- 지진해일 주의보 : 규모6.0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하여 우리나라 해안가에 해일파고 0.5~1.0m미만의 지진해일 내습이 예상될 때
- 지진해일 경보 : 규모6.0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하여 우리나라 해안가에 해일파고 1.0m 이상의 지진해일 내습이 예상될 때

### 나. 위기징후 감시체계와 운용

- 1) 기상청은 지진해일 관측 정보 및 특보 발령 시 관련기관에 전파
- 2) 행정안전부는 기상청의 지진해일 특보를 통하여 위기징후의 활동 상태를 감시하고, 포착된 위기징후 정보를 관련기관에 제공
- 3) 위기징후 감시결과는 기상청의 지진해일 특보 및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을 통하여 공유전파

## 5 위기 평가

가. 근거 :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제20조(징후감시체계 운용)

### 나. 위기평가 개요

- 1) 행정안전부는 상황의 심각성, 시급성, 확대 가능성, 전개속도, 지속 시간, 파급효과, 국내외 여론, 정부대응능력 등을 종합 고려하여 지진으로 인한 위기평가 및 위기 경보 발령
- 2) 행정안전부는 위기징후를 포착하거나 위기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기상청 등 관계기관과 수시로 위험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위기평가회의”를 운영

#### 위기평가회의(상황판단회의) 구성

1. 참석 : 재난관리정책관(주재), 지진방재관리과장, 지진방재정책과장, 중앙재난안전상황실, 기상청 관계자 등  
※ 재난상황 경중에 따라 참석 대상의 직급은 조정될 수 있음
2. 운영 방법 : 대면회의, 영상회의, 유선 등  
※ 야간, 공휴일 등 신속한 위기평가회의가 필요한 경우 과장 또는 상황담당관 등이 유·무선 또는 문자·SNS 등으로 간략히 협의 가능, 회의결과 즉시 전파·공유
3. 상황판단회의 개최 시 참여기관(장관·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 위기평가를 겸한 상환판단회의)  
○ BH, 행정안전부, 기상청,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방청, 경찰청 등 관련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 재난상황 경중에 따라 참석 대상의 직급은 조정될 수 있음
4. 위기평가회의 및 상황판단회의 결과, 필요한 경우 해당 지자체 및 관계부처 등에 전파하여 사전 대비토록 통보

- 3) 행정안전부는 기상청 등의 관계기관과 위기평가를 위한 “정기위기평가회의”를 실시(상·하반기 각 1회)
- 4) 필요시, 위기징후 감시 평가결과는 홈페이지, 국민재난안전포털 등을 통하여 국민에게 알림

## 다. 지진해일 위기평가 절차 및 방법

1) 정기위기평가 : 일정 기간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 발생 동향 등을 정기적으로 분석하여 위기징후 관리 및 위기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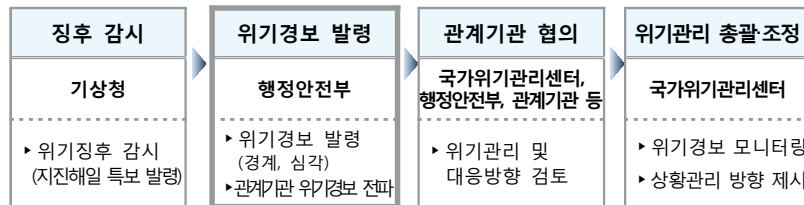
가) 주간 평가 : 주 1회, 지진 발생 현황 분석을 통하여 위기평가

나) 반기 평가 : 상·하반기 1회 기상청 등 관계기관 참여 위기평가회의를 통해 해역 지진 발생 동향 분석, 위기징후 관리 및 위기평가 개선방안 마련

※ 일정 기간 해역 지진 발생 현황을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 위기징후 감시관리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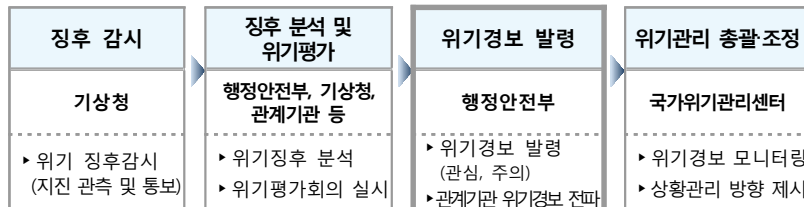
2) 수시위기평가 : 지진해일 특보 발령 및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빈번하게 지진이 발생할 경우 발생 즉시 위기평가 및 경보 발령

가) 기상청의 지진해일 특보(주의보, 경보) 발령 즉시 위기경보(경계, 심각) 발령 후 관계기관과 통보



※ 지진해일 경보 발령 시 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 후 국가위기관리센터와 협의

나) 한반도 주변 해역의 특정 지역에서 짧은 기간동안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할 경우, 위기평가 후 위기경보(관심, 주의) 발령 및 대응 수준 결정



## 6 위기경보와 경보 발령

### 가. 위기경보 수준

| 종류                 | 판단기준  | 주요활동                     | 비상단계       |
|--------------------|---|--------------------------|------------|
| <b>관심 (Blue)</b>   | ○ 한반도 주변 해역의 특정 지역에서 짧은 기간 동안 2회 이상 지진이 발생하여 상황관리 및 감시활동이 필요한 상황  | 관련기관간 협조체계 점검            | 대비단계       |
| <b>주의 (Yellow)</b> | ○ 한반도 주변 해역의 특정 지역에서 짧은 기간 동안 3회 이상 지진이 발생하여 상황관리 및 관련기관 협조가 필요한 상황   | 관련기관간 협조체계 점검            | 대비단계       |
| <b>경계 (Orange)</b> | ○ 기상청의 지진해일 주의보(예상파고 0.5~1.0m)가 발령된 경우<br>○ 지진해일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되어 중앙정부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상황<br>※ 지진해일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경계” 경보 발령 | 조치계획 점검 및 인적·물적 자원 동원 준비 | 행정안전부 비상단계 |
| <b>심각 (Red)</b>    | ○ 기상청의 지진해일 경보(예상파고 1.0m 이상)가 발령된 경우<br>○ 지진해일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되어 범정부적 대처가 필요한 상황<br>※ 지진해일로 인한 피해 확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심각” 경보 발령      | 즉각 대응태세 유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 재난에 대한 위기경보 수준 판단을 위한 기준 제시이며, 실제 경보발령 및 대응활동은 상황의 전개속도, 파급 효과 및 피해 발생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상황판단회의(위기평가회의)에서 결정

※ 대국민 위기경보는 사회·심리적 영향 등을 고려, 국민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계’ 및 ‘심각’ 단계에만 발령(‘관심’ 및 ‘주의’ 단계에서는 정부 등 유관기관 전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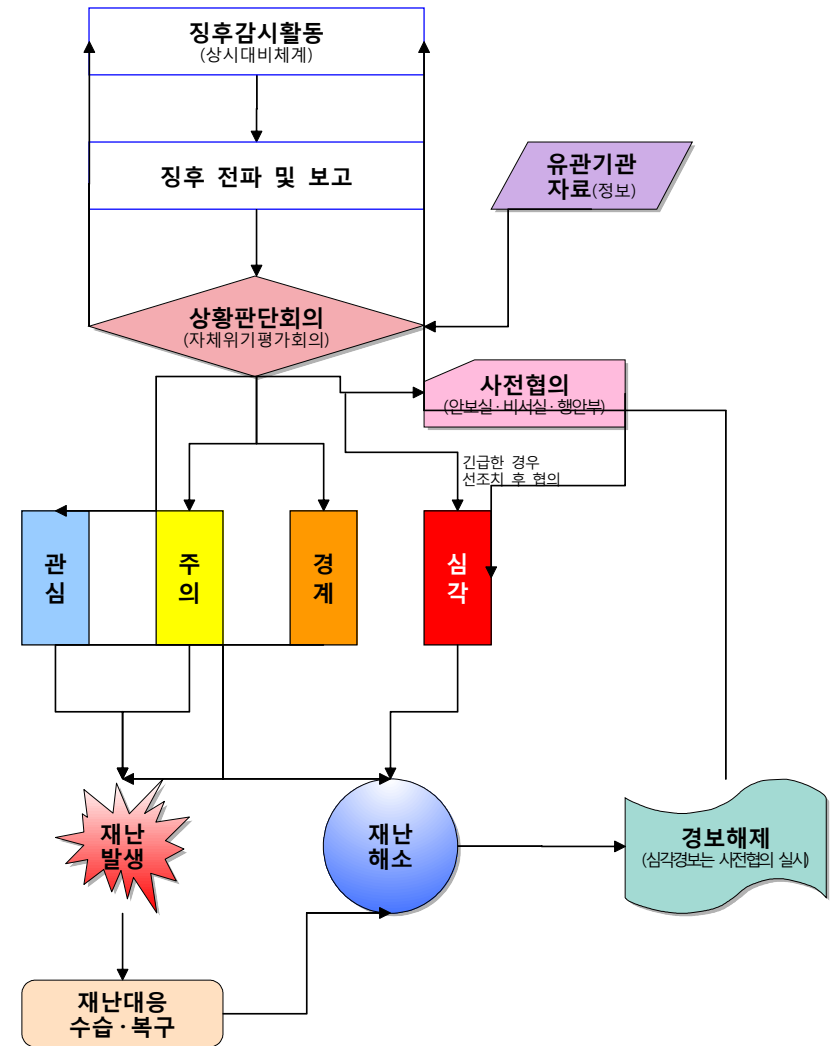
## 나. 위기경보 절차

- 1) 행정안전부는 기상청의 지진통보(지진정보, 지진속보, 지진조기경보)등을 바탕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상황판단회의(위기평가회의)를 거쳐 위기경보 발령
- 2) 위기 평가는 상황의 심각성, 시급성, 확대 가능성, 전개 속도, 지속 기간, 파급 효과, 국내·외 여론, 정부의 대응능력 등을 고려하여 평가
- 3) “심각” 경보 발령 또는 해제할 경우, 국가안보실과 사전 협의(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우선 조치한 후 협의)
- 4) 행정안전부는 위기경보 발령 시 국가안보실 및 관련기관에 신속히 통보
- 5) 수색·구조활동이 종료되거나 인명·재산 피해가 확정되는 등 “대응” 단계에서 “복구” 단계로 전환되는 경우, 상황판단회의(위기평가회의)를 거쳐 위기경보 수준을 하향 조정하거나 해제
- 6) 중대본부장은 위기단계 임무와 역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중대본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 7) 유관기관(기상청 등)은 적절한 경보 발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기 징후와 관련된 자료 (정보)를 행정안전부에 제공

### 나-1. 문화재청 위기경보 절차

- 1) 기상청의 지진통보(지진정보, 지진속보, 지진조기경보)등을 바탕으로 규모에 따라 우선적으로 비상기구 가동 후 상황판단회의 개최
- 2) 신속한 상황 보고·전파를 위하여 담당 사무관 또는 주만관이 동시보고 실시
- 3)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 문화재 피해상황 접수
- 4) 상황판단회의 시 피해규모 등에 따라 위기대응 단계조정
- 5)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위기단계 임무와 역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중수본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 6) 문화재 피해 발생 시, 주요간부 및 보고기관(BH, 국조실 등) 전파

## 위기경보 발령체계



## 다. 문화재청 상황보고·전파기준

### 1) 지진상황 보고 및 전파

| 규모         | 내용   |
|------------|--|
| 0.5m미만     | 별도의 보고·전파 불필요<br>* 단, 문화재 피해발생시 즉시 보고·전파   |
| 0.5~1.0m미만 | - 보고대상 : 청장, 차장, 문화재정책국장, 안전기준과장<br>- 보고내용 : 내습시간/예상파고/예상침수범위/조치사항                   |
| 1.0m이상     | - 보고대상 : 청장, 차장, 문화재정책국장, 안전기준과장<br>문체부, BH, 행정안전부<br>- 보고내용 : 내습시간/예상파고/예상침수범위/조치사항 |

### 2) 상황판단 회의 구성·운영

| 구분   | 내용  |
|------|---|
| 목적   | ■ 재난의 위험수준, 진행상황, 확산정도 등을 판단하고 피해 예상 문화재 보호를 위한 대책마련  |
| 주재   | ■ 문화재청장(부재 시 차장)  |
| 참석대상 | ■ 청장, 차장, 정책국장, 안전기준과장, 대변인, 해당문화재 담당과장   |
| 회의내용 | ■ 재난진행 상황, 기상여건, 재난발생 인근지역 문화재 현황, 방재자원 투입 현황 등 상황 공유<br>■ 문화재 보호대책 마련<br>■ 중앙사고수습본부 가동 여부 결정<br>■ 필요한 경우 문화재 해체가 가능하도록 조치<br>■ 문화재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자체 및 유관기관 협조 요청사항 결정<br>* 상황판단회의는 긴급성에 따라 메신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 가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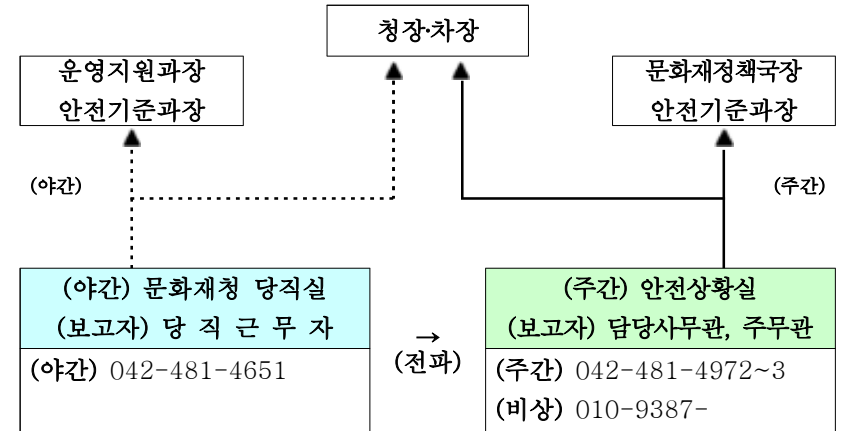
※ 상황판단회의는 긴급성에 따라 메신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 가능

### 3) 위기상황에 따른 보고·전파

| 구분      | 보고체계   |  |
|---------|--|--|
|         | 보고시기   | 보고대상 (동시보고)  |
| 피해 발생 전 | ■ 재난별 위기경보 「경계·심각」 단계 발령 시<br>■ 재난으로 문화재 피해우려가 매우 큰 경우 | · 청장, 차장<br>· 정책국장, 안전기준과장                                     |
| 피해 발생 후 | ■ 재난으로 인한 문화재 피해 발생 시<br>* 피해 정도·규모에 따라 정성적 판단 필요      | · 청장, 차장<br>· 정책국장, 안전기준과장<br>· 소관부서 국장, 과장 (필요시) BH, 문체부, 행안부 |

### 4) 상황보고·전파 체계

- 보고체계 : 보고 체계도에 따라 보고자가 동시보고 실시  
\*담당 사무관 및 주무관 부재 시 안전기준과 직원 중 최초 인지자가 보고
- 보고자는 '보고내용'에 대하여 안전기준과 직원 전원에게 전파하여 상황 공유



| 유관기관       |            |                 |
|------------|------------|-----------------|
| 1. BH      | 문화재청 담당행정관 | 02-770-4323     |
| 2.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재청 담당사무관 | 044-203-2549    |
|            | 당직실        | 044) 203-2180   |
| 3. 행정안전부   | 중앙재난안전상황실  | 044) 205-1540~3 |

#### 상황보고 예시

[지진해일 재난 발생상황 보고]

- 일시 / 장소 : '19.01.12. 19:44 / 경주 해안
- 지진해일 예상파고 : 1.3m
- 피해상황 : (현재까지 보고된 피해상황 없음)
- 조치사항 ① 경주시 문화재담당자, 경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연락하여 피해상황 신속보고 요청  
② 안전상황실 운영 예정(근무자 0명 비상응소)  
③ 국립문화재연구소 방재연구실 현지조사 요청

## 7 비상근무체계

### 1) (상황관리) 별도의 위기대응 조직을 구성하지 않음

- **기준** : 지진해일주의보(예상파고 0.5m 미만)
  - \* 단, 문화재피해현황 파악 시 즉시 안전상황실 구성·운영
- **상황관리자** : 안전기준과 담당사무관 또는 담당주무관(1명)
- **임무·역할** : ① 지진해일재난 발생상황 보고·전파(기상청으로부터 상황접수),  
② 지진발생지역 문화재피해현황 파악(지자체에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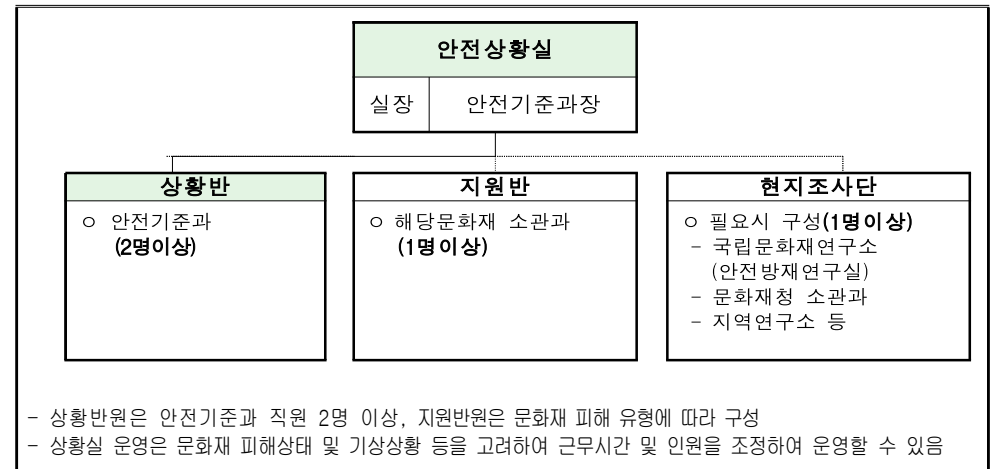
### 2) (1단계) 문화재 안전상황실 구성·운영

- **구성기준** : 지진해일주의보 이상의 경보 발령 시 구성·운영  
(예상 파고 0.5~1.0m 미만)
- **인력편성 및 운영**
  - **주야간** : 문화재정책국 **안전기준과 2명, 소관과 1명**
  - 단, 야간의 경우 안전기준과 담당자 비상응소 전까지 당직실(당직자 1명)에서 재난상황 파악 등 상황실 업무 수행
  - \* 당직근무자는 상황발생시 안전기준과장 및 안전상황실 비상폰으로 상황전파
- **상황실 임무·역할**
  - 지진해일로 인한 문화재 피해현황 파악 및 집계
  - 지진해일 발생상황 및 피해현황 보고 및 전파, 상황 및 대처보고서 작성
  - 중대본 근무자 파견조치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유지
  - 주요 문화재 현지조사단 구성·운영 협조요청  
(유선 또는 공문 : 안전기준과 → 국립문화재연구소 안전방재연구실)
  - 지자체 및 유관기관에 필요한 응급조치 실시 요청
    - 동산문화재 도난방지 등을 위한 인근 수장고로 이송조치
    -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피해문화재 전기 및 가스설비 차단
    - 태풍, 집중호우 등을 고려한 피해문화재 우장막 설치 등

### 3) (2단계)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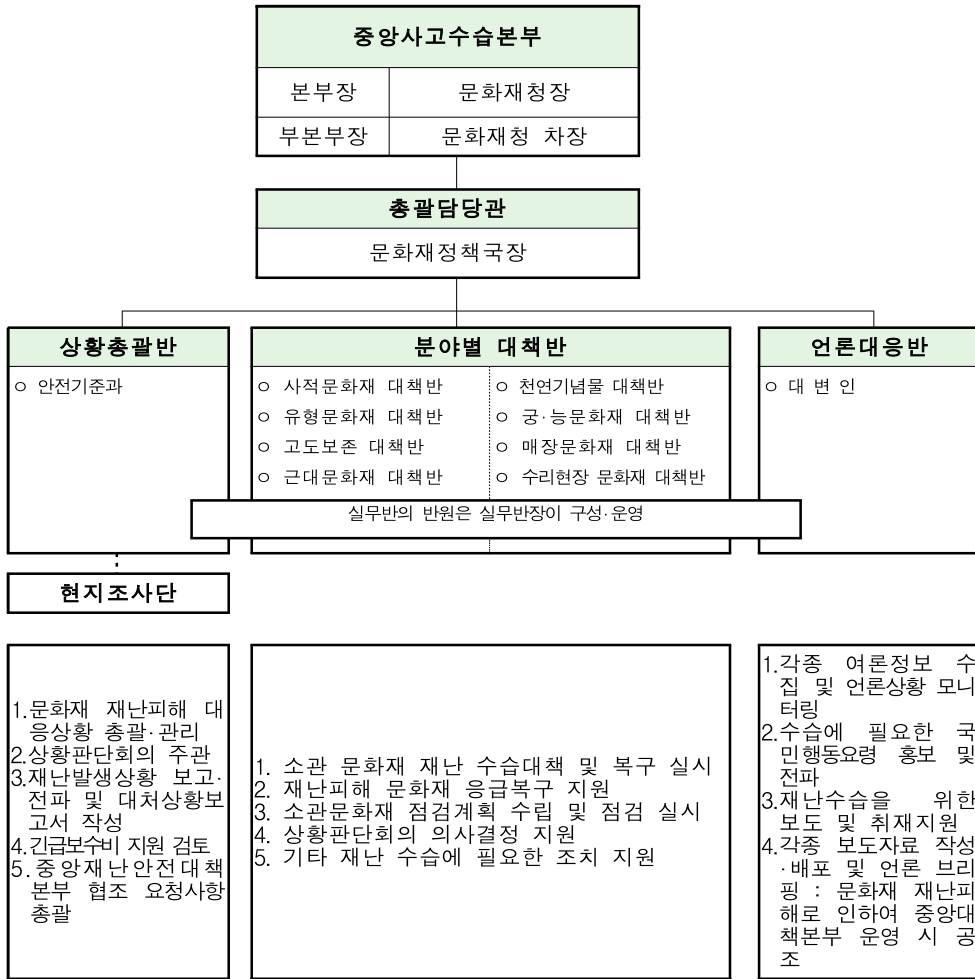
- **구성기준**
  - 지진해일주의보(예상파고 0.5 ~1.0m 미만)가 발령되고 문화재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필요시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가동 결정
  - 지진해일경보(예상파고 1.0m 이상)가 발령되고 문화재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가동 결정
- **인력편성** : 안전기준과 4명, 소관과 2명

### ※ 문화재청 안전상황실 구성도





※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도



\* 총괄담당관 및 상황총괄반장은 각각 문화재정책국장, 안전기준과장으로 하나, 단일 유형의 문화재 재난피해의 경우 원활한 대처를 위하여 각각 해당업무의 담당 국장 과장으로 지명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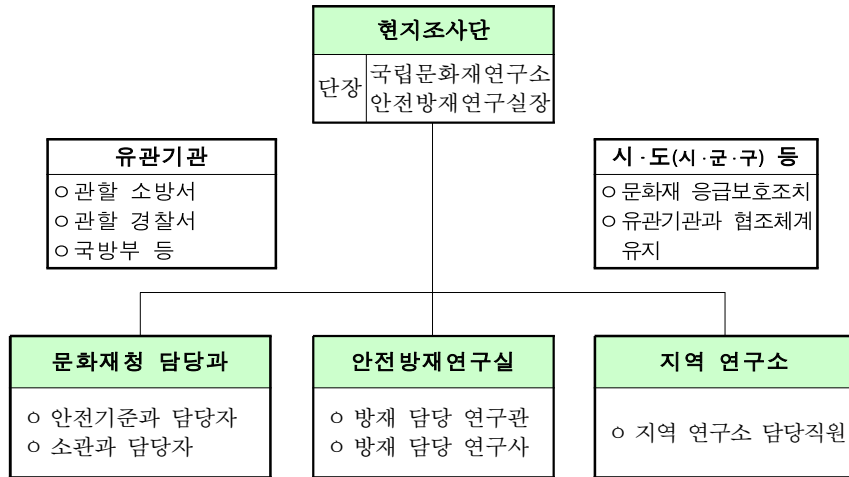
※ 중앙사고수습본부 실무반 편성기준 및 역할

| 구 분                                 | 인원수  | 담당업무  | 비고   |
|-------------------------------------|--|---|--|
| <b>상황총괄반</b>                        | 반장 1<br>반원 2   | 1. 문화재 재난피해 대응상황 총괄·관리<br>2. 상황판단회의 주관<br>3. 재난상황 보고전파 및 상황보고서 작성<br>4. 긴급보수비 지원 검토<br>5.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협조 요청사항 총괄 | 안전기준과  |
|                                     | <b>분야별 대책반</b>   | <b>사적 문화재 대책반</b><br>반장 1<br>반원 1   | 1. 사적 등 소관문화재 재난 수습대책 및 복구 실시<br>2. 재난피해 문화재 응급복구 지원(문화재 돌봄사업단 이용)<br>3. 소관문화재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br>4. 상황판단회의 의사결정 지원 |
| <b>유형 문화재 대책반</b><br>반장 1<br>반원 1   |  | 1. 국보·보물 건조물, 동산문화재 등 소관문화재 재난 수습대책 및 복구 총괄<br>2. 소관문화재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br>3. 상황판단회의 의사결정 지원                       | 유형과  |
| <b>고도보존 대책반</b><br>반장 1<br>반원 1     |  | 1. 고도지역 등 소관문화재 재난 수습대책 및 복구 총괄<br>2. 소관문화재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br>3. 상황판단회의 의사결정 지원                                   | 고도과  |
| <b>근대 문화재 대책반</b><br>반장 1<br>반원 1   |  | 1. 국민, 등록문화재 등 소관문화재 재난 수습대책 및 복구 총괄<br>2. 재난피해 문화재 응급복구 지원<br>3. 소관문화재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br>4. 상황판단회의 의사결정 지원       | 근대과  |
| <b>천연 기념물 대책반</b><br>반장 1<br>반원 1   |  | 1. 천기, 명승 등 소관문화재 재난 수습대책 및 복구 총괄<br>2. 소관문화재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br>3. 상황판단회의 의사결정 지원                                 | 천기과  |
| <b>공·능 문화재 대책반</b><br>반장 1<br>반원 1  |  | 1. 공·능 등 소관문화재 재난 수습대책 및 복구 총괄<br>2. 재난피해 문화재 응급복구 지원(직영사업단 이용)<br>3. 소관문화재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br>4. 상황판단회의 의사결정 지원   | 복원과  |
| <b>매장 문화재 대책반</b><br>반장 1<br>반원 1   |  | 1. 매장 문화재, 발굴현장 등 재난 수습대책 및 복구 총괄<br>2. 소관문화재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br>3. 상황판단회의 의사결정 지원                                 | 발굴과  |
| <b>수리현장 문화재 대책반</b><br>반장 1<br>반원 1 | 1. 문화재 수리현장 재난 수습대책 및 복구 총괄<br>2. 소관문화재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br>3. 상황판단회의 의사결정 지원        | 수리과   |  |
| <b>언론대응반</b><br>반장 1<br>반원 1        | 1.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방송 상황 모니터링<br>2. 재난수습을 위한 보도 및 취재지원<br>3. 각종 보도자료 작성·배포 및 언론 브리핑 | 대변인   |  |

\* 분야별 대책반은 필요한 만큼 탄력적으로 구성·운영

#### 4) 현지조사단 구성·운영

- **구성기준** : 예상파고 1.0m 이상 발생 시 또는 문화재청 안전상황실에서 요청 시
- **현지조사단 구성도 및 편성기준**
  - **(단장)** 국립문화재연구소 안전방재연구실장  
\*재난 규모에 따라 조사단원으로만 현지조사단을 구성할 수 있음
  - **(반원)** 안전방재연구실 담당 연구관 및 연구사, 안전기준과 및 소관과 담당자,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구성·운영



- **임무·역할** : 지진 발생지역 내 주요 건조물 문화재 피해조사
  - 재난발생 및 피해원인, 문화재 점검결과, 현장대응사항 등 조사
  - 지진 및 지진해일로 인하여 발생한 주요 문화재 피해현황, 점검결과 등을 소관과, 안전상황실(안전기준과)에 신속 보고
  - 청장차장 등 주요간부 피해현장 방문 시 주요문화재 피해현황 브리핑
  - 필요시 계측장비를 활용한 점검 실시

## IV. 위기경보 수준별 조치사항

## IV. 위기경보 수준별 조치사항

### 1 관심 (“대비” 단계)

#### 가. 상황

한반도 주변 해역의 특정 지역에서 짧은 기간 동안 2회 이상 지진이 발생하여 상황관리 및 감시활동이 필요한 상황

#### 나. 조치사항

##### 1) 조치목록

- 가) 지진해일 내습시간, 파고, 예상 침수범위 등 확인
- 나) 지자체,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구축

##### 2) 조치내용

#### 가) 지진해일 내습시간, 파고, 예상 침수범위 등 확인

- 지진해일 발생 예측지역, 내습시간, 파고 및 침수범위 파악
- 지진해일정보(기상청), 지진해일대응시스템 분석결과(행안부) 등 참고

#### 나) 지자체,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구축

- 비상근무자 확인, 비상연락망 및 연락체계 점검

#### 다. 부서별 임무와 역할

| 부서      | 임무와 역할  |
|---------|---|
| 안전기준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진해일 관측자료를 바탕으로 지진 상황 모니터링</li> <li>•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 비상연락망 점검</li> </ul>     |
| 공능유적관리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별 재난 피해우려 점거 및 위험요인 제거</li> <li>• 현장별 유관기관 협조체계 점검 및 비상연락망 확인</li> </ul> |

### 2 주의 (“대비” 단계)

#### 가. 상황

한반도 주변 해역의 특정 지역에서 짧은 기간 동안 3회 이상 지진이 발생하여 상황관리 및 관련기관 협조가 필요한 상황

#### 나. 조치사항

##### 1) 조치목록

- 가) 지진해일 내습시간, 파고, 예상 침수범위 등 확인
- 나) 지자체,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구축
- 다) 피해예상지역 문화재 긴급 이운 및 응급보호 조치 지시(필요시)

##### 2) 조치내용

#### 가) 지진해일 내습시간, 파고, 예상 침수범위 등 확인

- 지진해일 발생 예측지역, 내습시간, 파고 및 침수범위 파악
- 지진해일정보(기상청), 지진해일대응시스템 분석결과(행안부) 등 참고

#### 나) 지자체,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구축

- 비상근무자 확인, 비상연락망 및 연락체계 점검

#### 다) 피해예상지역 문화재 긴급 이운 및 응급보호 조치(소속기관, 지자체)

- 부재 파손 및 유실 등 해일로 인한 문화재 훼손 최소화를 위해 장막 설치 등 응급보호책 실시(필요시)

#### 다. 부서별 임무와 역할

| 부서      | 임무와 역할  |
|---------|---|
| 안전기준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심단계 조치 계속 실행</li> <li>문화재 안전상황실 운영(필요시)</li> <li>자체점검 및 순찰활동 강화 요청</li> </ul>   |
| 공능유적관리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심단계 조치 계속 실행</li> <li>문화재 피해여부 확인 등 상시 예찰활동 추진</li> <li>지진해일 피해 예상 지역 응급보호 조치(필요시)</li> <li>비상근무조 운영(필요시)</li> <li>유관기관 협조체계 점검 및 비상연락망 확인</li> </ul> |

### 3 경계 (“대응” 단계)

#### 가. 상황

- 1) 기상청의 지진해일 주의보(예상파고 0.5~1.0m)가 발령된 경우
- 2) 지진해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되어 중앙정부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상황

#### 나. 조치사항

##### 1) 조치목록

##### 【내습 전·중 대응활동】

- 가) 지진해일 내습시간, 파고, 예상 침수범위 등 확인
- 나) 지자체,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구축
- 다) 피해예상지역 문화재 긴급 이운 및 응급보호 조치 지시(필요시)
- 라) 문화재청 안전상황실 운영

##### 【내습 후 대응활동(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되는 대응 활동)】

- 마) 문화재 지진해일 피해 및 대처상황에 대한 자료작성 및 언론보도 대응
- 바) 지진해일 피해지역 주요문화재 현지조사단 파견 및 피해조사(필요시)
- 사) 문화재 응급복구인력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필요시)
- 아) 2차 피해 방지대책 수립 및 지원(필요시)
- 자) 지진해일발생 지역 문화재 안전점검 실시

2) 조치내용

**【내습 전·중 대응활동】**

가) 지진해일 내습시간, 파고, 예상 침수범위 등 확인

- 지진해일 발생 예측지역, 내습시간, 파고 및 침수범위 파악
  - 지진해일정보(기상청), 지진해일대응시스템 분석결과(행안부) 등 참고
- 문화재 피해 발생 우려 시, 상황보고 실시
  - 보고대상 : 문화재청장, 차장, 정책국장, 안전기준과장
  - 보고내용 : 내습시간/예상파고/예상 침수범위/조치사항

나) 지자체,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구축

- 비상근무자 확인, 비상연락망 및 연락체계 점검

다) 피해예상지역 문화재 긴급 이운 및 응급보호 조치(소속기관, 지자체)

- 동산문화재 안전한 곳으로 이운(필요시)
- 부재 파손 및 유실 등 해일로 인한 문화재 훼손 최소화를 위해 장막 설치(필요시)

라) 문화재청 안전상황실 운영

- 비상근무자 소집 및 관리(필요시 담당부서 근무자 지원 요청)
- 지자체, 유관기관 대처상황 및 ‘비상대응 활동’ 모니터링
- 최초 상황판단회의 비상소집 실시(필요시 중수본 가동)

**【내습 후 대응활동(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되는 대응 활동)】**

마) 문화재 지진 해일 피해 및 대처상황에 대한 자료작성 및 언론보도 대응

- 안전상황실(상황반) 대처상황 보고서 작성

- 문화재 피해 및 대응상황에 대한 선제적인 보도자료 작성

바) 지진해일 발생지역 주요문화재 현지조사단 파견 및 피해조사

- 국립문화재연구소 안전방재연구실 현지조사단 구성
- 피해현장 인근의 지방 문화재연구소 인력지원 및 우선 투입(필요시)

사) 문화재 응급복구인력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필요시)

- 문화재 돌봄사업단, 문화재청 직영사업단 등 응급복구인력 지원
  - 응급복구 지원 대상 문화재, 투입인원, 인력지원 기간, 응급복구 지원 내용 등을 포함하여 계획수립

아) 2차 피해방지 대책 수립 및 지원(필요시)

- 도난, 유실 등으로 인한 2차 피해 방지대책 강구
- 파손부재 보호 및 관리 실시

자) 지진해일 발생 지역 문화재 안전점검 실시

- 지진해일 발생지역 국보·보물 등의 건조물 문화재 점검계획 수립
-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 점검반 편성(필요시)

다. 부서별 임무와 역할

| 부서    | 임무와 역할  |
|-------|---|
| 안전기준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심주의단계 조치 계속 실행</li> <li>• 문화재 안전상황실 운영</li> <li>• 재난상황 지속 파악 및 보고</li> <li>• 문화재 피해현황 파악 및 상황보고서 작성</li> <li>• 상황판단회의 개최 주관(필요시)</li> <li>• 긴급보수비 지원 검토(필요시)</li> </ul> |
| 대변인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언론보도 사항 모니터링 및 언론대응창구 일원화</li> <li>• 문화재 피해상황 브리핑 및 보도자료 배포</li> </ul>   |

| 부서   | 임무와 역할  |
|--|---|
| 소관부서<br>(보존정책과,<br>근대문화재과,<br>복원정비과,<br>유형문화재과,<br>천연기념물과,<br>고도보존육성과,<br>발굴제도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재 안전상황실 근무 지원</li> <li>• 지진해일 피해 문화재 안전점검 실시</li> <li>•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에 2차 피해방지 대책시행 등 협조 (필요시)</li> <li>• 소관 문화재 재난대책 수립·시행 및 복구를 위한 예산지원 (필요시)</li> </ul> |
| 수리기술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 문화재 복구 지원(기술지도 및 자문)</li> </ul>   |
| 국립문화재연구소<br>(안전방재연구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조사단 구성 운영 및 파견</li> </ul>  |
| 공능유적관리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심·주의 단계 조치 계속 실행</li> <li>• 문화재 재난피해 발생 시 긴급보수 및 복구활동 추진<br/>- 동산문화재 이동·보호 필요여부 확인 및 실시</li> </ul>  |

## 4 심각 [“대응” 단계]

### 가. 상황

- 1) 기상청의 지진해일 경보(예상파고 1.0m 이상)가 발령된 경우
- 2) 지진해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피해 확대가 예상되어 범정부적 대처가 필요한 상황

### 나. 조치사항

#### 1) 조치목록

##### 【내습 전·중 대응활동】

- 가) 지진해일 내습시간, 파고, 예상 침수범위 등 확인
- 나) 지자체,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구축
- 다) 피해예상지역 문화재 긴급 이운 및 응급보호 조치 지시(필요시)
- 라) 문화재청 안전상황실 운영
- 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파견 및 협력체계 구축

##### 【내습 후 대응활동(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되는 대응 활동)】

- 바) 문화재 지진해일 피해 및 대처상황에 대한 자료작성 및 언론보도 대응
- 사) 지진해일 발생지역 주요문화재 현지조사단 파견 및 피해조사
- 아) 문화재 응급복구인력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 자) 2차 피해 방지대책 수립 및 지원
- 차) 지진해일발생 지역 문화재 안전점검 실시

## 2) 조치내용

### 【내습 전·중 대응활동】

#### 가) 지진해일 내습시간, 파고, 예상 침수범위 등 확인

- 지진해일 발생 예측지역, 내습시간, 파고 및 침수범위 파악
  - 지진해일정보(기상청), 지진해일대응시스템 분석결과(행안부) 등 참고
- 문화재 피해 발생 우려 시, 상황보고 실시
  - 보고대상 : 문화재청장, 차장, 정책국장, 안전기준과장
  - 보고내용 : 내습시간/예상파고/예상 침수범위/조치사항

#### 나) 지자체,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구축

- 비상근무자 확인, 비상연락망 및 연락체계 점검

#### 다) 피해예상지역 문화재 긴급 이운 및 응급보호 조치(소속기관, 지자체)

- 동산문화재 안전한 곳으로 이운(필요시)
- 부재 파손 및 유실 등 해일로 인한 문화재 훼손 최소화를 위해 장막 설치

#### 라) 문화재청 안전상황실 운영

- 비상근무자 소집 및 관리(필요시 담당부서 근무자 지원 요청)
- 지자체, 유관기관 대처상황 및 '비상대응 활동' 모니터링
- 최초 상황판단회의 비상소집 실시(필요시 중수본 가동)

#### 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파견 및 협력체계 구축

- 비상근무자 소집 및 관리(담당부서 근무자 지원 요청)
- 지자체, 유관기관 대처상황 및 '비상대응 활동' 모니터링

### 【내습 후 대응활동(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되는 대응 활동)】

#### 바) 문화재 지진 해일 피해 및 대처상황에 대한 자료작성 및 언론보도 대응

- 안전상황실(상황반) 대처상황 보고서 작성
- 문화재 피해 및 대응상황에 대한 선제적인 보도자료 작성

#### 사) 지진해일 발생지역 주요문화재 현지조사단 파견 및 피해조사

- 국립문화재연구소 안전방재연구실 현지조사단 구성
- 피해현장 인근의 지방 문화재연구소 인력지원 및 우선 투입(필요시)

#### 아) 문화재 응급복구인력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 문화재 돌봄사업단, 문화재청 직영사업단 등 응급복구인력 지원
  - 응급복구 지원 대상 문화재, 투입인원, 인력지원 기간, 응급복구 지원 내용 등을 포함하여 계획수립

#### 자) 2차 피해방지 대책 수립 및 지원

- 도난, 유실 등으로 인한 2차 피해 방지대책 강구
- 파손부재 보호 및 관리 실시

#### 차) 지진해일 발생 지역 문화재 안전점검 실시

- 지진해일 발생지역 국보·보물 등의 건조물 문화재 점검계획 수립
-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 점검반 편성



다. 부서별 임무와 역할

| 부서   | 임무와 역할   |
|--|--|
| 안전기준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심·주의·경계 단계 조치 계속 실행</li> <li>• 재난상황 지속 파악 및 보고</li> <li>• 안전상황실(필요시 중앙사고소습본부)운영</li> <li>• 문화재 피해현황 파악 및 상황보고서 작성</li> <li>• 상황판단회의 개최 주관</li> <li>• 긴급보수비 지원 검토</li> </ul>  |
| 대변인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언론보도 사항 모니터링 및 언론대응창구 일원화</li> <li>• 문화재 피해상황 브리핑 및 보도자료 배포</li> </ul>  |
| 소관부서<br>(보존정책과,<br>근대문화재과,<br>복원정비과,<br>유형문화재과,<br>천연기념물과,<br>고도보존육성과,<br>발굴제도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상황실(필요시 중앙사고소습본부) 근무 지원</li> <li>•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파견 지원</li> <li>• 지진피해 문화재 안전점검 실시</li> <li>• 청장, 차장 등 주요간부 피해현장 방문 수행</li> <li>•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에 2차 피해방지 대책시행 등 협조</li> <li>• 소관 문화재 재난대책 수립·시행 및 복구를 위한 예산지원</li> </ul> |
| 수리기술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 문화재 복구 지원(기술지도 및 자문)</li> </ul>  |
| 국립문화재연구소<br>(안전방재연구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조사단 구성 운영 및 파견</li> <li>• 주요간부 피해현장 방문 시 주요문화재 피해 현황 브리핑</li> </ul>   |
| 공능유적관리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심·주의·경계 단계 조치 계속 실행</li> </ul>   |

## V. 재난상황별 조치내용 및 절차

# V. 재난상황별 조치내용 및 절차

## 1. 위기 상황

| 지진해일 발생상황  |  |
|--|--|
| 지진해일 특보 발표 후 지진해일 내습으로 인한 피해발생   |  |
| <b>&lt;재난상황&gt;</b>  |  |
| ○ 00월 00일 00시 00분 일본 서쪽 연안에서 규모 7.8의 해저지진이 발생하여 00시 00분 우리나라 동해안지역에 지진해일 내습  |  |
| ○ 우리나라 동해안 ○○시를 포함한 ○개 시·군에 ○~○m의 지진해일이 내습하여 해안 저지대 ○개 지역 침수(박물관 침수피해 발생)  |  |
| ○ 일부지역 전주 및 전력설비 피해발생으로 전기 공급이 불가하고, 통신 traffic의 급격한 증가로 통신이 일시적으로 마비  |  |
| <b>&lt;피해상황&gt;</b>  |  |
| ○ 인명피해 : 부상 ○명, 실종 ○명, 사망 ○명   |  |
| ○ 건물피해 : 건물붕괴 ○동, 부분파손 ○○동, 침수 ○○동   |  |
| ○ 문화재피해 : (상태별) ○○지역 ○○탑 상륜부 일부 소실 ○건,<br>○○지역 목조문화재 수손피해(벽체, 구조체 침수 등) ○건,<br>○○지역 ○○박물관 소장 동산문화재 소실 ○건<br>(유형별) 국가지정 ○건, 시도지정 등 ○건, 등록문화재 ○건 |  |
| <b>&lt;기 타&gt;</b>   |  |
| ○ 기상상태 : 약천후(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인해 2차 피해 발생 우려  |  |
| ○ 언론보도 내용 : 급작스러운 경보발령으로 인해 동해안 지역 주민들의 혼란 상태 야기   |  |

## 2. 조치 목록

| 구 분           | 조 치 사 항  | 조치부서           |
|---------------|--|----------------|
| 가. 초동대응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진해일 발생상황 접수 및 보고·전파</li> <li>2) 중대본(행정안전부), 기상청으로부터 지진해일 내습시간, 파고, 침수 범위 등 확인</li> <li>3) 지자체 및 유관기관 간 비상연락체계 구축</li> <li>4) 피해예상지역 문화재 긴급 이운 및 응급보호 요청</li> <li>5)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파견</li> </ol> | 상황반<br>(안전기준과) |
| 나. 대응조직 구성·운영 | 1) 상황판단회의 개최   | 상황반<br>(안전기준과) |
|               | 2) 문화재청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가동운영을 위한 비상소집  |                |
|               | 3) 문화재 피해현황 집계 및 상황보고서 작성  | 언론대응반<br>(대변인) |
|               | 4) 언론대응 및 모니터링   |                |
|               | 5) 현지조사단 구성·운영   |                |
| 다. 긴급대응 조치    | 1) 청·차장 등 주요간부 피해현장 방문 수행  | 상황반<br>(안전기준과) |
|               | 2) 문화재 응급복구인력 지원 계획수립 및 지원   |                |
|               | 3) 2차 피해 방지대책 수립 및 지원<br>○ 연계 재난으로 인한 2차 피해 방지대책 강구<br>○ 동산문화재 보호대책 수립(소실 문화재 조사, 도난방지, 수손 피해 응급복구 등)<br>○ 문화재 인근지역 폐기물 보호조치 요청  | 해당문화재 소관과      |
|               | 4) 지진해일발생 인근지역 건조물 문화재 안전점검 실시   |                |
| 라. 피해 복구활동    | 1)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참여 : 문화재 피해액 및 복구액 조사   | 해당문화재 소관과      |
|               | 2) 문화재 재난피해 복구계획 수립·시행 총괄  |                |
|               | 3) 피해문화재 복구현황 관리 및 모니터링  |                |

\* 재난상황은 수많은 변수가 있어 매뉴얼에서 규정한 것이 모두 정확한 것은 아니므로 융통성 있게 탄력적으로 대응한다.

### 3. 조치 내용

#### 가. 초동상황 대응

##### 1) 지진해일 발생상황 접수 및 보고·전파

- **상황접수** : 기상청으로부터 지진해일 발생상황 접수
  - 행정안전부, 기상청의 FAX, SMS, 핫라인, 웹사이트 등 주기적 확인
  - \* 기상청 지진통보시스템 이용(기상청에 등록 요청)

※ 지진해일 특보 발표기준 <지진업무지침 : 기상청>

- 지진해일 주의보 : 규모 6.0 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하여 우리나라 해안가에 지진해일 높이 0.5m 이상 1.0m 미만의 지진해일 내습이 예상되는 경우
- 지진해일 경보 : 규모 6.0 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하여 우리나라 해안가에 지진해일 높이 1.0m 이상의 지진해일 내습이 예상되는 경우

##### ○ 보고·전파 방법

- **(주간)** 담당사무관(안전기준과) → 안전기준과장, 문화재정책국장, 청장차장, BH, 문체부 동시보고
- **(야간)** 당직근무자 → 담당사무관(안전기준과), 안전기준과장, 운영지원과장, 청장·차장 동시보고

- \* 보고·전파 세부사항은 동 매뉴얼 115~116쪽 참조
- \* 지진발생시 통신 트래픽 증가로 통신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매체(유·무선, FAX, MMS 등)를 통하여 보고

##### 2) 지진해일 예상 침수범위 등 확인

- 지진해일 발생 예측지역, 내습시간, 파고 및 침수범위 파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기상청으로부터 예측 정보확인
  - \* 기상청 : 지진해일정보 / 행정안전부 : 지진해일대응시스템 분석결과

##### 3)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구축

- **지자체** : 지진피해 예상권역 내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시·군·구 문화재부서와 비상연락체계 구축
- **유관기관** : 재난수습에 필요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구축
- 현지조사단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중요문화재에 대한 피해상황 파악
  - \* 비상연락체계는 유·무선, FAX, 휴대폰 메신저 등 다양한 매체 활용

##### 4) 피해예상지역 문화재 긴급 이운 및 응급보호 조치 지시

- **(대상문화재)** 피해예상지역 내 **수손피해가 우려되는 문화재**
  - 동산문화재 : 지정문화재 중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금속, 도자기 등의 공예품과 같이 수손피해 우려문화재 위주로 긴급이운
  - 부동산문화재 : 목조건물 현판, 석탑의 상륜부, 석등 등
- **(응급보호조치)** 지진해일 피해예상지역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동산문화재 이운 또는 부동산 문화재 **응급보호 조치 요청**
  - 동산 문화재 : 건물 4~5층 높이의 안전한 곳으로 이운
    - \* 이운이 불가능한 경우 수손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장막 설치 등의 조치 실시
  - 부동산 문화재 : 부재 파손 및 유실, 토사 유실 등 해일로 인한 문화재 훼손 최소화를 위해 장막 설치 등 응급보호책 실시

##### 5)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파견 근무

- **(파견자)** 문화재청 직원 1명
- **(주요업무)** 중대본과 문화재청 상황실(안전기준과)간 협력체계 구축
  - 문화재 피해현황 공유 및 문화재 관련 언론보도 모니터링
  - 문화재 재난 수습에 필요한 협조사항 전달 및 건의
- **(근무자 편성)** 중대본 24시간 파견 근무를 위한 근무자 편성
  - 최초 근무자 : 안전기준과 직원 1명 비상근무 즉시 투입
  - 중대본 파견근무가 길어질 경우 문화재청 각 소관과로부터 비상근무 인력 각 2명씩 지원 요청 후 근무자 편성

#### 나. 대응조직 구성·운영

##### 1) 상황판단회의 개최

- **(목적)** 지진해일 재난의 위험수준, 진행상황, 확산정도 등을 판단하고 각 분야의 문화재 보호를 위한 대책마련
- **(주재)** 문화재청장 (부재 시 차장)
- **(참석대상)** 문화재청 차장, 문화재정책국장, 안전기준과장, 대변인, 해당

문화재 담당과장, 관련전문가 등

- **(회의내용)** ① 지진해일 침수예상 범위 및 피해위험 문화재 확인
- ② 지역별 지진해일 내습시각 및 예상과고 확인
- ③ 비상근무단계 결정 및 분야별 대책마련

## 2)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가동·운영

-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문화재청장, 부분부장은 문화재청 차장, 총괄담당관은 문화재정책국장으로 함
-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실무반 구성·운영
  - 지진해일재난으로 인한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구성·운영하되 각 실무반별 2명 비상소집

## 3) 피해현황 집계 및 상황보고서 작성

- **피해상황 파악 및 집계**
  - 사·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사·군·구 문화재담당부서, 문화재청 현지조사단에 문화재 피해상황 파악요청 (공문, 유무선 등 이용)
  - 중수본 상황반(안전기준과)은 문화재 피해현황을 총괄 집계하여 각 소관부서에 주기적으로 공유
- **피해현황 및 대처상황보고서 작성**
  - 피해현황, 응급복구인력 투입, 긴급보수비 지원 등 상황보고서 작성

## 4) 언론대응 및 모니터링

- 문화재 피해 및 대응상황에 대한 **선제적인 보도자료 작성**
  - 선제적인 보도자료 작성·홍보를 통해 부정적인 언론보도 최소화
  - \* 지진 발생 후 현지조사단, 지자체를 통해 파악된 피해현황 및 청·차원의 대처상황에 대하여 언론보도자료를 작성하여 배포 (지진발생 당일 배포)
  - 문화재 피해현황 및 대처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실시
  - \* 문화재 피해현황, 대처상황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보도자료 작성·배포
- 언론보도 모니터링 및 부정적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자료 작성

## 5) 현지조사단 구성·운영

- **(구성)** 국립문화재연구소 안전방재연구실 또는 피해현장 인근의 연구소 등
  - \* 현지조사단은 신속한 문화재 피해 등의 상황정보 파악을 위하여 탄력적으로 구성·운영 할 수 있음
- **(임무역할)** 국보 등의 주요 문화재 현장에 대한 육안 및 계측조사 실시
  - 주요 국가지정 문화재에 대한 육안 및 계측조사 실시·관련 보고서 작성
  - 육안 및 계측조사 내용을 상황반(안전기준과), 소관 과로 즉시 보고
  - 청장차장 등 주요간부 피해현장 방문 시 주요 문화재 피해현황 브리핑

## 다. 긴급대응조치

### 1) 청장·차장 등 주요간부 피해현장 방문 수행

- 청장·차장 등 주요간부 피해현장 방문계획 수립
  - 국보·보물 등의 주요 국가지정문화재 피해현장, 시·군·구 등의 재난안전대책본부 등 방문계획 수립
- 청장·차장 등 주요간부 피해현장 방문 수행(안전기준과장)
  - 문화재청장 피해현장방문 수행 및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건의 사항 수립

### 2) 문화재 응급복구인력 지원 계획수립 및 지원

- 문화재돌봄사업단(보존정책과, 문화재청 직영사업단(공능유적본부), 문화재수리가능한 협회수리기술과 등의 단체와 협의하여 **응급복구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 응급복구 지원 대상 문화재, 투입인원, 인력지원 기간, 응급복구 지원 내용 등을 포함하여 계획수립
- 응급복구 사업단 투입에 관한 세부사항 및 응급복구 진행상황은 해당 소관 과에서 조정·관리

### 3) 2차 피해 방지대책 수립 및 지원

- **연계재난으로 인한 2차 피해 방지대책** 시행요청(문화재청→시·군·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 지진해일 이후 태풍, 집중호우 등이 예상되는 경우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장막 설치 요청**, **위험현장은 출입금지 등의 통제선 설치 요청**

- 지진해일로 화재 및 감전사고 발생한 경우 가스 및 전기시설 차단 요청

○ 동산문화재 보호 및 응급복구대책 수립 (문화재청→시·군·구 지역재난안전 대책본부)

- **(수손피해 응급복구)** 수손피해를 입거나 피해 현장에서 수습한 동산문화재에 대하여 추가피해를 막기 위한 수손피해 응급복구 방법 수립 및 시행요청

\* 응급복구방법 수립 : 문화재청 / 시·도 및 시·군·구 : 응급복구 시행

- **(동산문화재 이운)** 지진해일로 동산문화재 소장처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가 없는 인근 박물관 저장고로 이운 및 임시보관 요청

○ 파손부재 및 문화재 인근지역 폐기물 보호조치 요청 (문화재청→시·군·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 **파손부재 및 소실 문화재**가 일반폐기물로 오인되어 폐기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폐기물처리 관련 부서 통보 및 **문화재표시 라벨 부착 요청**

\* 문화재 인근 폐기물의 경우 조사완료 전까지는 보호조치 요청

- 목재 등의 파손부재는 추가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문화재 현장 내 **임시 적치소 설치** 등의 방법으로 보호대책 강구 요청

**4) 지진해일 피해지역 문화재 안전점검 실시**(문화재청, 시·도 및 시·군·구)

○ **(문화재 점검)** 지진해일 피해지역 국보·보물 등의 건조물 문화재 점검 계획 수립 및 점검실시

- 점검대상, 점검기간, 점검반 편성, 점검표 등을 포함하여 작성

\* 동산문화재 피해 발생 시 동산문화재 피해조사반도 함께 편성하여 점검 실시

○ **(소실 문화재 조사)** ‘동산문화재 피해조사팀’ 을 구성하여 문화재 인근 재난피해로 인한 잔해물 조사 → 잔해물에 포함된 문화재 수습

\* 수습한 문화재는 응급복구 조치를 할 수 있는 장소로 이송하여 보존처리실시

○ 문화재 안전점검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반 편성

**라. 피해 복구활동**

**1)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참여 : 문화재 피해액 및 복구액 조사**

○ 중대본에서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재난피해조사단) 파견 요청이 오는 경우 ‘문화재청 재난피해조사팀’ 구성

- **(구성)** 안전과 1명, 문화재 소관과 각 1명으로 구성

\* 소관 국가지정 문화재가 피해를 입은 경우 소관과 직원 1명 참여

- **(역할)** ① 지진으로 인한 문화재 피해액 및 복구액 조사

② 국고보조금 지원이 필요한 피해문화재 및 지원액 확정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8조제3항

○ ‘문화재청 재난피해조사팀’ 은 조사결과를 상황반(안전기준과)으로 통보하여 문화재 피해액 및 복구액에 관한 사항 공유

**2) 재난복구계획 수립·시행 총괄**

○ 중대본 「재난피해복구계획」이 수립·시행되면 해당계획에 의거하여 「문화재 재난피해 복구계획」 수립·시행

- ‘문화재청 재난피해조사팀’ 의 조사결과에 따라 국고보조금 지원이 필요한 문화재 지원방법 결정 (긴급보수비 또는 총액보수비)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9조제1항

○ 「문화재 재난피해 복구계획」에 따라 긴급보수비, 총액보수비 지원

**3) 피해문화재 복구현황 관리 및 모니터링**

○ 피해문화재의 복구 추진현황 지속관리

- 지자체 문화재부서를 통해 피해문화재의 복구 추진현황을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현황 추적 관리

○ 피해문화재 중 복구 추진에 차질이 있는 문화재의 경우 국고보조금 지원 등 빠른 복구를 위한 지원대책 강구

#### 4. 부서별 임무 및 역할

| 구분                   | 임무 및 역할   |
|----------------------|---|
| 안 전 기 준 과            | <p><b>[상황총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상황 지속 파악 및 보고 : 안전기준과장, 정책국장, 차장, 청장</li> <li>○ 문화재 피해현황 집계 및 상황보고서 작성</li> </ul> <p><b>[대응조직 가동 운영·총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파견 근무 총괄 : 근무자 편성, 근무실시</li> <li>○ 상황판단회의 개최 주관</li> <li>○ 사·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에 2차 피해방지 등을 위한 대책시행 협조요청</li> <li>○ 지진발생 인근지역 문화재 안전점검 총괄</li> <li>○ 청·차장 등 주요간부 피해현장 방문 수행</li> </ul> |
| 운 영 지 원 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야간 상황 유지(당직실) : 지자체 상황실로부터 상황접수</li> <li>○ 야간 비상상황 발생 시 안전기준과장과 안전기준과 직원에 관련 내용 통보 및 비상소집</li> </ul>   |
| 소 관 부 서<br>(공 통 사 항) | <p><b>[대응조치 지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파견 근무 지원</li> <li>○ 지진해일 발생 인근지역 문화재 안전점검 지원</li> </ul> <p><b>[소관 문화재 복구 총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참여 지원</li> <li>○ 소관 문화재 재난대책 수립·시행 및 복구를 위한 예산지원</li> </ul>  |
| 보 존 정 책 과            | ○ 응급복구 지원 : 전국 문화재돌봄단체 이용   |
| 근대문화재과               |   |
| 궁능유적본부<br>(복원정비과)    | ○ 응급복구 지원 : 직영사업단 이용  |
| 유형문화재과               | ○ 동산문화재 긴급보호대책(수손피해, 소실 동산문화재 조사 등) 총괄  |
| 천연기념물과               |   |
| 고도보존육성과              | ○ 고도지역 한옥 피해 복구 지원  |
| 발굴제도과                | ○ 매장문화재 피해현황 파악 및 점검  |
| 수리기술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진해일피해 인근지역 문화재 수리현장 피해현황 파악 및 점검</li> <li>○ 응급복구 지원 : 수리기능인협회 자원봉사 요청</li> <li>○ 피해 문화재 복구현장 기술지도 및 지원</li> </ul>   |
| 대 변 인                | <p><b>[언론대응 총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언론보도사항 모니터링 및 언론대응창구 일원화</li> <li>○ 문화재 피해상황 브리핑 및 신속한 보도자료 배포</li> <li>○ 부정적인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자료 작성</li> </ul>   |

| 구분                               | 임무 및 역할  |
|----------------------------------|--|
| 국립문화재연구소<br>(안전방재연구실 또는 지역별 연구소) | <p><b>[현지조사 총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진해일 피해 현장 주요 문화재 현지조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계전문가, 관계직원 2-4명으로 구성된 조사단 현지파견</li> <li>- 육안점검 또는 계측조사를 통한 조사 실시 및 결과 공유</li> </ul> </li> <li>○ 청장·차장 등 주요간부 피해현장 방문 시 주요 문화재 피해현황 브리핑</li> </ul> |
| 보존과학센터                           | <p><b>[문화재 보존처리 지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진해일 피해 동산문화재 보존처리</li> <li>○ 필요시 현장조사 실시</li> </ul>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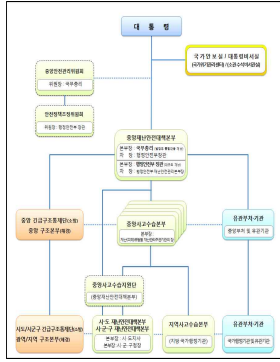
## 기관대응수칙

기관대응수칙은 매뉴얼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재난유형별 주요 단계에서 지휘부와 핵심 대응부서가  
판단하고 조치할 행동절차를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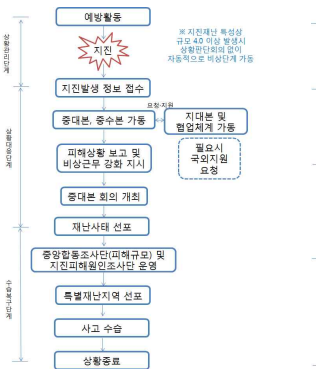


## 1 재난관리 체계도 및 절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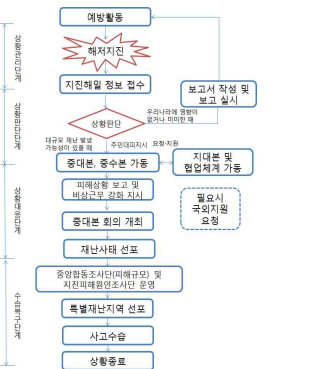
<재난관리 체계도>



<지진>



<지진해일>



## 2 문화재청 지진재난 위기대응 프로세스

재난상황은 수많은 변수가 있어 매뉴얼에서 규정한 것이 모두 정확한 것은 아니므로 융통성 있게 탄력적으로 대응한다.

| 구분       | 재난 발생 단계<br>(상황접수 및 보고전파)   | 초기대응 및 안전상황실 운영 단계   |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단계<br>(중대본 운영: 행정안전부)  | 수습·복구 단계   |
|----------|---|--|---|--|
| 초기 대응 부서 | <b>상황접수 및 보고전파</b><br>• 지진재난 발생 상황접수: 기상청 지진통보시스템<br>• 재난상황 보고: 당당치 → 문화재정책과장, 청장·차장(동시보고)<br>* 규모 3.1이상 지진 발생 시(지진해일 예상파고 0.5 이상) 상황보고<br>• 피해현황 확인요청: 안전상황실 → 지진발생지역 지자체 문화재 담당부서 및 재난대책본부<br><b>문화재 안전상황실 운영 준비</b><br>• 문화재 안전상황실 운영을 위한 필수인력 비상소집<br>• 중대본 요청시 '중대본 상황실' 파견근무 투입 | <b>문화재 안전상황실 운영</b><br>• 추가 재난상황 정보수집·전파, 피해현황 점검<br>• 대처상황보고서 작성 및 진행상황 보고<br>• 현지조사단 구성·운영 요청 및 연락체계 구축<br>• 상황판단회의(위기평가회의) 소집 및 개최<br>• 추가 재난상황 파악 및 소관 문화재 피해현황 파악<br>- 피해현황 및 조치사항 등 파악<br>• 재난 수습을 위한 대책 수립 및 시행<br>-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한 지원방안 수립<br>- 문화재물품사업단, 직영사업단 등을 이용한 응급 복구계획 수립<br>• 상황판단회의(위기평가회의) 참석 및 지원<br>- 회의결과에 따른 대책 시행 및 비상근무 실시 | • 피해 및 대처상황 모니터링 및 피해현황 점검<br>• 대처상황보고서 작성 및 진행상황 보고<br>•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br>- 중대본 협조요청사항(중대본 및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파견 요청 등) 총괄 조정<br>- 문화재청장 현장 방문 수행 등<br>• 문화재 피해현황 및 응급복구현황 지속 모니터링<br>• 재난 수습을 위한 대책 지속 실시<br>- 문화재물품사업단, 직영사업단 등을 이용한 소관 문화재 응급복구 지속실시<br>• 지진발생 지역 인근 소관 문화재 점검<br>• 중대본 파견근무 지원 | • 피해 복구상황 모니터링 (계속)<br>• 지진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수립<br>• 피해 신속복구를 위한 긴급보수비 지원  |
|          | <b>초기 재난 및 피해상황 파악</b><br>- 재난상황, 문화재 피해현황, 대응 조치 등 파악<br>• 안전기준과 요청시 비상근무자 편성 및 근무자 비상응소   | <b>상황판단회의(위기평가회의) 주재</b><br>• 피해현황, 대응상황, 향후조치계획 등 확인<br>• 각 소관부서별 비상근무 여부 및 수습 결정<br>• 지대본 지원 필요사항 확인<br>- 문화재청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 검토<br>• 2차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총력대응 지시  | <b>중앙사고수습본부 지휘</b><br>•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및 총괄 지휘<br>- 사고수습대책회의 주재<br>-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응급복구 및 안전점검 등 지시<br>-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지시<br><b>지진피해 문화재 현장방문</b><br>• 지진발생지역 지대본 및 주요 피해 문화재 현장 방문<br>• VIP, 국무총리 등 주요 인사 현장방문 시 수행  | <b>피해수습을 위한 지원 지시</b><br>• 피해현황 조사 및 복구 지원지시<br>- 피해 복구계획 및 예산지원 등 사후대책 수립 지시<br>- (사고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 지시)<br>• (필요시) 현장방문 및 수습상황 점검<br>• (필요시)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
| 청장·차장    | <b>초기상황 확인</b><br>• 문화재 피해현황 및 현장 조치사항 파악(안전기준과 보고)<br>• (필요시) 관계 기관장·지자체장 등과 유선통화료 현장상황 파악 및 협조사항 요청<br><b>조치사항 지시</b><br>• 긴급조치사항 지시<br>- 문화재 피해현황 신속 파악<br>- 인명피해 및 문화재 피해 최소화 방안 강구<br>- 2차 피해 확산방지 대책 강구   | • 지대본 조치내용 및 지원 필요사항 확인<br>• 상황에 따라 청장·차장 대행, 상황판단회의 주재<br>• 청장·차장 지시사항 이행 및 관리  | •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및 총괄 지휘<br>• 청장·차장 피해현황 방문 시 수행<br>• 청장·차장 지시사항 이행 및 관리 (계속)  | • 피해현황 조사 및 복구 지원지시<br>• (필요시) 현장방문 및 수습상황 점검<br>• (필요시)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
| 총괄담당관    | • 초기상황 확인: 사고원인 및 피해규모 등(안전기준과 보고)<br>• 안전상황실에 긴급조치 및 대응 지시<br>- 안전상황실 비상근무 실시 및 긴급조치사항 지시<br>- 청장·차장 지시사항 이행 등   | • 선제적인 보도자료 작성·배포<br>- 문화재 피해현황 및 조치사항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br>• 언론 모니터링 및 오보 대응  | • 단계별 수습상황 브리핑 및 보도자료 배포<br>• 언론 모니터링 및 오보 대응<br>• (필요시) 대국민 답변은 작성   | • 청장·차장 피해현황 방문 시 수행<br>• 응급복구 등 수습상황 점검<br>• 문화재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 대책 마련 지시  |
| 대변인      | • 재난상황 및 문화재 피해현황 확인<br>- 안전기준과로부터 문화재 피해현황 파악<br>• 언론 모니터링 및 보도자료 작성 준비  | • 선제적인 보도자료 작성·배포<br>- 문화재 피해현황 및 조치사항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br>• 언론 모니터링 및 오보 대응  | • 단계별 수습상황 브리핑 및 보도자료 배포<br>• 언론 모니터링 및 오보 대응<br>• (필요시) 대국민 답변은 작성   | • (필요시) 청장 브리핑 및 인터뷰 준비<br>• 단계별 수습상황 브리핑 및 보도자료 배포<br>• 언론 모니터링 및 오보 대응<br>- 오보에 대해 적극대응으로 혼란 방지  |

### 3 문화재청 부서별 협업기능(지진재난)

| 기능             | ① 재난상황관리  | ② 긴급생활안정지원  | ③ 시설 피해의 응급복구   | ④ 재난관리 자원지원   | ⑤ 재난현장 환경정비  | ⑥ 자원봉사관리 지원 및 관리   | ⑦ 재난수습홍보   |
|----------------|---|---|---|---|--|--|--|
| 주관부서<br>(별도부서) | 안전기준과   | 안전기준과<br>(기획재정담당관)  | 소관부서<br>(안전기준과, 기획재정담당관,<br>수리기술과, 보존정책과,<br>유형문화재과, 근대문화재과,<br>천연기념물과, 공능유적본부 등)   | 안전기준과<br>(운영지원과)  | 안전기준과<br>(수리기술과, 공능유적본부 등)   | 안전기준과<br>(수리기술과, 보존정책과,<br>공능유적본부 등)   | 대법인  |
| 연계부처           | 지자체, 행정안전부, 소방청 등   |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  | 국토부, 농식품부, 교육부,<br>해수부, 산림청 등   | 행안부, 국방부, 조달청 등   | 환경부, 해수부 등   | 행정안전부 등  | 방통위, 지자체 등   |
| 주요업무           | <p>&lt;다수기관 재난관리활동 총괄·조정&gt;<br/>- 사망사고 등 인명피해 시 중수본 가동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난 발생 접수 및 진행상황 파악</li> <li>초기 대응 및 상황보고·전파 (BH, 총리실, 청·차장 등)</li> <li>피해지역 문화재 피해실태 파악 및 대처</li> <li>직권 비상소집 및 상황판단 회의 개최 준비</li> <li>위기단계별 대응반 인원편성 및 운영지원(필요시)</li> <li>자체 상황판단회의 개최</li> <li>회의 결과에 따른 중앙사고 수습본부 설치</li> <li>지역사고수습본부 대응태세 점검 및 협조요청</li> <li>중대본(행정안전부) 가동 시 지원업무 총괄</li> <li>인명 및 문화재 피해 최소화를 위한 중수본 긴급 특별지시</li> <li>대처상황 총괄 보고서 작성, 신속한 보고 및 전파</li> <li>인명 및 문화재 피해 현황 총괄 관리 등</li> </ul> | <p>&lt;재난발생지역 이재민 구호, 세제·금융지원 등 생활안정지원&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재민 발생 파악·관리</li> <li>임시 주거시설 및 재해구호물자 지원</li> <li>행·재정적 지원 검토 (특별교부세 등)</li> </ul> | <p>&lt;피해시설 응급복구&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재 안전여부 및 피해상황 파악 및 응급복구 지원</li> <li>피해복구계획 수립 지원</li> <li>소관부서별 피해시설 응급복구 - 피해 복구비 지원요청 시 국고보조 여부 검토</li> <li>재난발생 및 피해지역 응급 복구 장비·인력·자재 지원</li> <li>응급복구 추진상황 관리·점검</li> </ul> | <p>&lt;재난으로 인한 재난자원 지원 총괄·조정&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응급의료 자재·인력·장비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가동</li> <li>긴급 구매물품 조달 협조 (운영지원과 협조)</li> <li>재난 복구용 증장비 등 재난 관리자원 동원</li> <li>군 인력·장비 지원을 위한 국방부 협력체계 가동</li> <li>긴급상황 및 교통두절 지역 산림항공 헬기 지원</li> </ul> | <p>&lt;재난현장쓰레기·환경 오염물질 처리 등&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피해 문화재 주변정리 및 손상 부재, 파편 수습</li> <li>문화재표시 라벨 부착 조치</li> <li>쓰레기, 환경오염 물질 발생 및 처리 현황 파악·관리</li> <li>집게차, 폐기물 운반차량 등 장비 동원 등</li> </ul> | <p>&lt;자원봉사자 동원 및 배정, 기술인력 지원 등&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원봉사자 모집</li> <li>자원봉사활동 가능 분류·배치</li> <li>자원봉사자 투입현황 파악 및 관리</li> <li>자원봉사자 안전관리 및 급식지원</li> <li>인간자원봉사 장비·인력지원 요청 및 관리</li> </ul> | <p>&lt;문화재 재난 대응 언론·대국민 홍보 등 재난정보체계 운영&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국민 행동요령 및 주의 사항 등 홍보</li> <li>재난방송 및 보도자료 작성·배포 (중대본부 가동 및 대응상황, 위기경보 발령사항 등)</li> <li>언론브리핑 및 정부합동 담화문 발표</li> <li>지상파 방송, 지역 방송사에 자막 방송 요청</li> <li>오보 및 유언비어 대응</li> </ul> |

### 4 지진대응 관계기관 주요 임무

| 부처        | 주요 임무  |   |   |
|-----------|--|---|---|
|           | 사전대비   | 초동조치  | 중수본·중대본   |
| 행정안전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진, 지진해일 재해 예방을 위한 각종 제도개선 추진</li> <li>지진, 지진해일 재난 피해 예측 및 대응 관련 기술 개발</li> <li>지진, 지진해일 매뉴얼 관리·운영 및 점검 개선 등</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진, 지진해일 발생에 따른 상황 파악 및 피해 예측 등 종합분석 및 대응</li> <li>지진, 지진해일 관련 상황판단회의 운영</li> <li>지진, 지진해일 발생 재난방송 실시 요청 등</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관기관 장에게 행정·재정상 조치 및 협조 요청</li> <li>각 사고수습본부와 유기적 협조체계 유지</li> </ul>   |
| 국방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진, 지진해일 발생시 지원가능 인력장비 현황 파악</li> <li>소관분야 시설물에 대한 대비태세 확인·점검</li> <li>유관기관간의 비상연락망 등 공조체계 확인·점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군장비 활용, 응급조치 실시 및 피해현황·지원현황 파악</li> <li>인명구조 및 후송, 경계·작전 등에 관한 사항 검토</li> <li>지진재난 수습을 위한 인력 장비 지원</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진, 지진해일 재난 수습을 위한 인력 장비 지원</li> <li>비상장비근무 실시</li> <li>군병력 지원</li> </ul>  |
| 교육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초·중·고교 지진, 지진해일 발생시 행동요령 교육</li> <li>소관분야 시설물에 대한 대비태세 확인·점검</li> <li>유관기관간의 비상연락망 등 공조체계 확인·점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 피해시설 피해현황 파악 및 응급조치</li> <li>학생·교직원 대피를 위한 연락 및 보호자 연계시스템 가동</li> <li>이재민 수습을 위한 학교시설물 점검 및 확인 지시</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시 휴교 및 지진발생지역 특별교육대책 수립시행</li> <li>학교 피해시설 피해현황 파악 및 복구조치</li> <li>학교 및 교육기관을 이용한 이재민 장기수용 협조</li> </ul>  |
| 원자력 안전위원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자력발전소 및 연구용 원자로 내진대책 수립</li> <li>소관분야 시설물에 대한 대비태세 확인·점검</li> <li>유관기관간의 비상연락망 등 공조체계 확인·점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자력발전소 및 연구용 원자로 안전점검 실시</li> <li>원전시설 피해시 피해 확인 및 응급복구 실시</li> <li>방사선비상(백색) 발령 및 상황 전파</li> <li>원전 피해 확산 방지 대책 강구 및 시행</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기경중 변화양상 모니터링, 연합정보센터 대응활동 지원</li> <li>방사능 재난 총괄 조정 및 현장대응 활동 지휘·통제 (정책발령 →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현장지휘센터)</li> <li>국가 환경 방사능 감시체계 운영</li> <li>원전 피해 확산 방지 대책 강구 및 시행</li> </ul> |
| 문화체육 관광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관분야 시설물에 대한 대비태세 확인·점검</li> <li>유관기관간의 비상연락망 등 공조체계 확인·점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체육·관광 등 소관시설 피해 확인 및 응급복구 실시</li> <li>가용매체 활용 국민행동요령 홍보</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부의 지진, 지진해일 재난 대응 및 복구활동 홍보 지원</li> <li>비상홍보상황실 운영</li> </ul>   |
| 농림축산 식품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관분야 시설물에 대한 대비태세 확인·점검</li> <li>유관기관간의 비상연락망 등 공조체계 확인·점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축산물 방역 등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li> <li>피해 농업기반시설물에 대한 응급조치</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축산물 방역 등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li> <li>농업시설물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지원</li> </ul>  |
| 산업통상 자원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관분야 시설물에 대한 대비태세 확인·점검</li> <li>라이프라인 조기 복구를 위한 유관기관간의 비상연락망 등 공조 체계 확인·점검</li> <li>긴급에너지 지원 계획 수립</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긴급에너지 지원 실시</li> <li>전력설비, 가스설비, 석유설비 등의 피해상황 파악 및 긴급복구 지원</li> <li>국가기간시설에 대한 전력 응급복구 지원</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재민 수용시설에 대한 전력, 가스 등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안전점검 등 지원</li> <li>사고 현장 수습활동 지원 및 전문인력 등 기술지원</li> </ul>  |
| 고용노동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관분야 시설물에 대한 대비태세 확인·점검</li> <li>유관기관간의 비상연락망 등 공조체계 확인·점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응 조직 운영, 작업중지 및 근로자 대피</li> <li>해안가 대형 사업장 점검 실시 및 작업인원 대피</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고조사반 운영 및 피해사업장 복구 기술지원</li> <li>재난으로 소실된 안전보건시설 파악 및 복구비용 지원</li> <li>신속한 산재요양 서비스 지원</li> <li>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등 피해사업장 자금부담 경감</li> </ul>                              |
| 환경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관분야 시설물에 대한 대비태세 확인·점검</li> <li>유관기관간의 비상연락망 등 공조체계 확인·점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피해지역 비상급수 및 하수처리 대책 마련</li> <li>상하수도 피해시설물, 매립지 등 폐기물처리시설 응급복구 지원</li> <li>화학사고 발생시 조치 및 대응</li> <li>국립공원 탐방계 단계별 통제 등 조치</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피해지역에 대한 비상급수 및 하수처리 대책</li> <li>이재민 수용시설에 대한 식용수 및 하수처리계획</li> <li>육상 환경오염물질 상황 및 처리 실태 관리</li> <li>사고 현장 수습활동 지원 및 전문인력 등 기술지원</li> </ul>                            |
| 국토교통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관분야 시설물에 대한 대비태세 확인·점검</li> <li>유관기관간의 비상연락망 등 공조체계 확인·점검</li> <li>내진설계기준에 의한 내진성능 평가·보강 추진</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긴급수송용 교통수단 및 사고수습 증장비 지원</li> <li>도로,철도,비행장,공동구,담 등 소관 주요 시설물 피해 응급 복구</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로, 철도, 공항, 댐 등 소관 주요 시설물 피해 응급 복구</li> <li>긴급수송용 교통수단·사고수습 증장비 지원</li> <li>철도역사 등 소관시설 건축물 피해시 출입통제</li> </ul>  |

| 부처        | 주요 임무   |  |  |
|-----------|---|--|--|
|           | 사전대비  | 초동조치   | 중수본·중대본  |
| 해양수산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산시설 피해 최소화를 위한 관리요령 홍보</li> <li>수산 중·양식시설, 어항시설 사전점검 실시</li> <li>소관분야 시설물에 대한 대비태세 확인·점검</li> <li>유관기관간의 비상연락망 등 공조체계 확인·점검</li> <li>긴급 의료지원 준비태세 확립</li> <li>소관분야 시설물에 대한 대비태세 확인·점검</li> <li>유관기관간의 비상연락망 등 공조체계 확인·점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항만 등 대규모 주요 시설물 피해에 대한 응급 복구</li> <li>재난발생지역 해상 통제상황 파악 및 긴급수송 지원</li> <li>항만동정 파악, 선박대피 및 선박 입출항 통제 등 유도</li> <li>유조선에 의한 유류사고 발생시 국제기구(OPC Fund)에 통보</li> <li>사상자 및 부상자의 응급의료 지원체계의 신속 가동</li> <li>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원</li> <li>소관분야의 각종 시설물에 대한 피해상황 파악 및 지원</li> <li>긴급방송 요청</li> <li>여건 발생 등 지진상황의 관측·분석 및 신속 전파</li> <li>지진해일 상황의 관측·분석 및 신속 전파</li> <li>대국민 유감지진 신고자료 수집·정리</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안 복구사업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지원</li> <li>해상 환경오염물질 상황 및 처리 실태 관리</li> <li>피해 항만시설 대개 인접항만 지정 운영</li> <li>수산 관련 의료·복구·보상업무 지원</li> <li>협약의 안정적 공급</li> <li>수인성 감염병 관리 지원</li> <li>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원</li> </ul> |
| 보건복지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관분야 시설물에 대한 대비태세 확인·점검</li> <li>유관기관간의 비상연락망 등 공조체계 확인·점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명구조를 위한 인력 및 장비의 동원</li> <li>실종자 수색 및 사망자 신원 확인</li> <li>재해현장 교통통제 및 각종 치안유지 활동 등</li> <li>재난지역에 대한 현장통제</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n-off Line 상 유연비처 차단</li> <li>사상자 후송병원 주변 교통관리 및 응급환자 후송 시 에스코트 지원</li> <li>이재민 구호소 치안 관리</li> </ul>   |
| 기상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진, 지진해일 등 관련정보 제공</li> <li>소관분야 시설물에 대한 대비태세 확인·점검</li> <li>유관기관간의 비상연락망 등 공조체계 확인·점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불진화 및 산사태 대응에 대한 조치 시행</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불·산사태원인조사단 긴급 구성·운영</li> </ul>   |
| 산림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관분야 시설물에 대한 대비태세 확인·점검</li> <li>유관기관간의 비상연락망 등 공조체계 확인·점검</li> <li>지진해일 대비 해안방재림 조성</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관분야 시설물에 대한 대비태세 확인·점검</li> <li>유관기관간의 비상연락망 등 공조체계 확인·점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관분야 시설물에 대한 대비태세 확인·점검</li> <li>유관기관간의 비상연락망 등 공조체계 확인·점검</li> </ul>   |
| 경찰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관분야 시설물에 대한 대비태세 확인·점검</li> <li>유관기관간의 비상연락망 등 공조체계 확인·점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재 피해 현황 파악 및 응급조치 실시요청</li> <li>주요 문화재 피해조사를 위한 현지조사단 파견</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정 및 등특문화재 지진재난대책 총괄 및 조정</li> <li>지진, 지진해일 재난 피해 문화재 긴급 보수비용 지원</li> <li>문화재 2차피해 방지를 위한 문화재 안전점검</li> <li>등산문화재 도난방지 및 안전대책 강구</li> </ul>   |
| 문화재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관분야 시설물에 대한 대비태세 확인·점검</li> <li>유관기관간의 비상연락망 등 공조체계 확인·점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방송재난대책지원반 설치 운영</li> <li>재해상황 및 수습상황 신속전파(TV, 라디오)</li> <li>방송시설 피해상황 파악 및 응급조치 지원</li> <li>재난방송 실시(국민행동 요령 안내 등)</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해상황 및 수습상황 신속전파 지원(TV, 라디오)</li> <li>재난방송 실시(국민행동 요령 안내 등)</li> </ul>  |
| 방송통신위원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관분야 시설물에 대한 대비태세 확인·점검</li> <li>유관기관간의 비상연락망 등 공조체계 확인·점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요 통신시설의 보호 및 긴급 복구</li> <li>유료방송사의 방송 시설 보호 및 복구</li> <li>재난방송 실시(국민행동 요령 안내 등)</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요 통신시설의 보호 및 긴급 복구</li> <li>유료방송사의 방송 시설 보호 및 복구</li> <li>재난방송 실시(국민행동 요령 안내 등)</li> </ul>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관 정보통신분야 피해 예방 조치</li> <li>소관분야 시설물에 대한 대비태세 확인·점검</li> <li>유관기관간의 비상연락망 등 공조체계 확인·점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요 시설물 보호 및 지원 기관의 협력체계 가동</li> <li>현장응급의료소 운영 지원</li> <li>위험물 사고에 대한 긴급안전점검 조치</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등단 구성·운영 및 지원(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지원)</li> <li>구조·구급업무 및 행거지원</li> <li>재난현장 구급지원 동원·응급조치</li> </ul>   |
| 소방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관분야 시설물에 대한 대비태세 확인·점검</li> <li>유관기관간의 비상연락망 등 공조체계 확인·점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상교통문자방송 및 가용 통신장비 활용 조업·항행 선박 긴급대피 조치</li> <li>해양오염 방제 활동 및 방제지원 지원</li> <li>경비합정·항공기 등 구조세력 동원 인명구조 실시</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양 수색 구조·구급 지휘·통제</li> <li>중앙구조본부 구성·운영 및 광역·지역 구조본부 조정·통제·지원</li> <li>중앙해양특수구조단 등 파견·운영</li> </ul>   |
| 해양경찰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관분야 시설물에 대한 대비태세 확인·점검</li> <li>유관기관간의 비상연락망 등 공조체계 확인·점검</li> </ul>  |  |  |

## 5 비상연락망

###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 기관        | 부서             | 연락처               |
|-----------|----------------|-------------------|
| 경와대       | 국가안보실          | 02)770-2335       |
|           | 국가위기상황센터       | 02)770-2300       |
| 국무조정실     | 안전환경정책관실       | 044)200-2343      |
|           | 지진방재정책과        | 044)205-5180-5189 |
| 행정안전부     | 지진방재관리과        | 044)205-5190-5197 |
|           | 중앙재난안전상황실      | 044)205-1540-1542 |
|           | 비상안전기획관        | 044)215-2689      |
| 기획재정부     | 비상안전담당관        | 044)203-6189      |
|           | 교육시설과          | 044)203-6183      |
|           | 학교안전총괄과        | 044)203-6893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비상안전기획관        | 02)2110-2167      |
|           | 통신자원정책과        | 02)2110-1944      |
| 외교부       | 해외안전지킴센터       | 02)2100-8566      |
|           | 재외국민보호과        | 02)2100-7580      |
|           | 재외국민안전과        | 02)2100-8210      |
|           | 다자협력인도지원과      | 02)2100-8364      |
| 통일부       | 비상계획담당관        | 02)2100-7213      |
|           | 개발지원협력과        | 02)2100-5931      |
| 국방부       | 군수기획관과         | 02)748-5718       |
|           | 재난관리지원과        | 02)748-5764       |
|           | 합참상황실          | 02)748-0300-4     |
|           | 공군본부통제실        | 042)552-6644      |
| 문화체육관광부   | 비상안전기획관실       | 044)203-2290      |
| 농림축산식품부   | 비상안전기획관        | 044)201-1474      |
|           | 농업기반과          | 044)201-1853      |
|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재난담당관        | 044)203-5581-6    |
| 보건복지부     | 비상안전기획관        | 044)202-2654      |
|           | 비상안전담당관실       | 044)201-6493      |
| 환경부       | 수도정책과          | 044)201-7115      |
|           | 공원생태과          | 044)201-7319      |
|           | 하천계획과(수문)      | 044)201-3618      |
| 과토교에피     | 철도안전정책과        | 044)201-4617      |
|           | 첨단도로운전과        | 044)201-3923      |
|           | 공항안전정책과        | 044)201-4349      |
|           | 시설안전과          | 044)201-3578      |
|           | 항공정보통신센터       | 032)740-2261-3    |
|           | 항공정보실(국내선, 김포) | 02)2660-2145-6    |
|           | 비상안전기획관실       | 044)201-4820      |
| 해양수산부     | 항만기술안전과(총괄)    | 044)200-5955-56   |
|           | 중합상황실(상황)      | 044)200-5896      |
|           | 항만기술안전과(항만)    | 044)200-5955-56   |
|           | 어촌어항과(어항)      | 044)200-5656      |
|           | 해양환경정책과(오염)    | 044)200-5293      |
|           | 해사안전정책과(선박)    | 044)200-5819      |
| 경찰청       | 항만운영과(물류)      | 044)200-5780      |
|           | 어촌양식정책과(수산)    | 044)200-5617      |
|           | 치안상황실          | 02)3150-1234      |
| 위기관리센터    | 02)3150-2856   |                   |

| 기 관             | 부 서                                       | 연 락 처  |
|-----------------|---|--|
| 기 상 청           | 지진화산감시과<br>지진화산정책과<br>항공기상청 관측예보과         | 02)2181-0794,5<br>02)2181-0762~9<br>032)740-2811~2                   |
| 문 화 재 청         | 안전기준과<br>당직실                              | 042)481-4822<br>042)481-4651   |
| 산 림 청           | 산사태방지과<br>산불방지과                           | 042)481-4274<br>042)481-4258   |
| 조 달 청           | 비상기획실                                     | 042)481-7041   |
| 소 방 청           | 119구조과<br>119구급과<br>119종합상황실<br>중앙119구조본부 | 044-205-7625<br>044-205-7632<br>044-205-1119<br>053-712-1000         |
| 해 양 경 찰 청       | 수색구조과<br>해양교통관제과<br>기동방제과                 | 044-205-2245<br>044-205-2286<br>044-205-2295                         |
| 원 자 력 안 전 위 원 회 | 원자력안전과<br>방사선안전과<br>방재환경과<br>원자력통제과       | 02)397-7285, 7287<br>02)397-7331<br>02)397-7359<br>02)397-7376       |
| 방 송 통 신 위 원 회   | 창조기획담당관<br>지상파방송정책과                       | 02)2110-1314<br>02)2110-1429   |
|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처 |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 043)719-1723   |
| 한 국 철 도 공 사     | 상황실(관제운영실)<br>철도교통관제센터<br>투목시설처<br>안전관리처  | 042)615-4800<br>02)2027-7108<br>042)615-4508<br>042)615-4182         |
| 한 국 전 력 공 사     | 재난관리부<br>계통운영부<br>배전계통부<br>종합상황실          | 061)345-4390~4<br>061)345-4710~5<br>061)345-4820~4<br>061)345-8622~5 |
| 한 국 수 자 원 공 사   | 통합물관리처<br>물관리ICT팀                         | 042)629-3502<br>042)629-3522   |
| 한 국 도 로 공 사     | 도로처<br>재난안전처                              | 054)811-2511<br>054)811-2711   |
| 한 국 농 어 촌 공 사   | 재난종합상황실<br>지하수지질처                         | 061)338-6700<br>061)338-5792   |
| 한 강 홍 수 통 제 소   | 예보통제과<br>당직실                              | 02)590-6105<br>02)590-9920~1   |
| 국 립 공 원 관 리 공 단 | 방재관리부                                     | 033)769-9600   |
| 한 국 가 스 안 전 공 사 | 재난관리처(안전지원부)<br>(상황관리부)<br>(종합상황실)        | 043)750-1380~6<br>043)750-1370~3<br>043)750-1300~4                   |
| 한 국 전 기 안 전 공 사 | 안전관리처(재난안전부)<br>(재해관리부)<br>(종합상황실)        | 063)716-2312~6<br>063)716-2331~5<br>063)716-2117, 9                  |
| 한 국 산 업 안 전 공 단 | 전문기술총괄실 총괄조정팀                             | 052)703-0592   |
| 한 국 시 설 안 전 공 단 | 건설사고조사위 사무국<br>야) 당직실                     | 055-771-4942<br>1599-4114  |
| 전 국 재 해 구 호 협 회 | 구호사업팀                                     | 02)6263-9595   |

□ 시·도 비상연락망

| 기 관 | 부 서   | 연 락 처        |
|-----|-------|--------------|
| 서 울 | 상황대응과 | 02)2133-8523 |
| 부 산 | 재난대응과 | 051)888-2965 |
| 대 구 | 자연재난과 | 053)803-4553 |
| 인 천 | 재난예방과 | 032)870-3369 |
| 광 주 | 재난예방과 | 062)613-2670 |
| 대 전 | 재난관리과 | 042)270-5940 |
| 울 산 | 재난관리과 | 052)229-3610 |
| 세 종 | 안전총괄과 | 044)300-3210 |
| 경 기 | 자연재난과 | 031)231-0359 |
| 강 원 | 방재과   | 033)249-3821 |
| 충 북 | 자연재난과 | 043)220-2450 |
| 충 남 | 재난대응과 | 041)635-2182 |
| 전 북 | 자연재난과 | 063)280-3640 |
| 전 남 | 자연재난과 | 061)286-3722 |
| 경 북 | 자연재난과 | 054)880-2365 |
| 경 남 | 재난대응과 | 055)211-2834 |
| 제 주 | 재난대응과 | 064)710-3944 |

□ 실무매뉴얼 작성기관 현황

| 기 관             | 부 서      | 연 락 처             |
|-----------------|----------|-------------------|
| 행정안전부           | 지진방재관리과  | 044)205-5192      |
| 기 상 청           | 지진화산감시과  | 02)2181-0794~0795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통신자원정책과  | 02)2110-1944      |
| 국 방 부           | 재난관리지원과  | 02)748-5769       |
| 교 육 부           | 학교안전총괄과  | 044)203-6893      |
| 문화체육관광부         | 비상안전기획관실 | 044)203-2291      |
|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기반과    | 044)201-1853      |
|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재난담당관  | 044)203-5583      |
| 보 건 복 지 부       | 비상안전기획관  | 044)202-2654      |
| 고 용 노 동 부       | 화학사고예방과  | 044)202-7756      |
| 환 경 부           | 비상안전담당관  | 044)201-6494      |
| 국 토 교 통 부       | 시설안전과    | 044)201-3578      |
| 해 양 수 산 부       | 항만기술안전과  | 044)200-5955~6    |
| 원 자 력 안 전 위 원 회 | 원자력안전과   | 02)397-7287       |
| 경 찰 청           | 위기관리센터   | 02)3150-1638      |
| 방 송 통 신 위 원 회   | 지상파방송정책과 | 02)2110-1429      |
| 문 화 재 청         | 안전기준과    | 042)481-4973      |
| 산 림 청           | 산사대방지과   | 042)481-4274      |
| 소 방 청           | 119구조과   | 044-205-7625      |
| 해 양 경 찰 청       | 수색구조과    | 044-205-2245      |

□ 문화재청 비상연락망

| 기관명       | 부서명             | 연 락 처         |           | 비 고                        |
|-----------|-----------------|---------------|-----------|----------------------------|
|           |                 | 전화번호          | 팩 스       |                            |
| 문화재청      | 안전기준과           | 042) 481-4822 | 481-4932  | 문화재 안전상황실 운영               |
|           | 운영지원과           | 042) 481-4638 | 481-4669  |                            |
|           | 기획재정담당관         | 042) 481-4781 | 481-4799  |                            |
|           | 창조행정담당관         | 042) 481-4716 | 481-4729  |                            |
|           | 법무감사담당관         | 042) 481-4788 | 481-4649  |                            |
|           | 대변인실            | 042) 481-4671 | 481-4679  |                            |
|           | 정보화담당관          | 042) 481-4760 | 481-4769  |                            |
|           | 정책총괄과           | 042) 481-4815 | 481-4829  |                            |
|           | 무형문화재과          | 042) 481-4961 | 481-4979  |                            |
|           | 발굴제도과           | 042) 481-4941 | 481-4959  |                            |
|           | 보존정책과           | 042) 481-4831 | 481-4849  | 사적 관리<br>(현충사, 칠백의총)       |
|           | 고도보존육성과         | 042) 481-3101 | 481-3109  | 고도지역                       |
|           | 신라왕경사업추진단       | 054) 777-6719 | 741-5386  | 신라왕경지구                     |
|           | 유형문화재과          | 042) 481-4911 | 481-4939  | 건축, 동산문화재 관리               |
|           | 천연기념물과          | 042) 481-4981 | 481-4999  | 천연기념물, 명승 관리               |
|           | 수리기술과           | 042) 481-4861 | 481-4879  |                            |
|           | 활용정책과           | 042) 481-4741 | 481-4749  |                            |
|           | 궁능유적본부          | 02) 6450-3821 | 6450-3898 | 궁·능·원 관리                   |
|           | 국제협력과           | 042) 481-4731 | 481-4759  |                            |
|           | 근대문화재과          | 042) 481-4881 | 481-4899  | 국가민속문화재,<br>근대사적, 등록문화재 관리 |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041) 830-7210   | 830-7030      |           |                            |
| 국립고궁박물관   | 02) 3701-7610   | 3701-7620     |           |                            |
| 현충사관리소    | 041) 539-4602   | 539-4650      |           |                            |
| 세종대왕유적관리소 | 031) 885-3124   | 885-3125      |           |                            |
| 칠백의총관리소   | 041) 753-8701   | 753-5700      |           |                            |
| 만인의총관리소   | 063) 636-9321   | 636-9327      |           |                            |
| 경복궁관리소    | 02) 3700-3900~1 | 3700-3909     |           |                            |
| 창덕궁관리소    | 02) 762-9513    | 762-2070      |           |                            |
| 덕수궁관리소    | 02) 771-9952    | 771-9953      |           |                            |
| 창경궁관리소    | 02) 762-9515    | 762-9514      |           |                            |

| 기관명              | 연 락 처         |               | 비 고      |
|------------------|---------------|---------------|----------|
|                  | 전화번호          | 팩 스           |          |
| 종묘관리소 (사직단 포함)   | 02) 762-3552  | 3672-4332     |          |
| 조선왕릉관리소          | 02) 739-7828  | 739-7832      |          |
| 동부지구관리소 (동구릉)    | 031) 563-2909 | 569-3346      |          |
| 중부지구관리소 (태릉)     | 02) 972-0370  | 972-6301      |          |
| 서부지구관리소 (서오릉)    | 02) 359-0090  | 359-0068      |          |
| 국립무형유산원          | 063) 280-1400 | 280-1429      |          |
| 국립<br>문화재<br>연구소 | 행정운영과         | 042) 860-9120 | 861-4923 |
|                  | 연구기획과         | 042) 860-9131 | 861-5233 |
|                  | 고고연구실         | 042) 860-9170 | 861-4924 |
|                  | 미술문화재연구실      | 042) 860-9191 | 861-4925 |
|                  | 건축문화재연구실      | 042) 860-9211 | 861-4926 |
|                  | 보존과학연구실       | 042) 860-9252 | 861-4928 |
|                  | 복원기술연구실       | 042) 860-9341 | 861-5168 |
|                  | 안전방재연구실       | 042) 860-9216 | 860-9238 |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 054) 777-8820 | 777-8893      |          |
|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 041) 830-5620 | 830-5629      |          |
|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 055) 211-9002 | 211-9012      |          |
|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 061) 339-1110 | 339-1119      |          |
| 국립충원문화재연구소       | 043) 850-7802 | 855-8964      |          |
| 강화문화재연구소         | 02) 484-4904  | 487-9431      |          |
| 문화재보존과학센터        | 042) 860-9361 | 860-9497      | 문화재 보존처리 |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 061) 270-2021 | 270-2039      |          |

# 부 록

## <목 차>

|                                    |     |
|------------------------------------|-----|
| 1. 보고서식 .....                      | 167 |
| 2. 주요 지진·지진해일 피해 사례 .....          | 174 |
| 3. 진도 등급별 현상 .....                 | 177 |
| 4. 위기상황 전파체계 .....                 | 178 |
| 5. 국가위기관리 영상회의 시스템 .....           | 188 |
| 6. 언론홍보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매뉴얼 .....      | 190 |
| 7. 국민행동요령 .....                    | 203 |
| 8. 외국인 사상자 관련 주한 공관 상황 공유 체계 ..... | 217 |
| 9. 중앙수습지원단의 표준편제와 임무 .....         | 219 |
| 10. 재난유형별 및 단계별 활동 사항 .....        | 220 |



# 1. 보고서식

## 1-1. 보고 서식 [지자체 → 문화재청]

문화재안전상황실 운영지침[별지 제1호서식]

### 문화재 재난상황 발생보고

|   |                                |
|---|--------------------------------|
| <b>즉시 보고</b>  |                                |
| <b>재난종류</b>   |                                |
| <b>발생개요</b>   | <input type="checkbox"/> 일 시 : |
|   | <input type="checkbox"/> 장 소 : |
|   | <input type="checkbox"/> 원 인 : |
|   | <input type="checkbox"/> 상 황 : |
| <b>피해상황</b>   | <input type="checkbox"/> 문화재 : |
|   | <input type="checkbox"/> 인 명 : |
|   | <input type="checkbox"/> 기 타 : |
| <b>조치사항</b>   |                                |
| <input type="checkbox"/> 보고기관 : <input type="checkbox"/> 보고자 :                      (연락처 :                      ) |                                |

## 1-2. 보고 서식 (내부 보고용)

### 00 내륙에서 규모 5.1(진도 VI) 지진 발생 보고(1보)

'19. 1. 12.(월) 00:00 / 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실

◆ 금일('19.1.12.19:44분) 경북 00시 남남서쪽 9km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 규모 5.1(진도 VI) 상황을 보고드립니다(※현재까지 접수된 문화재 피해상황 없음)

#### 지진 발생 개요

- (발생시간) '19. 1. 12.(월) 19시 44분 32초
- (진앙/규모) ○○도 ○○시 남남서쪽 9km 지역 / 규모 5.1(여진 5.8)
- (피해상황) 이 지진으로 인하여 ○○, ○○ 등의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진동이 감지되었으며, 현재까지 지진으로 인한 피해신고는 없음

#### 조치내용

- 현재 지진 발생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청장)를 설치하고 재난 부서별 대책반을 구성하여 문화재별 피해 상황 파악 중
- \* 지진은 '지진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총괄하고 우리 청은 중앙사고 수습본부를 운영



- 국립문화재연구소 안전방재연구실에 현지조사 실시 요청 및 유관기관에 상황 전파 실시

## 지진재난 관련, 피해 및 조치 현황 보고(1보)

'19. 1. 12.(월) 00:00 / 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실

### □ 사고개요

- 출 처 : (접수일시 및 보고기관·파악매체 등)
- 일시 / 장소 : ① (사고발생 일시) / (사고발생장소)  
② (사고발생 일시) / (사고발생장소)
- 문화재피해현황
  - 총 피해현황 : 지정문화재 00건 (국가지정 00건, 시·도지정 및 문화재자료 00건)
  - 주요 피해문화재 : 불국사 다보탑 난간석 탈락, 첨성대 정자석 이격 등

### □ 조치사항

- (시간대별 대응조치사항, 복구인력 장비 동원, 복구내용 등)
- 20:20 00시 담당자(000)와 통화 (안전기준과 → 경주시)
  - \* 20:20기준 접수된 문화재 피해현황 없음 확인, 상황지속유지 요청
- 20:50 00도 재난안전상황실(000)와 통화 (안전기준과 → 경북도)
- 20:56 00지역 지진발생관련 접수된 문화재피해 없음 보고(안전기준과→당직실)

### □ 언론보도 동향

- (YTN등 마스크 보도 여부, 보도시간, 사회적 이슈화 여부 등)

### □ 향후조치계획

- (복구지원, 응급대책 실시 등 추가 조치계획에 관한 내용)
- 문화재 피해 관련 긴급보수비 최우선 지원 (00억)
- 불국사, 석굴암, 다보탑, 첨성대 등 주요문화재 정밀계측조사 실시 후 긴급대책 수립

## 1-3. 보고 서식 (내부 보고용)

## 00 지진해일 파고 1.3m 발생 보고(1보)

'19. 1. 12.(월) 00:00 / 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실

◆ 금일('19.1.12.19:44분) 경북 00시 남남서쪽 9km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해일(파고 1.3m) 상황을 보고드립니다(※현재까지 접수된 문화재 피해상황 없음)

### □ 지진해일 발생 개요

- (발생시간) '19. 1. 12.(월) 19시 44분 32초
- (진앙/규모) 00도 00시 남남서쪽 9km 지역 / 파고 1.3m
- (피해상황) 이 지진해일로 인하여 00, 00 등의 지역에 피해 발생 현재까지 지진해일로 인한 문화재 피해신고는 없음

### □ 조치내용

- 현재 지진해일 발생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청장)를 설치하고 재난 부서별 대책반을 구성하여 문화재별 피해 상황 파악 중
- \* 지진해일은 '지진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총괄하고 우리 청은 중앙사고 수습본부를 운영



- 국립문화재연구소 안전방재연구실에 현지조사 실시 요청 및 유관기관에 상황 전파 실시

## 지진 해일재난 관련, 피해 및 조치 현황 보고(1보)

'19. 1. 12.(월) 00:00 / 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실

### □ 사고개요

- 출처 : (접수일시 및 보고기관·파악매체 등)
- 일시 / 장소 : ① (사고발생 일시) / (사고발생장소)  
② (사고발생 일시) / (사고발생장소)
- 문화재피해현황
  - 총 피해현황 : 지정문화재 00건 (국가지정 00건, 시·도지정 및 문화재자료 00건)
  - 주요 피해문화재 : ○○석탑붕괴, ○○고택 담장 붕괴, 창호 탈락

### □ 조치사항

- (시간대별 대응조치사항, 복구인력 장비 동원, 복구내용 등)
- 20:20 ○○시 담당자(○○○)와 통화 (안전기준과 → 경주시)
  - \* 20:20기준 접수된 문화재 피해현황 없음 확인, 상황지속유지 요청
- 20:50 ○○도 재난안전상황실(○○○)와 통화 (안전기준과 → 경북도)
- 20:56 ○○지역 지진해일발생관련 접수된 문화재피해 없음 보고(안전기준과 → 당직실)

### □ 언론보도 동향

- (YTN등 마스크 보도 여부, 보도시간, 사회적 이슈화 여부 등)

### □ 향후조치계획

- (복구지원, 응급대책 실시 등 추가 조치계획에 관한 내용)
- 문화재 피해 관련 긴급보수비 최우선 지원 (○○억)
- ○○석탑붕괴, ○○고택붕괴 등 주요문화재 정밀계측조사 실시 후 긴급 대책 수립

## 붙임 1

## 문화재 피해 세부현황

### □ 총 피해현황 : 지정문화재 00건

| 구분                 | 합계 | 광역1 |     |     | 광역2 |     |     | 광역3 |     |     |
|--------------------|----|-----|-----|-----|-----|-----|-----|-----|-----|-----|
|                    |    | 소계  | 기초1 | 기초2 | 소계  | 기초1 | 기초2 | 소계  | 기초1 | 기초2 |
| 총                  |    |     |     |     |     |     |     |     |     |     |
| 국가지정               |    |     |     |     |     |     |     |     |     |     |
| 시도지정<br>·<br>문화재자료 |    |     |     |     |     |     |     |     |     |     |

### □ 세부 피해현황

#### ○ 국가지정문화재(00건)

| 문화재명   | 지정별                   | 피해내용   | 비고 |
|--------|-----------------------|--|----|
| 불국사    | 사적 제502호<br>국보 제20호 등 | 다보탑(국보 20) 난간석 접합부 탈락<br>대웅전(보물 1744) 지붕 및 담장 기와 일부 파손<br>대웅전 용마루 파손<br>관음전 담장기와 일부 파손<br>서회랑 기와 일부 파손 등 |    |
| 석굴암 주변 | 국보 제24호               | 일주문에서 석굴암 진입로 낙석   |    |

#### ○ 시·도지정문화재(00건)

| 문화재명 | 지정별 | 피해내용 | 비고 |
|------|-----|------|----|
|      |     |      |    |

#### ○ 문화재자료(00건)

| 문화재명 | 지정별 | 피해내용 | 비고 |
|------|-----|------|----|
|      |     |      |    |

| 근무일<br>(인원)       | 상<br>황<br>총괄반 | 사<br>적<br>문화재<br>대책반 | 유<br>형<br>문화재<br>대책반 | 고<br>도<br>보<br>존<br>대책반 | 천<br>연<br>기념물<br>대책반 | 근<br>대<br>문화재<br>대책반 | 궁<br>능<br>문화재<br>대책반 | 매<br>장<br>문화재<br>대책반 | 수<br>리<br>현<br>장<br>대책반 |
|-------------------|---------------|----------------------|----------------------|-------------------------|----------------------|----------------------|----------------------|----------------------|-------------------------|
| 9.13.(화)<br>(00명) |               |                      |                      |                         |                      |                      |                      |                      |                         |
| 9.14.(수)<br>(00명) |               |                      |                      |                         |                      |                      |                      |                      |                         |
| 9.15.(목)<br>(00명) |               |                      |                      |                         |                      |                      |                      |                      |                         |
| 9.16.(금)<br>(00명) |               |                      |                      |                         |                      |                      |                      |                      |                         |
| 9.17.(토)<br>(00명) |               |                      |                      |                         |                      |                      |                      |                      |                         |
| 9.18.(일)<br>(00명) |               |                      |                      |                         |                      |                      |                      |                      |                         |

- (근무지) 상황실 여건상 각 대책반은 해당 부서에서 근무
- (상황보고) 각 대책반 상황파악 후 1일 1회 보고(16:00)

## 2. 주요 지진·지진해일 피해 사례

### □ 국내 주요 지진 피해사례

| 지진명                     | 규모  | 인명피해(명) |    |     |    | 재산피해   |
|-------------------------|-----|---------|----|-----|----|--|
|                         |     | 계       | 사망 | 부상  | 실종 |  |
| 쌍계사지진<br>(1936.7.4.)    | 5.1 | 4       | 0  | 4   | 0  | - 건물피해 : 113동(전파3, 반파10 등)<br>- 문화재피해 : 쌍계사건물 등 파손   |
| 속리산지진<br>(1978.9.16.)   | 5.2 | 0       | 0  | 0   | 0  | - 재산피해 : 없음<br>- 우리나라 전역에서 진동 감지   |
| 홍성지진<br>(1978.10.7.)    | 5.0 | 2       | 0  | 2   | 0  | - 재산피해 : 3억1백만원<br>- 건물피해 : 건물파손 100여동, 건물균열 1,000여동<br>- 성곽붕괴 : 홍주성곽 붕괴<br>- 기타 : 일시정전, 전화불통                          |
| 영월지진<br>(1996.12.13.)   | 4.5 | 0       | 0  | 0   | 0  | - 건물피해 : 건물균열 10여동<br>- 우리나라 전역에서 진동 감지  |
| 울진앞바다지진<br>(2004.5.29.) | 5.2 | 0       | 0  | 0   | 0  | - 재산피해 : 없음<br>- 울진지역 진도 V로 건물 심하게 진동  |
| 후쿠오카지진<br>(2005.3.20.)  | 7.0 | 0       | 0  | 0   | 0  | - 부산에서 엘리베이터 일시 가동 중지<br>- 부산항 하역작업 30분간 중지  |
| 오대산지진<br>(2007.1.20.)   | 4.8 | 0       | 0  | 0   | 0  | - 건물피해 : 일부 노후 조적조 건물의 벽체 균열 발생  |
| 울산해역지진<br>(2016.7.5.)   | 5.0 | 0       | 0  | 0   | 0  | - 재산피해 : 없음<br>- 울산, 부산, 포항지역 진도IV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진동감지  |
| 경주지진<br>(2016.9.12.)    | 5.8 | 23      | 0  | 23  | 0  | - 재산피해 : 110억원(사유 43억, 공공 6.7억)<br>- 건물피해 : 5,664동(전파8,반파46,소파5,610)<br>- 최대진도 VI(경주, 대구)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진동 감지          |
| 포항지진<br>(2017.11.15.)   | 5.4 | 135     | 1  | 134 | 0  | - 재난피해 : 850억원(사유416.3억,공공256.4억)<br>- 건물피해 : 55,181동<br>(전파 671, 반파285, 소파54,225)<br>- 최대진도 VI(포항)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진동감지 |

□ 국내 주요 지진해일 피해사례

출처 : 기상청

| 발생시기 |              | 1983. 5. 26.  | 1993. 7. 12.  |
|------|--------------|---|---|
| 지진   | 진원시          | 1983. 5. 26. 11시59분   | 1993. 7. 12. 22시17분   |
|      | 규모           | 7.7   | 7.8   |
|      | 진앙           | 일본 혼슈 아키다현 서쪽 근해  | 일본 홋카이도 오키시리섬 북서쪽 근해  |
| 지진해일 | 제1파 도달시각     | - 울릉도 : 13시 17분<br>- 목호 : 13시 35분<br>- 속초 : 13시 43분<br>- 포항 : 13시 52분 | - 울릉도 : 23시 47분<br>- 목호 : 00시 00분<br>- 속초 : 00시 09분<br>- 포항 : 01시 18분 |
|      | 최대파고         | - 울릉도 : 126cm<br>- 목호 : 200cm 이상<br>- 속초 : 156cm<br>- 포항 : 62cm       | - 울릉도 : 119cm<br>- 목호 : 203cm<br>- 속초 : 276cm<br>- 포항 : 92cm          |
|      | 평균주기 (분)     | 8~12분   | 5~10분   |
|      | 피해           | - 인명 : 사망1, 실종2, 부상2<br>- 가옥 : 파괴1, 파손22, 침수19<br>- 선박 : 파괴47, 파손 34  | - 인명 : 피해없음<br>- 선박 : 전파 17, 반파 15<br>- 어망어구 : 3,228통                 |
|      | 총 피해액 (당시금액) | 약 3억 7천여만원  | 약 4억원   |
|      |              |   |   |

※ 나가타 지진해일(64.6.16) : 규모 7.5, 재산피해 : 없음, 지진해일파고 : 부산(32cm), 울산(39cm)

□ 세계의 주요지진

| 발생 일시      | 지역               | 사망자수(명) | 규모  |
|------------|------------------|---------|-----|
| 1908.12.28 | 이탈리아 메시나         | 120,000 | 7.5 |
| 1915.01.13 | 이탈리아 아베차노        | 30,000  | 7.0 |
| 1920.12.16 | 중국 간쑤성           | 180,000 | 8.5 |
| 1923.09.01 | 일본 관동            | 143,000 | 8.2 |
| 1932.12.26 | 중국 간쑤성           | 70,000  | 7.6 |
| 1935.05.31 | 파키스탄, 쿠파타        | 60,000  | 7.5 |
| 1939.01.24 | 칠레 치안            | 30,000  | 7.8 |
| 1939.12.27 | 터키 에르진잔          | 23,000  | 8.0 |
| 1960.02.29 | 모로코 아가디르         | 14,000  | 5.9 |
| 1962.09.01 | 이란 카즈빈           | 14,000  | 7.3 |
| 1968.08.31 | 이란 카크호크          | 11,600  | 7.4 |
| 1970.05.31 | 페루 윤가이           | 66,000  | 7.8 |
| 1976.02.04 | 과테말라 서부 고원지대     | 22,000  | 7.9 |
| 1976.07.27 | 중국 당산            | 242,000 | 7.6 |
| 1978.09.16 | 이란 타바스           | 15,000  | 7.7 |
| 1988.12.07 | 아르메니아 스피탁        | 25,000  | 6.8 |
| 1990.06.20 | 이란 라슈트           | 45,000  | 7.7 |
| 1999.08.17 | 터키 이즈밋           | 16,000  | 7.4 |
| 2001.01.26 | 인도 구자라트          | 20,000  | 7.7 |
| 2003.12.26 | 이란 밤             | 26,200  | 6.6 |
| 2004.12.26 |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지진해일) | 283,000 | 9.0 |
| 2005.10.08 | 파키스탄 카시미르        | 86,000  | 7.6 |
| 2008.05.12 | 중국 쓰촨성           | 70,000  | 8.0 |
| 2010.01.12 | 아이티              | 300,000 | 7.0 |
| 2011.03.11 | 일본 동북부(지진해일)     | 19,475  | 9.0 |
| 2016.04.16 | 일본 구마모토          | 169     | 7.3 |

※ 역사적 최대피해 지진 : 1556년 1월 23일 중국 산시성 지진으로 83만명 사망

### 3. 진도 등급별 현상

출처 : 기상청

| 최대속도<br>(V=cm/sec)  | 진도 등급별 현상  | 최대가속도<br>(%g=9.81cm/sec <sup>2</sup><br>= 9.81gal) |
|---------------------|--|--|
| V<0.03              | <b>I</b> 사람들은 느낄 수 없지만 지진계에 기록된다.  | %g<0.07<br>(gal<0.6867)                            |
| 0.03≤V<0.07         | <b>II</b> 소수의 사람들, 특히 건물의 윗층에 있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의해서만 느낀다. 매달린 물체가 약하게 흔들린다.   | 0.07≤%g<0.23<br>(0.6867≤gal<2.2563)                |
| 0.07≤V<0.19         | <b>III</b> 실내에서 현저하게 느끼게 되는데, 특히 건물의 윗층에 있는 사람에게 더욱 그렇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지진이라고 인식하지 못한다. 정지하고 있는 차는 약간 흔들린다. 트럭이 지나가는 것과 같은 진동이 있고, 지속시간이 산출된다.  | 0.23≤%g<0.76<br>(2.2563≤gal<7.4556)                |
| 0.19≤V<0.54         | <b>IV</b> 낮에는 실내에 서 있는 많은 사람들이 느낄 수 있으나, 실외에서는 거의 느낄 수 없다. 밤에는 일부 사람들이 잠을 깬다. 그릇, 창문, 문 등이 소리를 내며, 벽이 갈라지는 소리를 낸다. 대형 트럭이 벽을 받는 느낌을 준다. 정지하고 있는 자동차가 뚜렷하게 움직인다.  | 0.76≤%g<2.56<br>(7.4556≤gal<25.1136)               |
| 0.54≤V<1.46         | <b>V</b> 거의 모든 사람들이 지진동을 느낀다. 많은 사람들이 잠을 깬다. 그릇, 창문 등이 깨어지기도 하며, 어떤 곳에서는 회반죽에 금이 간다. 불안정한 물체는 넘어 진다. 나무, 전선주 등 높은 물체가 심하게 흔들린다. 추시계가 멈추기도 한다.  | 2.56≤%g<6.86<br>(25.1136≤gal<67.2966)              |
| 1.46≤V<3.70         | <b>VI</b> 모든 사람들이 느낀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밖으로 뛰어 나간다. 무거운 가구가 움직이기도 한다. 벽의 석회가 떨어 지기도 하며, 피해를 입는 골목도 일부 있다.   | 6.86≤%g<14.73<br>(67.2966≤gal<144.5013)            |
| 3.70≤V<9.39         | <b>VII</b> 모든 사람들이 밖으로 뛰어 나온다. 설계 및 건축이 잘 된 건물에서는 피해가 무시할 수 있는 정도이지만, 보통 건축물에서는 약간의 피해가 발생한다. 설계 및 건축이 잘못된 부실 건축물에서는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다. 골목이 무너지며 운전 중인 사람들도 지진동을 느낄 수 있다.   | 14.73≤%g<31.66<br>(144.58013≤gal<310.5846)         |
| 9.39≤V<23.85<br>5   | <b>VIII</b> 특별히 설계된 구조물에는 약간의 피해가 있고, 일반 건축물에서는 부분적인 붕괴와 더불어 상당한 피해를 일으키며, 부실 건축물에서는 아주 심하게 피해를 준다. 창틀로부터 창문이 떨어져 나간다. 골목, 공장 물품더미, 기둥, 기념비, 벽들이 무너진다. 무거운 가구가 넘어진다. 모래와 진흙이 약간 분출된다. 우물물의 변화가 있다. 차량운행 하기가 어렵다. | 31.66≤%g<68.01<br>(310.5846≤gal<667.1781)          |
| 23.85≤V<60.61<br>61 | <b>IX</b> 특별히 잘 설계된 구조물에도 상당한 피해를 준다. 잘 설계된 구조물의 골조가 기울어진다. 구조물에 부분적 붕괴와 함께 큰 피해를 준다. 건축물이 기초에서 벗어난다. 지표면에 선명한 금자국이 생긴다. 지하 송수관도 파괴된다.   | 68.01≤%g<146.14<br>(667.1781≤gal<1433.6334)        |
| 60.61≤V<154         | <b>X</b> 잘 지어진 목조 구조물이 부서지기도 하며, 대부분의 석조 건물과 그 구조물이 기초와 함께 무너진다. 지표면이 심하게 갈라진다. 기차 선로가 휘어진다. 강둑이나 경사면에서 산 사태가 발생하며, 모래와 진흙이 이동한다. 물이 튀며, 독을 넘어 흘러내린다.  | 146.14≤%g<314<br>(1433.6334≤gal<3080.34)           |
| 154≤V               | <b>XI</b> 남아 있는 석조 구조물은 거의 없다. 다리가 부서지고 지표면에 심한 균열이 생긴다. 지하 송수관이 완전히 파괴된다. 지표면이 침하하며, 연약 지반에서는 땅이 꺼지고 지면이 어긋난다. 기차선로가 심하게 휘어진다.<br><br><b>XII</b> 전면적인 피해 발생. 지표면에 파동이 보인다. 시야와 수평면이 뒤틀린다. 물체가 공중으로 튀어 나간다.      | 314≤%g<br>(3080.34≤gal)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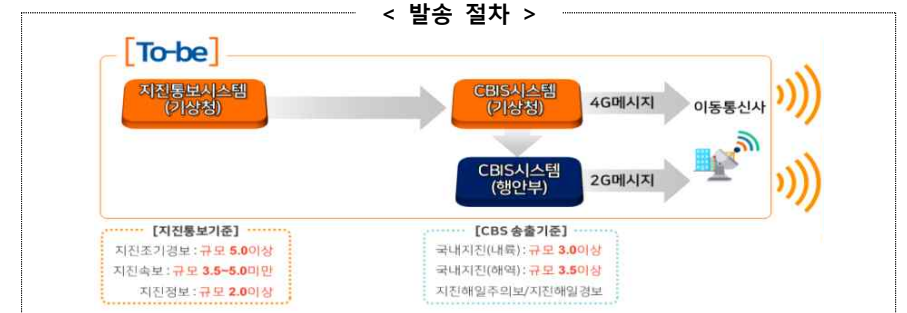
### 4. 위기상황 전파체계

#### 1 긴급재난문자(CBS: Cell Broadcasting Service)

□ **관련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제3항·제4항·제6항, 「지진 재난문자방송 운영 규정」 (기상청 훈령)

#### □ 시스템 개요

- (구축/운영) '06.6~9월(2G폰), '12.9~12월(4G폰)/'06.12월
- (송출목적) 휴대폰으로 전국 또는 해당지역에 있는 사용자에게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 등 신속 전파
- (대상단말) CBS 기능이 탑재된 2G, '13.1.1 이후 신규출시 4G 휴대폰  
※ 3G 사용자는 "안전디딤돌 앱"을 통해 수신
- (송출용량) 1회 송출시 최대 60자(2G)/90자\*(4G, '18.12월부터 적용)  
\* 국제표준에 따라, 4G는 한글·영어·공백·특수문자 모두 2Byte(총 180byte)
- (송출지역단위) 시·군·구, 시·도, 전국
- (송출비용) 무료(통신사와 업무협약, '04.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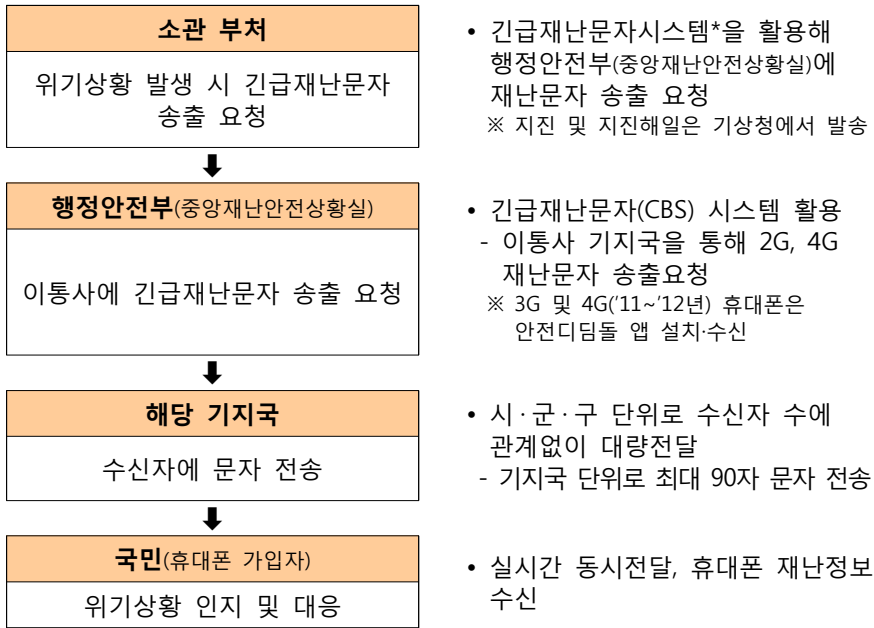


※ 지진, 지진해일은 기상청에서 직접 발송(2G는 행안부 시스템 활용)

#### □ 주요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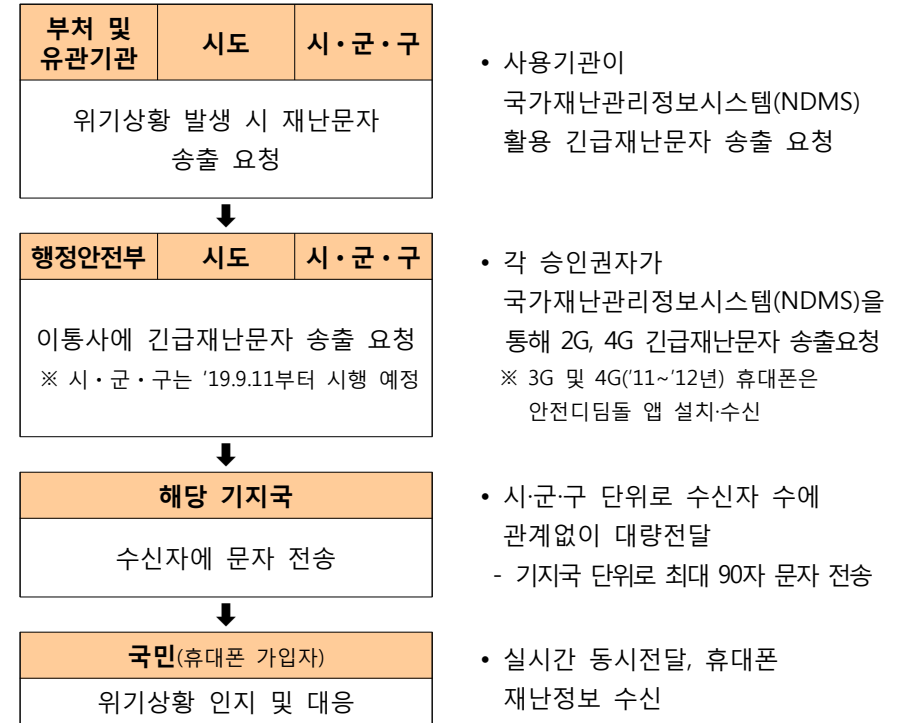
- 수신자 수와 관계없이 대량으로 실시간 동시에 전달
- 이동 중에도 휴대폰만 있으면 실시간으로 재난정보 수신

## □ 송출절차(중앙부처 및 재난관리책임기관)



\* 행정안전부 긴급재난문자 시스템(외부망, 인터넷망) : <https://cbis.safekorea.go.kr>

## □ 발송절차



\*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내/외부망 공통) : <https://www.ndms.go.kr>

▶ 통합발령 · 대국민통합상황전파 · 대국민 통합 상황전파(실제)

※ 실제 발송되는 페이지입니다. 훈련 및 테스트는 불가 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div style="font-size: 0.8em;">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특별시</li> <li>○ 부산광역시</li> <li>○ 대구광역시</li> <li>○ 인천광역시</li> <li>○ 광주광역시</li> <li>○ 대전광역시</li> <li>○ 울산광역시</li> <li>○ 세종특별자치시</li> <li>○ 경기도</li> <li>○ 강원도</li> <li>○ 충청남도</li> <li>○ 충청북도</li> <li>○ 전라남도</li> <li>○ 경상북도</li> <li>○ 경상남도</li> <li>○ 제주특별자치도</li> </ul> </li> </ul> </div> | <table style="width: 100%;"> <tr> <td>재난유형</td> <td>자연재난 ▾ 기상특보 ▾ 태풍 ▾ 정보 ▾</td> </tr> <tr> <td>발표</td> <td>발표</td> </tr> <tr> <td>전송매체</td> <td><input checked="" type="checkbox"/> CBS <input type="checkbox"/> DITS <input type="checkbox"/> DMB</td> </tr> <tr> <td>제목</td> <td>기상특보 태풍경보 발표</td> </tr> <tr> <td>대상지역</td> <td>선택된 지역이 있습니다. 지역을 선택하세요.</td> </tr> <tr> <td>재난유형</td> <td>자연재난 ▾ 태풍 ▾ 정보 ▾</td> </tr> <tr> <td>안전 안내 문자 (재난:4372)</td> <td>안전 안내 문자 (재난:4372)</td> </tr> <tr> <td>CBS</td> <td>[행정안전부] 오늘 00시 00지역 태풍경보, 해안지대 접근금지, 선박대피, 농수산물 보호행위 자제 등 피해 없게 주의바랍니다.</td> </tr> <tr> <td>메세지</td> <td>[118/120 바이트]</td> </tr> </table> | 재난유형 | 자연재난 ▾ 기상특보 ▾ 태풍 ▾ 정보 ▾ | 발표 | 발표 | 전송매체 | <input checked="" type="checkbox"/> CBS <input type="checkbox"/> DITS <input type="checkbox"/> DMB | 제목 | 기상특보 태풍경보 발표 | 대상지역 | 선택된 지역이 있습니다. 지역을 선택하세요. | 재난유형 | 자연재난 ▾ 태풍 ▾ 정보 ▾ | 안전 안내 문자 (재난:4372) | 안전 안내 문자 (재난:4372) | CBS | [행정안전부] 오늘 00시 00지역 태풍경보, 해안지대 접근금지, 선박대피, 농수산물 보호행위 자제 등 피해 없게 주의바랍니다. | 메세지 | [118/120 바이트] | <div style="border: 1px solid #000;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color: #000080;">재난문자 송출 전 꼭 확인하세요!!</p> <p><input type="checkbox"/> 재난문자 송출 기준에 적합한지?</p> <p><input type="checkbox"/> 송출 지역은 정확히 선택했는지?</p> <p><input type="checkbox"/> 이미 송출했는데 중복 송출은 아닌지?</p> <p><input type="checkbox"/> 문안에 오할자는 없는지?</p> <p><input type="checkbox"/> 야간·심야 송출시 꼭 필요한것인지?</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0.8em; color: #000080;">재난문자 송출기준 부칙절 송출사례</p> <p><input type="checkbox"/> 송출 전 체크 항목을 확인하였습니다.</p> </div> <div style="text-align: right; font-size: 0.8em;"> <span style="margin-right: 10px;">임시저장</span> <span style="margin-right: 10px;">삭제</span> <span style="margin-right: 10px;">승인요청</span> <span>목록</span> </div> |
| 재난유형   | 자연재난 ▾ 기상특보 ▾ 태풍 ▾ 정보 ▾   |      |                         |    |    |      |  |    |              |      |                          |      |                  |                    |                    |     |   |     |               |   |
| 발표   | 발표  |      |                         |    |    |      |  |    |              |      |                          |      |                  |                    |                    |     |   |     |               |   |
| 전송매체   | <input checked="" type="checkbox"/> CBS <input type="checkbox"/> DITS <input type="checkbox"/> DMB  |      |                         |    |    |      |  |    |              |      |                          |      |                  |                    |                    |     |   |     |               |   |
| 제목   | 기상특보 태풍경보 발표  |      |                         |    |    |      |  |    |              |      |                          |      |                  |                    |                    |     |   |     |               |   |
| 대상지역   | 선택된 지역이 있습니다. 지역을 선택하세요.  |      |                         |    |    |      |  |    |              |      |                          |      |                  |                    |                    |     |   |     |               |   |
| 재난유형   | 자연재난 ▾ 태풍 ▾ 정보 ▾  |      |                         |    |    |      |  |    |              |      |                          |      |                  |                    |                    |     |   |     |               |   |
| 안전 안내 문자 (재난:4372)   | 안전 안내 문자 (재난:4372)  |      |                         |    |    |      |  |    |              |      |                          |      |                  |                    |                    |     |   |     |               |   |
| CBS  | [행정안전부] 오늘 00시 00지역 태풍경보, 해안지대 접근금지, 선박대피, 농수산물 보호행위 자제 등 피해 없게 주의바랍니다.   |      |                         |    |    |      |  |    |              |      |                          |      |                  |                    |                    |     |   |     |               |   |
| 메세지  | [118/120 바이트]   |      |                         |    |    |      |  |    |              |      |                          |      |                  |                    |                    |     |   |     |               |   |



## □ 지진·지진해일 재난문자 표준안

| 명칭       |     | 표준문안  |
|----------|-----|---|
| 지진       | 4G폰 | [기상청] ○월○일 ○○:○○ ○○ ○○ ○○ ○○ 00km 지역 규모 ○.○ 지진발생 / 낙하물로부터 몸 보호, 진동 멈춘 후 야외 대피하며 여진 주의 |
|          | 2G폰 | [기상청] ○월○일 ○○:○○ ○○ ○○ ○○ ○○ 00km 지역 규모 ○.○ 지진발생 / 낙하물 유의, 야외 대피하며 여진 주의              |
| 지진해일 주의보 |     | [기상청] ○○일○○시○○분 ○○지역 지진해일주의보, 선박은 대피시키고, 해변 주민은 이웃 전파 및 높은 지대로 대피                     |
| 지진해일 경보  |     | [기상청] ○○일○○시○○분 ○○지역 지진해일경보, 선박은 대피시키고, 해변 주민은 이웃 전파 및 높은 지대로 대피                      |

### 재난문자방송 송출기준(기상청 「지진 재난문자방송 운영규정」)

#### ○ 송출기준

| 명칭   | 송출기준   |
|------|--|
| 지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지진(내륙) : 규모 3.0 이상</li> <li>• 국내지진(해역) : 규모 3.5 이상</li> </ul> |
| 지진해일 | • 주의보 / 경보   |

#### ○ 재난의 경중에 따라 위급재난, 긴급재난으로 분류하여 송출

| 채널명칭  | 지진규모  | 음량      | 수신거부 |
|-------|---|---------|------|
| 위급재난* | • 국내지진 : 규모 6.0 이상  | 60 dB이상 | 불가   |
| 긴급재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지진(내륙) 규모 3.0 이상 ~ 6.0 미만</li> <li>• 국내지진(해역) 규모 3.5 이상 ~ 6.0 미만</li> <li>• 지진해일주의보, 지진해일경보</li> </ul> | 40 dB이상 | 가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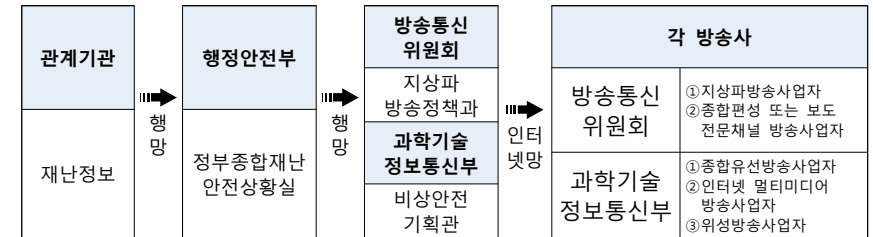
※ 2016. 1. 1. 이후 국내에서 출시한 4G 단말기에 한하여 위급재난 수신거부 불가

## 2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DITS: Disaster Information Transform System)

### □ 개요

- 재난(재난안전법 제3조) 및 재해(자연재해대책법 제2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재난상황을 전국 방송사에 실시간 자동 통보하는 시스템
- ※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 전문 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요청 시 재난방송 의무 실시(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

### □ 시스템 체계



※ 지진 및 지진해일은 기상청에서 재난방송 요청

### □ 주요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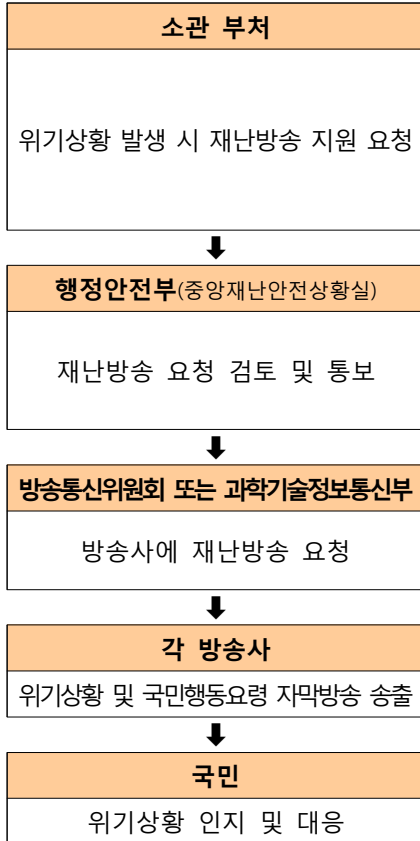
- 재난방송 요청 시,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거쳐 방송사로 자동전파
- 전국 또는 국지적 재난별로 해당지역 방송사에 선택적 재난방송 표출 요청 가능





※ KBS, MBC, SBS, EBS, TV조선, JTBC, 채널A, YTN, MBN, 뉴스Y는 지진 등 긴급재난에 대비하여 재난방송 요청시 방송사에서 자막작업을 거치지 않고 확인 버튼만 누르면 바로 TV로 송출 될 수 있는 자동자막송출시스템 구축 운영

### □ 발송절차



- **NDMS 상황 전파시스템 활용**
  - 재난방송을 통한 위기상황 및 대국민 행동요령 전파 요청
  - ※ 메시지 작성화면에서 '지원 및 협조 사항'에 자막송출 문안을 함께 작성하여 방송지원 요청
-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DMS) 활용**
  - 부처에서 요청한 위기관련 자막 송출을 검토하여 방통위 및 과기정통부에 재난방송 요청
- **재난온라인방송시스템(EDBS) 활용**
  - 즉시 연계되어 있는 방송사에 재난 방송 요청
- **통보받은 위기상황 및 국민행동요령을 자막방송으로 신속하게 송출**

※ 지진 및 지진해일은 기상청에서 재난방송 요청

### ③ 민방위경보시스템 재난경보

#### □ 목 적

- 민방공 사태 및 재난상황 발생 시 민방위 경보 발령 전달체계에 따라 국민에게 신속한 경보전파(민방위기본법 제33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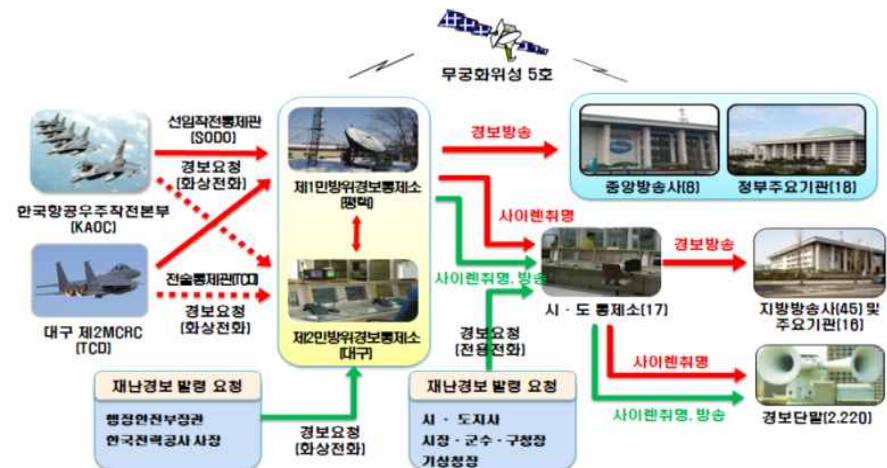
#### □ 주요기능

- 중앙과 17개 시도 경보통제소에서 전국 경보단말(사이렌 2,220대) 올림
- 8개 중앙방송사 및 18개 정부주요기관 연결장비를 활용한 상황 전파
- CBS(재난문자), DMB(지상파방송), TV자막 시스템과 연계 알림
- ※ 재난경보(재난경계, 재난위험)의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보단말만 이용하여 경보방송 및 사이렌 취명 실시

#### □ 민방위경보 종류

- 민방공경보 : 경계경보, 공습경보, 화재방경보, 경보해제
- 재난경보 : 재난경계경보, 재난위험경보, 재난경보해제

#### □ 전달체계도



**소관 기관**

위기상황 발생 시  
상황판단회의(자체위기평가회의)를  
거쳐 재난경보 발령 검토



**중앙 및 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

재난경보 발령 요청 및  
경보전파 실시

※ 요청내용: 경보 발령 사유, 경보의 종류  
올림일시, 올림지역, 경보요청자



**지자체 민방위경보 단말**

음성방송 및 사이렌 올림

-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난경보 발령  
※ 재난경보: 재난경계, 재난위험, 재난경보해제  
- 전국단위 재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지역단위 재난: 시·도지사(2개 시·군 이상)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행정안전부장관 → 중앙민방위경보  
통제센터 제1민방위경보통제소  
- 행정안전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이  
경보통제소에 화상전화로 경보 발령 지시  
※ 제1경보통제소 부재시 제2경보통제소 요청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민방위경보통제소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권한을 위임 받은 자)이 전용전화로  
요청, 부득이한 경우 FAX 사용  
※ 시·도민방위경보통제소 장애 시 중앙  
민방위경보통제소로 요청

- 경보종류에 따라 음성방송 및 사이렌 올림  
- 재난경계경보: 음성방송  
- 재난위험경보: 음성방송+사이렌

#### 4 국가재난관리(NDMS) 상황 전파시스템

##### □ 상황 전파시스템 개념

- 중앙부처와 지자체, 유관기관 간 재난상황의 실시간 전파로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사회재난 자연재난 등 모든 재난발생 상황  
전파에 유용한 시스템

##### □ 상황 전파시스템 구축현황

- 재난상황정보와 대응지시 등을 메신저 기반으로 실시간 전파  
※ 상황 전파 범위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산하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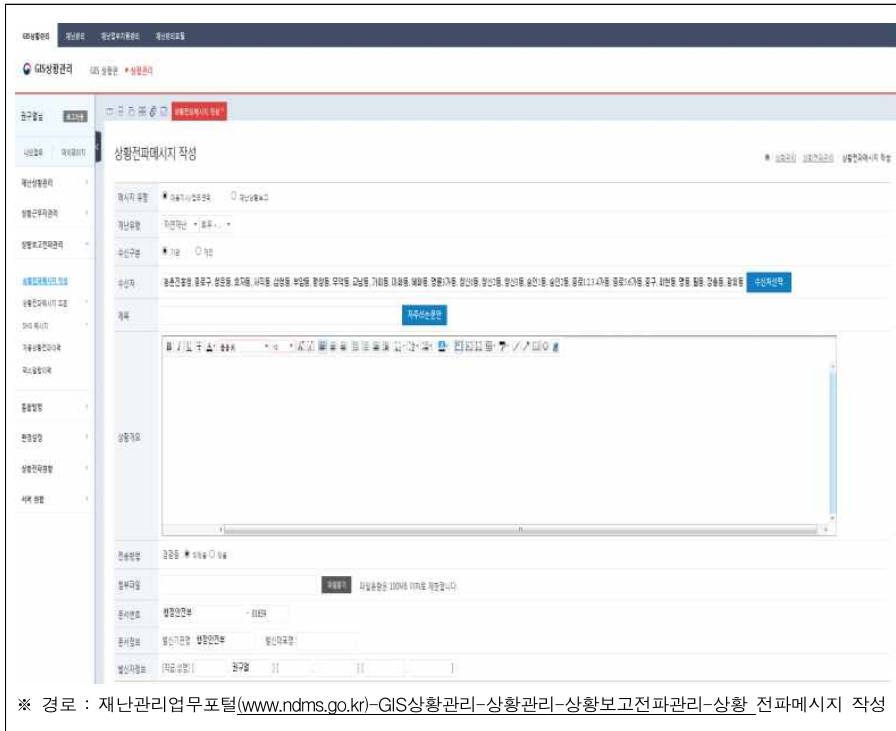
(\*18.10월말 기준)

| 구분   | 합계     |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 교육기관  | 정부산하기관 |
|------|--------|--------|--------|-------|--------|
| 기관수  | 385    | 36     | 245    | 17    | 87     |
| 사용자수 | 16,157 | 1,522  | 11,403 | 2,354 | 878    |

##### □ 시스템 개념도



## □ 메시지 작성 화면



※ 경로 : 재난관리업무포털(www.ndms.go.kr)-GIS상황관리-상황관리-상황보고전파관리-상황 전파메시지 작성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업무포털[https://www.ndms.go.kr, 외부망(인터넷망)], 문의(044-205-8462)

## 5. 국가위기관리 영상회의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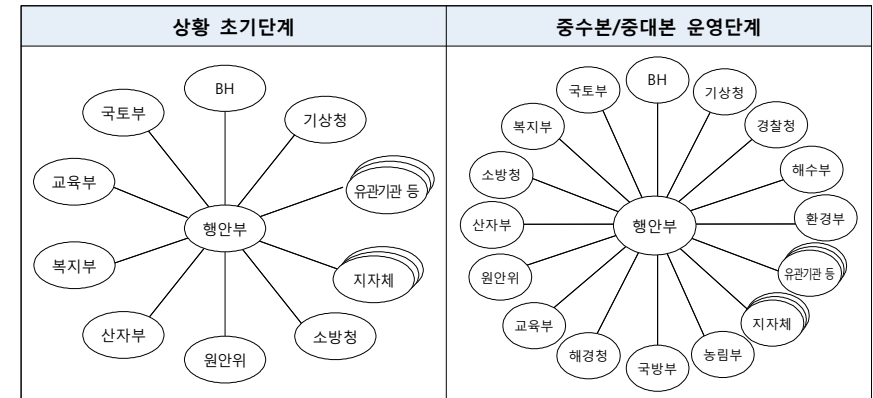
### □ 개요

- (목적) 청와대,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주관기관, 중앙부처, 긴급구조기관 (소방·해경), 지방자치단체 등과 상황 공유, 범정부적 신속 대응
- (연결기관) 국가지도통신망을 통해 279개 기관과 연결

| 구분           | 연결기관(279개 기관)  |
|--------------|--|
| 중앙 (2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안보실, 국무조정실, 원자력안전위원회</li> <li>· 18부</li> <li>· 5청(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기상청, 해양경찰청)</li> </ul> |
| 지자체 (24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7개 시도 및 228개 시·군·구*</li> <li>* 시·군·구는 시·도를 통해 연계</li> </ul>                              |
| 재난관리책임기관 (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철도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화학물질안전원, 질병관리본부</li> </ul>            |

### □ 영상회의 운영 ※ 운영사례: 태풍 "솔릭" 대처 긴급점검회의(MP주재, '18.8.23.)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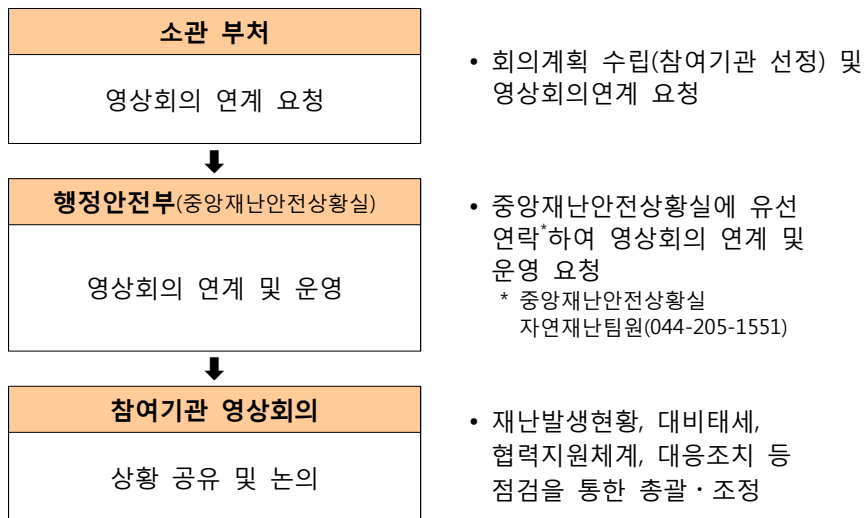
- (대상회의) 초기상황판단회의, 상황판단회의, 중앙재난대책본부회의, 중앙수습대책본부회의 등
- (참여기관)



※ 재난의 규모 및 대응단계 등에 따라 영상회의의 참여기관은 변동 가능

- (참석자) 회의 참석대상 및 위기상황 등에 따라 판단
  - ※ 예: 대통령 회의 주재 시 각 부처 장관 및 시·도지사 참석 등
- (회의내용) 재난의 규모에 따른 조치방향 및 재난관리 단계별 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점검하고 효율적 재난대응을 위한 총괄·조정
  - (대비태세) 중앙·현장(지역) 지휘·보고체계 구축, 재난 대비 실무매뉴얼 등 대응계획 점검, 재난 상황대응체계 강화 및 긴급전파체계 유지
  - (협력·지원체계) 관계기관 재난상황 전파·공유 등 협력체제 가동, 사고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및 민간 구조세력 현황점검 및 동원체제 구축
  - (대응조치) 재난수습에 필요한 구조·지원 세력 지휘, 중앙사고 수습본부 설치 등 사고대응 총괄지휘 체제 구축

□ 운영 절차



## 6. 언론홍보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매뉴얼

□ 목표

- 정부가 위기 시에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구조 활동을 지원하며, △피해자를 배려하는 한편, △위기관리 대응에 관한 정부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있음

□ 기본 원칙

- 신속성 : 정부는 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최대한 신속히 국민에게 전달해야 한다.
- 일관성 : 정부의 메시지는 하나의 목소리로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 개방성 : 정부는 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 위기단계별 점검 사항

| 위기단계                         | 점검사항   |
|------------------------------|--|
| <b>위기 전<br/>(pre-crisis)</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매뉴얼'에 따른 교육훈련</li> <li>• 피해예방 및 보도에 관한 언론 협조사항 숙지</li> <li>• 언론사 현황 및 기자 명단 확보</li> <li>• 타 부처 위기상황 전파 등 협업가능 SNS 매체 파악</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오프라인 위기징후 파악 및 상황 분석</li> <li>• 위기 유형과 단계별 전파가 필요한 콘텐츠 점검과 준비</li> <li>• 피해발생 예상 시 예방요령 온라인 홍보 전개</li> </ul>                                  |
| <b>위기(crisis)</b>            | <b>위기발생</b>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기관리(본부) 대책 회의</li> <li>- 위기 비상체제 가동 여부 결정</li> <li>- 위기의 경중에 따라 위기관리본부 설치 여부 결정</li> <li>- 응급임무 부여 / 비상근무 개시</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론 모니터링</li> <li>- 오보, 유언비어 파악 및 브리핑 보도현황 점검</li> <li>- 온라인 여론동향 파악 및 SNS 대응현황 점검</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변인 지정 및 위기관리소통센터 구성</li> <li>• 본부 및 현장에 취재지원센터(브리핑실) 설치</li> </ul>   |

| 위기단계                  |   | 점검사항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기 언론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자 연락</li> <li>- 브리핑 준비 및 실시(관계부처 협의)</li> <li>- 보도자료 배포 및 재난보도준칙 공유</li> <li>- 재난방송협의회 운영</li> <li>- 접근제한선(폴리스라인) 설치 요청</li> <li>- 주관방송사와 국가기간 통신사 활동 협력, 지원</li> <li>- 재난안전 전문가 풀(pool) 공유 등</li> </ul> </li> </ul>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기 온라인 미디어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 매체, 영향력자 파악 및 대응체계 구축</li> </ul> </li> <li>• SNS 활용 위기상황 및 행동요령 실시간 전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식 브리핑자료 활용</li> </ul> </li> </ul>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보 전문 부서(국민소통실)와 협력</li> </ul>   |
|                       | 위기진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언론의 정보 요구사항 파악</li> </ul>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의적절한 정보 제공 (관계부처 협의)</li> </ul>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보 및 유언비어 대응</li> </ul>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 소통 협력체계 가동 및 SNS 활용 정보 공유</li> </ul>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취재단 구성 및 언론 현장 취재지원</li> </ul>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장, 전문가 등 브리핑 추진</li> </ul>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과 브리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오프라인 전파·확산</li> </ul> </li> </ul>  |
| 위기 후<br>(post-crisis)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기대응 평가 및 사례 자료집 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기관리소통센터 활동 분석 및 평가</li> <li>- 온·오프라인 여론 분석</li> </ul> </li> </ul>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매뉴얼 개선방안 마련</li> </ul>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복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황관리 관련 개선방안 도출 및 세부내용 전파</li> <li>- 내부 조직원 결속 프로그램 가동</li> <li>- 대외 회복 프로그램 가동 등 세부사항 전파</li> <li>- 언론사 및 주요 관계자에게 감사서신 발송</li> <li>- SNS 활용 재발방지 약속 등 대국민 메시지 전파</li> </ul> </li> </ul> |   |
|                       |   |   |

## □ 대변인 지정 및 위기관리 소통센터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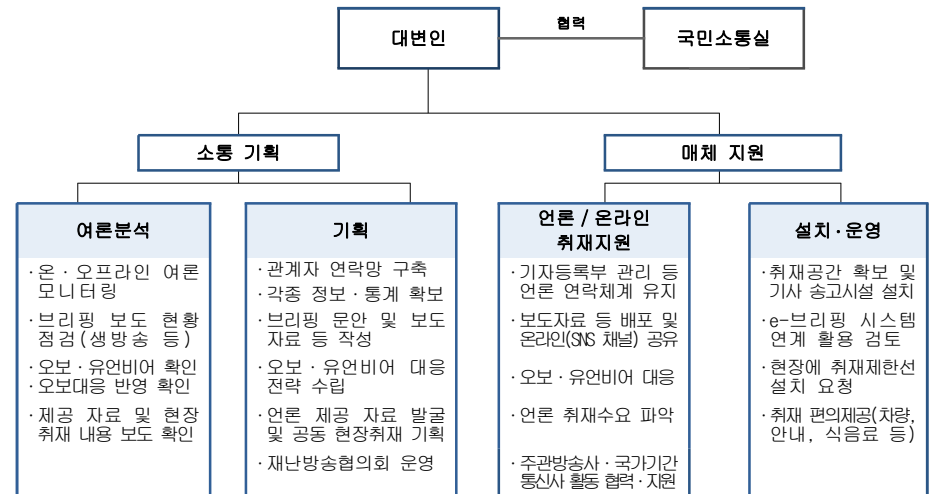
### ○ 대변인 지정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본부장(장관)이 지정하는 자(행정안전부 소속 고위공무원)
  - 중앙사고수습본부 : 본부장(청장)이 지정하는 자(부처대변인 등 고위공무원)
  - 현장 : 각급 통제단장이 지명하는 자(부기관장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
- \* 각 대변인은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해 복수로 하며 1, 2, 3 순위를 정해 미리 정해둠

### ○ 대변인 지위와 역할

- 대외적으로 유일한 공식 창구
- 위기관리 모든 회의 참석, 상황을 장악하고 관련기관 간 메시지 조율
- 브리핑 등을 통해 신속하고 시의적절한 홍보 활동 시행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대변인 : 현장 지원 및 범정부 대책 중심 브리핑
- 현장 대변인 : 구조 등 수습활동에 대한 상황 중심 브리핑

### ○ 위기관리소통센터 활동



### ※ 문체부 소통실 홍보지원 사항

- 홍보협의 위해 현장지휘소-소통수석실-국조실-문체부(소통실) 간 연락체계 유지
- 홍보지원 사항 : △ 초기 메시지 관리, △ 여론 모니터링 및 대응 협조, △ 보유매체 활용 및 범부처 온라인 소통 협력체계 가동 지원, △ 현장 의문사항 컨설팅, △ 필요시 취재지원 인력 파견, △ 취재제한선 조율 등

## □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기준

가. 초기에 신속히 대응하되 정확한 정보에 근거해 브리핑하라

- 위기 시 초기 발표가 정부의 신뢰도를 좌우한다.
  - 첫 발표는 확인된 사실만을 발표 한다.
  - 확신이 없는 사안은 확인해서 알려주고 추측성 답변이나 주관적 견해, 정보의 부분적 유출은 추후 불필요한 논란과 부정확한 보도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삼간다.
  - 감염병 등 진행 중인 위기의 경우 사태 추이 등을 예단하는 발언은 자제한다.
  -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숫자 인용 등 데이터 오류는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국민과 언론의 신뢰를 잃는 원인이 되므로 주의 한다.
  - 정확한 상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잠정’, ‘몇 시 경’, ‘회사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등의 표현을 사용한다.
- 초기 사고원인, 피해상황에 대한 언급은 신중을 기한다.
  - 주관적 판단이 포함된 추측성 답변, 예단하는 발언은 혼란을 부추기고 비판을 받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답변을 해야 할 경우, ‘구체적인 사고 원인, 피해상황은 현재 조사 중’,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고 원인을 조사 중’ 등의 표현을 사용 한다.
- 문서로 작성한 발표 자료만 브리핑한다.
  - 초기에 대변인이 현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정리된 자료만을 기초로 발표하는 것이 원칙이다.

나. 창구를 단일화하고 한목소리를 유지하라

- 여러 채널을 통해 상호 모순되는 정보가 제공되면 정부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언론과 국민으로부터 비판을 받게 된다는 점을 유념한다.

- 정보는 반드시 공식 대변인을 통해 전달하고 필요시 대변인 승인 하에 관계자 인터뷰를 진행 한다

- ※ 대변인은 모든 회의에 참석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파악, 상황을 장악

- 정부 내에서 통일된 입장을 정리하여 유지한다. 이를 위해 관련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조 체계\*를 구성해야 하며, 정례적인 협의회 개최를 통해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한다.

- ※ 재난현장 관할 지자체(시·군·구) 홍보담당자를 반드시 포함

- 다른 조직에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을 삼간다.
  - 다른 조직과 관련된 사항은 사전 조율을 거쳐 발표하도록 한다.
  - 여러 부처와 관련된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회를 개최하거나 핫라인을 통한다.

다. 언론은 최대한 준비한 뒤 대하라

- 현장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 수집하고 언론 및 온라인(소셜미디어) 모니터링을 통해 여론과 사회적 분위기를 파악해야 적절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 전체 홍보상황을 고려해 핵심 메시지, 정부 입장 등을 발표문으로 준비하고 언론의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도 미리 정리해 둔다.
  - 온라인(소셜미디어) 상에서 생겨나는 각종 루머, 비판, 거짓 정보 등을 초기에 발견·정리하고 언론 브리핑을 통해 정확하게 해명하여 소멸시키는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지속적인 공식 해명자료 배포)
- 브리핑 등 대언론 설명 직전까지 현장상황에 대한 최신 정보 및 관련 언론 보도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라. 피해자 등 국민 정서를 항상 염두에 두고 발언, 행동하라

- 위기 시 국민감정과 동떨어진 발언이나 행동은 국민적 공분을 낳는다.
  - 피해자의 입장에서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한다.

- 정부 인사의 태도나 행동이 여론의 비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면서 진지하고 신중한 자세를 유지한다.
- 정부의 입장이 아닌 국민·언론 등 제 3자적 입장에서 메시지를 생각하고 냉정하게 평가한다.
-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어느 수준까지 공개할 것인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특히, 사고와 피해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 및 자극적인 표현은 삼가야 한다.
- 사람 중심의 시각에서 언론에 설명한다.
  - 인적 피해는 물적 피해에 앞서 언급하고 용어 사용에 신중을 기하며 진솔한 애도와 위로를 표명한다.

마. 언론 및 온라인(소셜미디어)에 적극적으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라

- 기자가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하면 제 3자의 정보에 의존하게 돼 오보 가능성이 높아진다.
  - 기자들의 요구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고 알맞은 정보를 제공해 언론의 정보 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
  - 상황이 허락하고 논란이 없는 사안에 관해서는 최선을 다해 협조하고, 안전보안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취재가 어려운 경우에는 언론에 충분한 이해를 구한다.
  - 사진·영상 자료 등을 다양하게 확보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수시로 제공한다.
  - 공식 브리핑 자료들은 민감한 부분만을 제외하고 정부 공식 온라인채널을 통해 실시간 전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 정부의 대응상황과 국민들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처요령을 브리핑과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 위기 해결을 위한 정부의 조치 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 끊임없이 소통하고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파급력이 높은 매체를 적극 활용한다.

바. 모든 정보를 공식화하라

- '오프더레코드(Off The Record)'는 지켜지기 어렵고, '노코멘트 (No Comment)'는 문제가 있거나 숨기고 있다는 암시를 준다.
- 최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불가피하게 비공개가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공개하여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사. 오보 및 유언비어에는 즉각 대응하라

- 오보가 한번 보도되면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첫 오보에 대응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오보가 이어지며, 유언비어는 SNS, 댓글 등을 통해 교차 인용되어 급속히 확산되므로 정확한 정보공개 등을 통해 조기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 온·오프라인 수시 모니터링으로 오보 및 유언비어를 신속하게 확인한다.
  - 오보의 경우 해당 기자에게 사실을 설명하고 정정 보도를 요청한다.
  - 보도·해명자료를 즉시 배포하고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채널에도 해명 글을 게재하며, 효과적인 메시지 전달을 위해 필요시 관계자 인터뷰 영상, 카드뉴스 등을 적극 활용한다.
  - 명백한 오보임에도 정정보도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
  - 위기 발생 시에는 언론의 오보에 대한 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정기 브리핑, 보도자료,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 정부의 해명 메시지들이 충분한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 위기관련 전문가와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라

- 위기 시 언론이 접촉하는 전문가 의견은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친다.
  - 주요 전문가 및 관련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사건 관련 정보를 적극 제공한다.
  - 주요 전문가 및 오피니언 리더 중심의 온라인 네트워크 연락망을 구축하여 실시간 정보를 교류하고 조언을 구한다.

자. 외신 기자 취재 지원 계획을 수립하라

- 외신 보도는 대외적 국가 이미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내외신 보도는 상호 영향을 받게 마련이다.
- 외신 담당관을 지정해 적극적으로 외신에 대한 취재 지원을 적극 실시한다.
- 브리핑이나 현장 방문 풀(Pool) 구성 시 외신 기자를 포함한다.

차. 국민들의 주의와 행동이 요구되는 경우, 대응 요령에 대한 메시지를 쉽고 간단하게 제작해 활용하라.

- 감염병 확산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추가적인 사고를 막기 위해 국민들의 주의나 행동지침이 필요한 경우, 이와 관련한 메시지나 홍보물은 최대한 간단 명료해야 한다.
- 특히 실시간 파급력이 높은 소셜미디어를 적극 활용하여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이미지와 동영상 형태의 행동요령 콘텐츠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 브리핑 및 취재 지원 기준

가. 브리핑 전 사전 리허설을 가져라

- 언론의 예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고 언급을 삼가야 할 주제나 용어 등을 미리 파악해 둔다.

나. 브리핑 계획을 사전에 통보하라

- 기자들의 위기 시 정보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정보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도록 한다.

다. 쉽고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라

- 전문용어나 업계에서 통용되는 약어 사용을 삼가고 정부 발표를 직접 인용해 기사화할 수 있도록 쉬운 용어로 브리핑한다.
- 용어로 설명이 어려운 경우 그림, 사진 및 영상 등을 함께 제공한다.

라. 질문에 대한 답변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결론부터 말하라

- 편집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둔다. 답변 내용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답변을 한 번 더 되풀이 한다.

마. 질문에 엇매이지 마라

- 질문이 잘못된 사실이나 가정을 전제로 한 경우 전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 확인 요구 등 답변이 곤란한 경우 '사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등으로 언급한다.

바. 인터뷰에서는 핵심 중심으로 간략히 말하라

- 방송 인터뷰의 경우 편집되지 않도록 10초 이내로 짧게 답변하고 준비되지 않은 돌발 인터뷰는 삼간다.
- 한 번 잘못 언급한 말은 지속적으로 방송된다는 점을 유념한다.

사. 위기대응 활동의 설명에 도움이 되는 인사와 자료를 활용하라

- 현장 지휘책임자, 기관장 등의 브리핑이나 기자회견 기회를 마련하고 관련 통계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아. 알려질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지 마라

- 부정적 사안이라 할지라도 알려질 사실이라면 숨기지 말고 선제적으로 발표하고 전후 사정과 맥락을 충분히 설명한다.



자. 정직이 최우선이다

- 정부가 위기 상황에서 진정성을 갖고 대처하고 있다는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체에 솔직하고 겸손한 태도로 임한다.

차. 미디어 트레이닝을 평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평소에 위기 상황을 상정하여,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브리핑 및 질의응답 대응 훈련을 정례적으로 실시한다.

카. 현장을 질서 있게 관리하라

- 언론의 보도 경쟁이 과열될 경우 공익과 무관한 자극적·선정적 뉴스가 양산되고 피해자들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
  - 사고 현장에 접근제한선(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필요시 적절한 안내 조치를 취한다.
  - 필요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풀(Pool) 기자들이 공보담당자의 인솔 하에 현장을 방문, 취재하도록 안내한다.
  - 이재민 임시구호소 등에도 취재제한선을 미리 설치하여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받지 않도록 배려한다.

타. 언론을 공평하게 대하라

- 특정 매체에만 정보를 주어서는 안 된다. 취재기자 리스트에 근거해 공평하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현장취재를 나온 기자들은 취재기자 리스트에 누락된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현장에서 취재 등록부를 마련하여 정보제공 대상에 포함시킨다.

파. 복장은 정복이나 비상근무복을 착용하라

- 위기 상황이라는 점에서 대변인이 아닌 경우에도 브리핑, 기자회견 참석자는 이 원칙을 준수한다.

### 사고현장 취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장소)

- 사고현장에 가깝고 취재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
- 현장 대책본부 활동이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분리된 곳
- 충분한 공간(취재진 규모 예상) 확보

#### (시점) 현장 사고대책본부 설치와 동시

#### (기능)

- 수시 상황브리핑 실시 및 보도자료 배포
- 언론 상황 파악 및 대응
- 취재 송고시설 및 행정서비스 지원
- 사고현장 안내 및 취재제한선 준수 협조

#### (취재지원팀의 배치)

- 언론지원 담당
  - 기자등록부 관리 등 언론연락체계 유지
  - 보도자료 등 배포(이메일, 문자, SNS 등)
  - 언론 요구사항 파악(공동 현장취재 수요 파악 및 현장 안내 등)
- 센터 설치·운영 담당
  - 브리핑실·기자실 등 취재공간 확보 및 기사송고시설 설치
    - ※ 현장에서 송고시설 등 설치가 어려울 경우 가장 가까운 장소 및 시설 확보
  - 현장에 취재제한선(폴리스라인/포토라인) 설치 요청
  - 공동 현장취재 등 이동용 차량 준비, 취재진 편의 제공
    - ※ 구비물품 리스트 : 마이크, 백드롭, 책걸상, 화이트보드, 발표대, 전화, TV, 컴퓨터, 인터넷 등 송고시설, 취재기자 등록부, 프린터, 팩스, 필기구, 지도, 음료수 등

붙임 2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메시지 작성 템플릿

| 메시지 작성 시 필수 고려 사항   |   |  |
|---|---|--|
| 타겟 (공중, 오디언스)   | 메시지의 목적   | 전달 방법(매체)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기(사건)에 대한 관여 정도</li> <li>- 인구통계적 특성</li> <li>- 피해규모(정도)</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행상황 / 사실 전달</li> <li>- 집회 / 연설 등</li> <li>- 현재 상황 설명</li> <li>- 루머대응</li> <li>- 미디어 응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문 보도자료</li> <li>- 홈페이지 게재</li> <li>- 대변인발표(TV, 현장발표)</li> <li>- 라디오</li> <li>- 소셜미디어</li> <li>- 기타(전화 응대 등)</li> </ul> |
| 메시지 기본 요소 (사과문, first response)   |   |  |
| 피해자에 대한 배려  |   |  |
| 사건개요 (6하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누가</li> <li>- 언제</li> <li>- 어디서</li> <li>- 무엇을</li> <li>- 어떻게</li> <li>- 왜</li> </ul> |   |  |
| 사건의 원인 규명 노력 천명(구체적)  |   |  |
| 원상회복 노력 천명  |   |  |

붙임 3 위기 원인과 유형별 유의 사항

| 상황                  | 사실(fact)  | 인식(perception)  |
|---------------------|---|---|
| 정부의 책임이 높은 경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 시대의 미디어 환경에서는 위기 발생 시 위기 상황을 회피하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능동적 대처가 필요</li> <li>-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공개 (예: 공중의 불확실성 감소, 타당성 검증 요구에 적극 대응 및 정보 공개)</li> <li>- 위기 前, 위기 中 그리고 위기 後 등 각 단계 별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대응 커뮤니케이션</li> <li>- 내부 공중, 소속 부서들 간의 효과적인 소통을 통한 위기 해법 및 대안 모색</li> <li>- 조직 전체가 협력하여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는 기회 마련</li> <li>• 특히 위기 발생 원인이 정부에 있어 정부의 책임이 높은 경우,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피해자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대응 필요</li> <li>- 신속한 사건 경위 전달</li> <li>- 사과 및 책임감 표현</li> <li>-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전달</li> <li>- 관계 개선 노력</li> <li>- 이미지 개선 노력</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기 발생의 원인이 정부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책임이 높다고 인식되는 경우, 보다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위기 대응 필요</li> <li>- 위기를 회피하기보다 적극적인 대응으로 위기 돌파 혹은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 필요</li> <li>- 적극적인 정보 공유도 중요. 위기원인 공개, 상황 공유 등 잘못 알려진 정보를 정확하게 정정</li> <li>- 신속한 위기관리팀 구성운영</li> <li>- 종합하면, 적극적인 정보제공 및 공유를 통한 언론의 오보와 유언비어 및 루머를 최소화 하고 호의적인 언론보도를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하며, 공중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획득하도록 소통</li> <li>• 분야별 전문가 그룹 등과 같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긴밀한 협력 방안 모색 필요</li> <li>• 정부 신뢰 회복을 위한 상시 커뮤니케이션 활동 모색</li> <li>- 참여형 소통 방안</li> <li>- 소셜 미디어 등 온라인 매체 적극 활용</li> </ul> |
| 타 주체와 정부의 공동 책임인 경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 주체와의 공동책임인 경우에도 위에서 언급한 소통의 전략들 필요. 다만, 그 이외에 추가로 유의해야 할 부분은 타 주체와의 통일된 커뮤니케이션 필요</li> <li>- 단일화 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한 메시지 통일</li> <li>- 위기 단계별 상황에 부응하는 소통</li> <li>- 위기 전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상황분석 필요</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생한 위기가 타 주체와의 공동 책임으로 인식되는 경우,</li> <li>- 초기 위기 상황, '정보의 공백기'에서 적극적인 정보공유 필요</li> <li>- 불필요한 소문 확산을 막고, 초기 이슈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 위기 확산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노력 필요</li> <li>• 평상 시 신뢰감을 확고히 하는 평판관리 필요</li> </ul>  |

## 7. 국민행동요령

### □ 지진 국민행동요령

01

### 지진에 이렇게 대비합니다

#### ○ 집 안에서의 안전을 확보합니다

- ▶ 탁자 아래와 같이 집 안에서 대피할 수 있는 안전한 대피 공간을 미리 파악해 둡니다.
- ▶ 유리창이나 넘어지기 쉬운 가구 주변 등 위험한 위치를 확인해 두고 지진 발생 시 가까이 가지 않도록 합니다.
- ▶ 깨진 유리 등에 다치지 않도록 두꺼운 실내화를 준비해 둡니다.
- ▶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난로나 위험물은 주의하여 관리합니다.

#### ○ 집 안에서 떨어지기 쉬운 물건을 고정합니다

- ▶ 가구나 가전제품이 흔들릴 때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 둡니다.
- ▶ 텔레비전, 꽃병 등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 ▶ 그릇장 안의 물건들이 쏟아지지 않도록 문을 고정해 둡니다.
- ▶ 창문 등의 유리 부분은 필름을 붙여 유리가 파손되지 않도록 합니다.

#### ○ 집을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 ▶ 가스 및 전기를 미리 점검합니다.
- ▶ 건물이나 담장은 수시로 점검하고, 위험한 부분은 안전하게 수리합니다.
- ▶ 건물의 균열을 발견하면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보수하고 보강합니다.

#### ○ 평상시 가족회의를 통하여 위급한 상황에 대비합니다

- ▶ 가스, 전기를 차단하는 방법을 알아 둡니다.
- ▶ 머물고 있는 곳 주위의 넓은 공간 등 대피할 수 있는 장소를 알아 둡니다.
- ▶ 비상시 가족과 만날 곳과 연락할 방법을 정해 둡니다.
- ▶ 응급처치하는 방법을 반복적으로 훈련하여 익혀 둡니다.

#### ○ 비상용품을 준비하고 보관 장소를 알아 둡니다

- ▶ 비상시를 대비하여 비상용품을 준비해 두고, 보관 장소와 사용방법을 알아 둡니다.
- ▶ 지진 발생 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니 소화기를 준비해 두고, 사용방법을 알아 둡니다.

**비상용품**

**하나, 비상식품**  
물, 통조림, 라면 등 가열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것

**둘, 구급약품**  
연고, 감기약, 소화제, 지병약 등이 포함된 구급함

**셋, 생활용품**  
간단한 옷, 화장지, 물티슈, 라이터, 여성용품, 비닐봉투

**넷, 기타**  
라디오, 손전등 및 건전지, 휴대전화 예비배터리, 비상금, 비상연락망 등



#### ○ 지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 둡니다

- ▶ 지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정부 기관의 연락처를 알아 둡니다.
- ▶ 정부에서 제공하는 스마트폰 재난정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둡니다.

##### ▶ 스마트폰 재난정보 애플리케이션

- 국민안전처 안전디딤돌
- 기상청 지진 정보 알리미



## 지진이 발생하면 이렇게 행동합니다

### ● 튼튼한 탁자 아래에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길어야 1~2분 정도입니다.
- 중심이 낮고 튼튼한 탁자의 아래로 들어가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합니다.
- 탁자 아래와 같은 피할 곳이 없을 때에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 ● 가스과 전깃불을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 흔들림이 멈춘 후 당황하지 말고 화재에 대비하여 가스과 전깃불을 끕니다.
- 문이나 창문을 열어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합니다.
- 흔들림이 멈추면, 출구를 통해 밖으로 나갑니다.



☞ 지진이 발생했을 때 불이 나면 침착하고 빠르게 불을 꺼야 합니다. 지진 시에는 도로의 손상으로 소방차가 출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평소 불을 끄는 방법을 알아 두도록 합니다.

### ● 집에서 나갈 때는 발을 보호할 수 있는 신발을 신고 이동합니다

- 지진이 발생하면 유리 조각이나 떨어져 있는 물체 때문에 발을 다칠 수 있으니, 발을 보호할 수 있는 신발을 신고 이동합니다.



### ● 계단을 이용하여 밖으로 대피합니다

- 지진이 나면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고, 계단을 이용하여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 밖으로 나갈 때에는 떨어지는 유리, 간판, 기와 등에 주의하며,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침착하게 대피합니다.



### ● 건물 담장과 떨어져 이동합니다

- 건물 밖으로 나오면 담장, 유리창 등이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건물과 담장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대피합니다.



☞ 빌딩이 많은 도심지에서는 깨진 유리창이나 간판 등이 떨어져 다칠 우려가 있으므로, 주변에 가까운 공원이나 넓은 공간이 없다면 지은 튼튼한 건물 안으로 들어가 우선 몸을 보호합니다.

☞ 담장이나 전봇대는 지진으로 지반이 약해져 넘어지기 쉬우므로 절대 기대지 않아야 합니다.



### ●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 ☞ 떨어지는 물건에 주의하며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 ☞ 이동할 때에는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걸어서 대피합니다.



### ●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합니다

- ☞ 대피 장소에서는 안내에 따라 질서를 지킵니다.
- ☞ 지진 발생 직후에는 근거 없는 소문이나 유언비어가 유포될 수 있으니,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 방송 등이 제공하는 정보에 따라 행동합니다.



#### 대피 시 주의 사항

- |  |  |
|--|--|
| <p><b>01</b> 화재가 발생하면 손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은 후 연기를 피하여 최대한 자세를 낮추고 대피합니다.</p> <p><b>02</b> 아간에는 넘어지거나 추락할 위험이 있으니, 손전등을 사용하여 조심해서 대피합니다.</p> <p><b>03</b> 겨울철에는 추위로 몸 상태가 나빠질 수 있으니, 두꺼운 옷이나 휴대용 난로 등을 준비하여 추위에 대비한 후 대피합니다.</p> <p><b>04</b> 지하 공간에서는 정전 시 벽에 붙어 이동하고 가까운 출입구를 통해 밖으로 나갑니다.</p> | <p><b>05</b> 끊어진 전선을 비롯한 사고의 위험이 있는 물건은 만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p> <p><b>06</b> 대피 중에 휴대전화, 이어폰 등을 사용하면 발을 헛디뎌 부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사용을 자제합니다.</p> <p><b>07</b> 화장실, 욕실에 있을 때는 거울이나 전구 등의 파손으로 다칠 수 있으니, 욕실에서 나와 안전한 장소로 이동합니다.</p> <p><b>08</b> 감렸을 때는 주변의 딱딱한 물건을 이용하여 소리를 내어 구조를 요청합니다.</p> |
|--|--|

## 03

### 장소에 따라 이렇게 행동합니다

#### ● 사무실에 있을 때에는 책상 아래로 피합니다

- ☞ 사무실은 컴퓨터 본체, 모니터 등 무거운 물건들이 많아 다칠 위험이 큼니다.
- ☞ 사무실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웅크리고 책상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합니다.



#### ● 학교에 있을 때에는 책상 아래로 피합니다

- ☞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웅크리고 책상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합니다.
- ☞ 흔들림이 멈추면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질서를 지키면서 운동장으로 대피합니다.
- ☞ 복도에서는 창문 유리가 깨질 우려가 있으니 창문과 떨어져 이동합니다.



#### ● 고층 건물에 있을 때에는 실내에서 떨어지는 물건에 주의합니다

- ☞ 높은 층의 건물일수록 흔들림이 크고 오래 지속될 수 있으므로 실내에서 떨어지는 물건에 더욱 주의하여야 합니다.

☞ 고층 건물이 저층 건물보다 지진에 더 잘 견디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지진이 나면 고층건물은 흔들리는 폭은 크지만, 일반적으로 내진설계를 통하여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장소에 따라 이렇게 행동합니다

● 백화점이나 마트에 있을 때에는 장바구니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 ※ 진열장에서 떨어지는 물건으로부터 몸을 보호합니다.
- ※ 계단이나 기둥 근처로 피하고, 흔들림이 멈추면 안내에 따라 밖으로 대피합니다.



● 극장이나 경기장에 있을 때에는 우선 자리에서 몸을 보호합니다

- ※ 흔들림이 멈출 때까지 가방 등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며 잠시 동안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 ※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서는 한 곳으로 갑자기 몰리게 되면 사고의 우려가 있으니, 안내에 따라 대피합니다.



●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을 때에는 즉시 내립니다

- ※ 지진이 발생하면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아야 합니다.
- ※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서 신속하게 내린 후, 계단을 이용하여 대피합니다.
- ※ 만약 엘리베이터 안에 갇혔을 때는 인터폰이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구조를 요청합니다.



● 자동차를 타고 있을 때에는 서서히 차를 멈춥니다

- ※ 비상등을 켜고 서서히 속도를 줄여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긴급차량을 위해 도로의 중앙부분을 비워둡니다.
- ※ 라디오의 정보를 잘 듣고, 대피해야 할 때에는 열쇠를 꽂은 채 문을 잠그지 않고 이동합니다.



※ 운전 할 때 지진이 발생하면 흔들림에 의하여 제대로 된 주행이 불가능합니다.  
 ※ 비상등을 켜고 속도를 줄여 주변을 충분히 살피면서 교차로를 피하여 길 오른쪽에 차를 세웁니다.

● 전철을 타고 있을 때에는 손잡이를 꼭 잡습니다

- ※ 전철 안의 손잡이나 기둥, 선반을 꼭 잡고 넘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 ※ 전철이 멈췄다고 해서 서둘러 출구로 뛰어가기는 것은 위험하므로 안내에 따라 행동합니다.



● 산이나 바다에 있을 때에는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 ※ 산이나 급한 경사지 근처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떨어지는 물체에 주의해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 ※ 지진해일 특보가 발령되면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 등 높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 대피 후에는 이렇게 행동합니다

### ○ 부상자를 살펴보고 즉시 구조 요청을 합니다

- 흔들림이 멈춘 후 주변에 부상자가 있으면 이웃과 서로 협력하여 응급처치하고 119에 신고합니다.

### ○ 주변 피해 상황에 따라 귀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 지진이 발생하면 통신기기 사용이 꼭주하여 일시적인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당황하지 마시고, 라디오 및 주변에 있는 공공 기관이 제공하는 정보에 따라 행동합니다.

### ○ 가정이나 사무실로 돌아간 후에는 안전에 유의하여 주변을 확인합니다

- 가정이나 사무실의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안전이 의심된다면 전문가의 확인을 받도록 합니다.
- 옷장이나 사무실 보관함 등의 내용물이 쏟아져 내려 부상을 입을 수도 있으므로 문을 열 때 주의합니다.

### ○ 올바른 정보를 항상 확인합니다

- 여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역 방송 등이 제공하는 정보를 확인하고, 대피해야 할 경우에는 지진 국민행동요령에 따릅니다.

☞ 가스, 전기, 수도관 등의 피해를 확인합니다.

**하나,**  
가스 냄새가 나거나 소리가 들릴 경우에는 창문을 열고 밸브를 잠근 후 우선 대피합니다.

대피 후에는 가스 관련 기관 (지역도시가스회사, LPG공급회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에 확인하고 사용합니다.

**둘,**  
전기에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는 원인이 파악될 때까지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전이 되었다면 손전등을 사용하고, 차단기를 내린 후 전선의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셋,**  
수도관의 피해가 있다면 밸브를 잠급니다.

하수관의 피해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 수도꼭지나 화장실 등 물을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넷,**  
피해가 확인되었다면 살고 있는 곳의 시·군·구청에 신고합니다.



## 지진해일이 발생하면 이렇게 대피합니다

### ○ 지진해일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내가 있는 지역이 지진해일의 위험이 있는 지역인지 미리 확인합니다.



- 해안가에 있을 때 지진을 느꼈다면 곧 지진해일이 올 수도 있으니 빨리 해안에서 벗어나, 높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 해안에서 지진을 느끼거나 지진해일 특보가 발령되면 지진해일 긴급 대피장소나 높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피할 시간이 없다면 주변에 있는 튼튼한 건물의 3층 이상으로 대피합니다.



- 지진해일이 오기 전에는 해안의 바닷물이 갑자기 빠져나가거나, 기차와 같은 큰 소리를 내면서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높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 지진해일은 한 번의 큰 파도로 끝나지 않고 수시간동안 여러번 반복될 수 있습니다. 지진해일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낮은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 지진해일 발생 조건

일반적으로 일본 서해안에서 규모 7.0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약 1~2시간 후 동해안 지역에 약 3~4m 높이의 지진해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지진발생시 상황별·장소별 행동요령

## 상황별 행동요령

|  |   |
|--|---|
| <p><b>지진으로 흔들릴 때는?</b></p> <p>지진으로 흔들리는 동안은 <b>탁자 아래로</b>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습니다.</p>  | <p><b>흔들림이 멈출 때?</b></p> <p>흔들림이 멈추면 <b>전기와 가스를 차단</b>하고, 문을 열어 <b>출구를 확보</b>합니다.</p>                 |
| <p><b>건물 밖으로 나갈 때는?</b></p> <p>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b>계단을 이용하여</b>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b>(엘리베이터 사용 금지)</b><br/> <small>* 엘리베이터 안에 있을 경우에는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먼저 열리는 층에서 내립니다.</small></p> | <p><b>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는?</b></p> <p>건물 밖에서는 가방이나 손으로 <b>머리를 보호</b>하며, 건물과 거리를 두고 주위를 살펴 <b>대피</b>합니다.</p> |
| <p><b>대피 장소를 찾을 때는?</b></p> <p>떨어지는 물건에 주의하며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b>(차량 이용 금지)</b></p>  | <p><b>대피 장소에 도착한 후에는?</b></p> <p>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 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합니다.</p>                             |

<http://www.mois.go.kr>

## 장소별 행동요령

|  |   |   |
|--|---|---|
| <p><b>집안에 있을 경우</b></p> <p>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b>전기와 가스를 차단</b>하고 문을 열어 <b>출구를 확보</b>한 후, 밖으로 나갑니다.</p> | <p><b>집밖에 있을 경우</b></p> <p>떨어지는 물건에 대비하여 가방이나 손으로 <b>머리를 보호</b>하며, 건물과 거리를 두고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p> | <p><b>엘리베이터에 있을 경우</b></p> <p>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서 내린 후 계단을 이용합니다.<br/> <small>* 지진 시 엘리베이터를 타면 안됩니다.</small></p> |
| <p><b>학교에 있을 경우</b></p> <p>책상 아래로 들어가 책상 다리를 꼭 잡습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질서를 지키며 운동장으로 대피합니다.</p>                             | <p><b>백화점, 마트에 있을 경우</b></p> <p>진열장에서 떨어지는 물건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계단이나 기둥 근처로 가 있습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밖으로 대피합니다.</p>      | <p><b>극장, 경기장에 등에 있을 경우</b></p> <p>흔들림이 멈출 때까지 가방 등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자리에 있다가 안내에 따라 침착하게 대피합니다.</p>                       |
| <p><b>전철을 타고 있을 경우</b></p> <p>손잡이나 기둥을 잡아 넘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전철이 멈추면 안내에 따라 행동합니다.</p>                                  | <p><b>운전을 하고 있을 경우</b></p> <p>핸들러 비상등을 켜고 서서히 속도를 줄여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라디오의 정보를 잘 들으면서 키를 찾아 두고 대피합니다.</p>    | <p><b>산이나 바다에 있을 경우</b></p> <p>산사태, 질석 붕괴에 주의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해안에서 <b>지진해일</b> 특보가 발령되면 높은 곳으로 이동합니다.</p>              |

<http://www.mois.go.kr>



## □ 어린이 동반 행동요령

02

지금 지진이 난다면?

### 어린이와 함께 있다면?

영유아는 재난에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족들과 이웃들이 함께 대처해야 한다. 또 영유아나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지진 상황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행동할지 계획을 세워둬야 한다.

#### ● 영유아 및 어린이 동반 행동요령

##### ● 유모차 사용 불가

영유아의 경우 대피 시 유모차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업는 띠를 평소 준비해둬야 한다. 대피 시 아기는 띠를 이용해 안고 손을 자유롭게 해 아기와 자신의 신체를 보호한다.



##### ● 신발을 신겨서 안고 이동

지진 상황에서는 유리 파편, 건물 잔해 등으로 도로가 위험하기 때문에 걸을 수 있는 아이라도 안고 대피해야 한다. 업을 때에는 머리를 보호하고, 안거나 업더라도 반드시 신발을 신긴다.



##### ● 손을 꼭 잡고 행동요령 확인

흔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손을 잡고 움직여야 한다. 어린이의 경우 행동요령을 알고 있더라도 필요한 행동을 알려주며 함께 대처할 수 있도록 이끈다.



## □ 장애인 동반 행동요령

### 장애인과 함께 있다면?

지진 상황에서 장애인 사망률은 비장애인보다 2~4배 정도 높다. 실제로 2011년 동일본 지진 당시 장애인 사망률은 전체 인구의 1.9%로 비장애인 사망률 1.1%의 두 배 가까웠다. 장애인 보호자는 집이나 자주 가는 공간에서 장애인과 함께 재난 시 대처법을 미리 숙지하고 동반 대피 연습을 해보는 것이 좋다.

#### ● 장애인 동반 행동요령

##### ● 시각장애인

음성으로 지진 발생 상황을 전달한 뒤, 방석·쿠션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안전한 장소로 함께 이동한다. 발 보호를 위해 신발은 반드시 신고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동반하는 보호자는 장애물의 위치를 알려주어 장애인이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 청각장애인

얼굴을 똑바로 들어 입을 되도록 뚜렷하고 크게 움직여 상황을 전달한다. 종이에 적어서 알려거나 손바닥 끝으로 글씨를 써서 전달할 수도 있다. 전달한 뒤 지진 행동요령에 따라 함께 대처한다.



##### ● 지체장애인

쿠션이나 두꺼운 모포로 장애인을 보호하고 지진 행동요령에 따른다. 흔들림이 멈춘 뒤 장애물을 정돈해 안전한 장소로 빠르게 대피할 수 있도록 출입구를 확보한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계단으로 이동하기 어려우므로 업거나 안고 이동해야 한다.



## 8. 외국인 사상자 관련 주한 공관 상황 공유 체계

### □ 목 적

- 주관기관은 국내 체류 외국인 신변 보호 및 국가 간 신뢰 강화를 위해 대형재난 발생 시 외국인 사상자 인적정보를 각 국 대사관에 통보

#### 「1963년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37조(사망, 후견, 재산관리, 난파 및 항공사고의 경우에 있어서 통보) 접수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관계 정보를 입수하는 경우에 동 당국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a) 파견국 국민의 사망의 경우에는 그 사망이 발생한 영사관할구역 내의 영사 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는 것

### □ 통보내용

- 사상자 인적사항(이름, 나이, 국적 등), 부상정도, 주요 조치사항 등

### □ 통보절차 및 역할

#### ○ 재난관리주관기관

- (○○○○과) 소관 재난에 의한 외국인 사상자 정보 입수 및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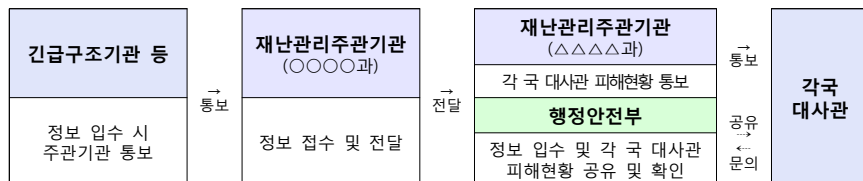
\* 외국인 사상자 정보 입수 시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 공유(재난안전법 제18조제5항)

- (△△△△과) 각 국 대사관에 피해 현황 통보

#### ○ 행정안전부

-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외국인 사상자 정보 입수 시, 그 정보를 국 제협력담당관실에 전달

- (국제협력담당관실) 각 국 대사관과 외국인 피해현황 공유 및 확인



## □ 사건 통보 예시 (해경)

### ○○ 해양경찰서

(○○○○ Korea Coast Guard)

전화(Telephone) : 000

팩스(Fax) : 000

수 신(To) : 베트남 대사관

제 목(Subject) : 사고사실 통보(Accident Notification)

#### 1. 변사자(Personal Details of the deceased)

성 명(Name) : 000

생년월일(Date of Birth) : 0000.00.00생

여권번호(Passport No.) : 0000

국적(Nationality) : 베트남

#### 2. 발생 일시 및 장소(Date & Place of occurrence)

발생일시 : 2000.00.00. 00:00경

발생장소 : 00-00.00N 000-00.00E(○○○도 남방 00 해리)

#### 3. 발생 개요(Details of the incident)

2000. 00. 00. 00:00경 00-00.00N 000-00.00E(○○○도 0 해리)에서 어선 203현진호가 전복된 것을 인근을 항행하던 어선이 발견하여 신고한 것임

#### 4. 경찰 조치(Actions taken by the police)

- 제203현진호 승선원 8명 중 6명 구조(1명 사망/5명 생존)

- 제203현진호 선원인 위 대상자는 제주 한라병원 후송, 지체온증 외 건강상태 양호함

사법경찰관(Officer in charge) 경위 000

## 9. 중앙수습지원단의 표준편제와 임무

### □ 목 적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대규모 재난 수습을 지원하기 위한
  - 중앙대책본부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기관·단체의 재난관리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현지에 파견

### □ 수습지원단 표준편제



### □ 임 무

- 지역대책본부장 등에 대하여 수습에 필요한 기술자문·권고 및 조언
- 중앙대책본부장에 대하여 현장 상황 및 재난발생 원인 분석 보고
- 중앙정부 차원의 행정적·재정적으로 조치할 사항에 대한 보고 등

## 10. 재난유형별 및 단계별 활동 사항

### 【 예방단계 】

| 재난유형  | 활동사항  |
|-------|---|
| 원자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자력발전소 및 연구용원자로 안전검사 실시</li> <li>· 방사능방재 교육 ; 훈련 및 검사 실시</li> <li>·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조체계 구축</li> <li>· 원자력발전소 시설 안전관리대책 수립</li> </ul>   |
| 유해물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독물 및 환경오염사고 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시행</li> <li>· 사고대비물질 등 유독물 취급시설 관리 강화</li> <li>· 중대산업사고 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시행</li> <li>·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설치·운영</li> <li>· 국가 산업단지 대형 재해재난사고 방재계획 수립 추진</li> <li>· 독성가스 사고 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시행</li> </ul> |
| 고속철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속철도 대형사고 예방 종합대책 수립·운영</li> <li>· 안전시설 및 설비 개선·보완</li> <li>· 고속철도 유관기관 공조·협력체계 구축</li> </ul>  |
| 지하철화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하철 화재 대비 방재계획 적정성 여부 평가</li> <li>· 지하철 화재 예방 활동 점검</li> <li>· 지하철 안전관리체계·규정 정비·보완</li> </ul>  |
| 댐붕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댐분야 유관기관 공조·협조체계 구축</li> <li>· 댐분야 관련기관 위기상황 실태 파악</li> </ul>  |
| 공동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구 유관기관 공조·협조체계 구축</li> <li>· 공동구 재난 관련 정책 및 위기대응매뉴얼 총괄</li> <li>· 필요시 지자체별 재난대비 훈련 참관 및 평가</li> </ul>  |
| 전력사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력수급 기본계획 및 비상 전력수급대책 수립</li> <li>· 전기사용 합리화 방안 수립·시행</li> <li>· 비상시 전력사고 인력동원체제 및 연락망 구축</li> <li>· 주요시설 방호대책 강구 및 전력사업 홍보활동</li> </ul>   |
| 식용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용수 안전대책 수립 및 위기상황 대응실태 점검</li> <li>· 수질검사 및 수돗물 생산공정 관리계획 수립 시행</li> <li>· 광역상수도 및 용수 시스템 종합 위기관리</li> <li>· 지방상수도 및 음·용수시스템 종합 위기관리</li> </ul>   |
| 정보통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통신 관련동향 상시 모니터링 및 평가</li> <li>· 정보통신 위기관리에 대한 계획 수립·시행</li> <li>· 방송통신시스템·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및 점검</li> </ul>   |
| 금융전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위기 징후 실시간 감시 및 전파·보고 체계 수립</li> <li>· 금융대체 시스템/자원 관리체계 구축 및 예비 자원 확보</li> <li>· 금융위기상황대응반/공동침해사고대응팀(CERT) 운영</li> <li>· 금융 전산 각급기관「위기대응 실무매뉴얼」수립 시행</li> </ul>   |

## 【 대비단계 】

| 재난유형  | 활동사항   |
|-------|--|
| 원자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자력 상황 분석·평가 및 자체 위기평가회의 개최</li> <li>원자력 유관기관 협조체계 등 방사선비상대응태세 점검</li> <li>방사능중앙통제상황실 및 예비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발족·운영</li> <li>원자력 위기징후 변화양상 모니터링, 연합정보센터 대응활동지원</li> </ul> |
| 유해물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독물·환경오염사고관련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점검활동</li> <li>화학물질 사고 대응정보시스템 가동 추진</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업단지내 시설 및 설비 등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 실시</li> <li>중대산업사고 관련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점검 활동</li> </ul>   |
| 고속철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독성가스사고 관련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점검 활동</li> <li>고압가스 대규모 사용·제조시설 대상 안전성 향상계획서 이행실태 확인</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속철도 유관기관 공조·협력체계 구축·확인</li> <li>고속철도 사고발생 대비 신속 보고·전파 및 공유체계 유지</li> <li>고속철도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매뉴얼 홍보업무 점검 관리</li> </ul>  |
| 지하철화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하철 화재 대비 유관기관간 협조체제 구축</li> <li>지하철 화재 발생시 신고체계 가동 점검</li> <li>지하철 운행중단 대비 대체교통수단 구축체계 점검</li> </ul>   |
| 댐붕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댐붕괴 관련 상황 모니터링 및 정보공유 등 유관기관간 협조체제 구축</li> <li>인적·물적 자원 확충 및 동원 체계 구축 현황 확인</li> <li>댐 붕괴 가능성 평가 및 응급복구 대책수립</li> </ul>   |
| 공동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동구 상황정보 공유 및 유관기관간 협조체제 구축</li> <li>공동구 자체위기평가 회의 구성·운영 및 경계경보 발령(필요시)</li> <li>공동구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관리실태 점검</li> </ul>   |
| 전력사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력수급상황 모니터링, 전력수급대책본부 구성·운영</li> <li>정보공유 등 유관기관 및 전력수급 관련기관간 협조체제 가동</li> <li>전력수급관련기관 활동사항 확인 점검</li> </ul>   |
| 식용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광역·지방상수도 및 용수공급 위기수준 평가 및 대응계획 점검</li> <li>식용수 위기징후 감시 및 전파 공유체계 확인</li> <li>수질이상/오염 경보시스템 운영 강화</li> <li>대체자원 준비를 위한 관련기관과의 협조</li> </ul>                        |
| 정보통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보통신 상황평가 및 정부 대처방향 수립</li> <li>정보통신 위기관리 관련 부처간 협조체계 가동</li> <li>정보통신 관련동향 분석 및 유관기관간 정보공유체계 가동</li> <li>정보통신 위기 확산 방지대책 점검</li> </ul>                           |
| 금융전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융전산 위기시 긴급대응계획 수립 시행</li> <li>24시간 상황 감시 및 금융전산위기 수준 분석, 평가</li> <li>금융전산 위기상황대응반 설치 준비 및 상황 대응 조치</li> <li>금융전산 정보 수집, 분석, 평가 및 신속한 전파/보고</li> </ul>            |

## 【 대응단계 】

| 재난유형  | 활동사항   |
|-------|--|
| 원자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방사능 재난 총괄 조정 및 현장대응 활동 지휘·통제</li> <li>방사능방호 및 방사선비상의료 지원단 구성·운영</li> <li>국가 환경 방사능 감시체계 운영</li> <li>구조 지원, 상황전개 접수, 사고자 유가족 등 관리</li> </ul>   |
| 유해물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앙사고수습본부, 지역 사고수습 본부 설치·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독물·환경오염사고 분야</li> <li>중대 산업사고 분야</li> <li>독성가스 사고 분야</li> </ul> </li> <li>사고 현장 수습활동 지원 및 전문인력 등 기술지원</li> </ul>           |
| 고속철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속철도 사고대응조직 전면 가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운영</li> <li>사고현장 대응활동 총괄·조정 및 유관기관 협조체제 유지</li> </ul>  |
| 지하철화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앙사고수습본부, 지역 사고수습 본부 설치·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긴급수송용 교통수단·사고수습 중장비 지원</li> <li>화재 피해 및 진압·수습 상황 등 브리핑</li> </ul> </li> </ul>   |
| 댐붕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댐분야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역사고수습본부 구성·운영</li> <li>댐분야 현장대응 활동 총괄 조정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유지</li> <li>댐붕괴 피해상황 보고 및 전파</li> </ul>  |
| 공동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동구 피해 및 수습상황 종합, 관계기관 보고·전파</li> <li>공동구 사고 상황관련 언론 브리핑 및 국민담화문 발표협조</li> </ul> </li> </ul>   |
| 전력사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력사고 피해지역 전력사업자를 통해 복구대책 수립 시행</li> <li>전력계통 안정대책 수립·시행, 전력설비 고장 복구 시행</li> <li>광역정전 발생시 긴급복구 활동 지원</li> </ul>  |
| 식용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식용수 분야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li> <li>용수시스템 수질이상, 오염, 가동 등 위기대응 실무 총괄</li> <li>식용수 위기대응활동 추진사항 파악/보고</li> <li>식용수 피해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조치 및 상황 전파</li> </ul>   |
| 정보통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방송통신재난대책본부 가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시 상황파악 및 대책 협의</li> <li>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조체계 강화</li> </ul> </li> <li>방송통신 대체자원/인력 동원계획 시행</li> <li>비상통신 및 방송 송출 대책 시행 및 국민 홍보 강화</li> </ul> |
| 금융전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융전산 위기상황대응반/재해복구센터 가동 및 신속한 재해 복구</li> <li>금융전산 위기관리 협의체 구성 및 대응방안 협의</li> <li>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금융분야 재해 복구 지원 요청</li> <li>범 정부차원 금융전산 대응기구 설치 및 지속적 대응 조치</li> </ul>                              |

## 【 복구단계 】

| 재난유형  | 활동사항   |
|-------|--|
| 원자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사업자 등과 함께 합동 조사위원회 설치</li> <li>방사능재난 상황 조사</li> <li>재난조사·피해보상대책·국가차원 방사능 재난 사후대책 보고</li> </ul>  |
| 유해물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독물 및 환경오염 사고 관련 사고조사위 가동</li> <li>사고발생 지역 인근주민 역학조사 등 사후 관리</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대산업사고 관련 사고조사위 가동</li> <li>사업장 시설 설비 안전성 검사</li> </ul>   |
| 고속철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독성가스사고 관련 사고조사위 가동</li> <li>사업장내부 독성가스 안전관리체계 강화</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원인 조사</li> <li>철도사고수습·복구를 위한 필요 조치 및 지원방안 강구</li> <li>철도사고 피해기록, 평가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li> </ul>   |
| 지하철화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하철사고 조사위원회 사고원인 조사</li> <li>지하철사고 응급복구 차량 및 중장비 지원</li> <li>비상홍보센터 가동, 구호·복구 활동상황 대국민 홍보</li> </ul>  |
| 댐붕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댐 붕괴 원인분석 및 안전관리 종합대책 수립</li> <li>댐, 제방 등 시설물 안전점검 대책 수립</li> <li>댐분야 재해복구계획의 수립·시행</li> <li>용수공급 및 홍수피해 저감대책 수립</li> </ul>                           |
| 공동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동구 사고원인 분석 및 복구 종합대책 수립</li> <li>공동구 피해 재발방지 대책 및 제도 개선방안 강구</li> </ul>  |
| 전력사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전지역 복구업무 총괄</li> <li>전력설비 확충계획 평가 및 재수립</li> <li>전력수급 관련 기관·업체별 역할 확인·조정</li> </ul>  |
| 식용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정부 차원의 식용수 복구팀 구성 및 운영</li> <li>식용수 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예방 및 보완대책 수립 조정</li> <li>식용수 위기발생원인 분석 및 대응 절차 보완</li> </ul>   |
| 정보통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보통신 피해 종합 및 복구대책 수립 시행</li> <li>정보통신 위기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li> </ul>   |
| 금융전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융전산 피해규모 파악 및 복구계획 수립 시행</li> <li>범국가적 차원 금융전산 「위기 복구팀」 주관</li> <li>금융전산망 피해복구 및 사후처리 결과 종합 보고</li> <li>금융전산 위기상황 원인분석, 평가 후 범정부 차원 수정·보완</li> </ul> |

소관 부서

문 화 재 청

|     |               |     |               |
|-----|---------------|-----|---------------|
| 연락처 | 문화재청<br>안전기준과 | 전 화 | 042) 481-4972 |
|     |               | FAX | 042) 481-4932 |

※ 본 매뉴얼에 대하여 수정, 또는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상기 연락처로 연락 바랍니다.